
미국 식품수입규정 및 안전성관련 제도

2015. 5



로스앤젤레스 aT센터

< 목 차 >

	Page
I. 농식품 교역현황	
1. 한미간 농산물 교역현황	1 ~ 6
II. 수출관련 절차	
1. 한국산 농식품 미국 수출절차	6 ~ 8
2. 품목별 수출절차	9 ~ 12
3. 수출지원제도	13 ~ 41
III. 수입관련 절차	
1. 미국의 식품 수입제도	42 ~ 45
2. 라벨링 제도	46 ~ 55
3. 수입통관 절차	55 ~ 66
4. 원산지 규정	66 ~ 80
5. 품목별 통관제도	81 ~ 83
6. 품목별 검역제도	83 ~ 90
IV. 식품안전 규정	
1. 수입식품 안전관련 법규 및 기관	91 ~ 92
2. FSMA 진행상황	93 ~ 112
3. HACCP 프로그램	113 ~ 115
4. FDA 억류현황 및 과제	116 ~ 132
5. 식품 인증제도	133 ~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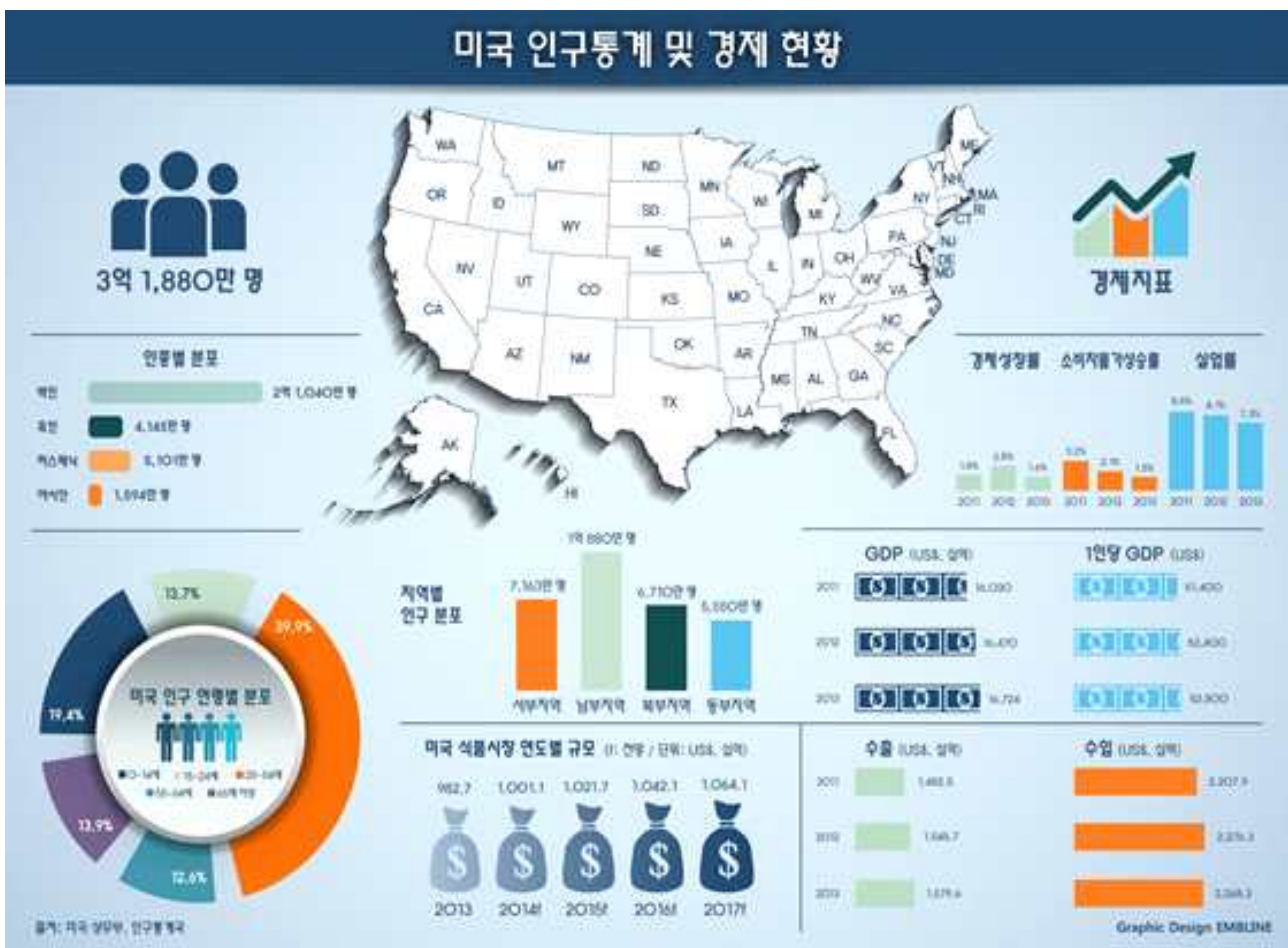
I

농식품 교역현황

1 한미간 농산물 교역현황

가.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현황

□ 미국 인구통계 및 경제현황



나. 한국과의 농식품 교역현황

1) 한국 농식품 수출동향

가) 수출실적

- 한국 농림수산물식품의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8.1억불 달성
 - 환율하락 등으로 일본, 중국 등 주력수출시장이 부진한 반면, 미국은 활발한 현지시장 진출로 지속적인 증가세
- 품목별로는 신선농식품 105.6백만불(7.6%), 가공농식품 488.8백만불(15.1%)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수산물식품은 어획량 감소로 전년대비 0.2% 감소한 217.1백만불 기록

□ 한국 농수산물식품 대미 수출통계

(단위 : 톤, 천불, %)

구 분	2013		2014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 체	231,778	740,188	255,612	811,437	10.3	9.6
<신 선>	29,340	98,103	31,054	105,562	5.9	7.6
- 채소류	3,740	22,509	3,902	18,727	4.3	△16.8
- 김 치	1,206	4,946	1,296	4,936	7.5	△0.2
- 인삼류	527	12,789	809	14,328	53.6	12.0
- 화훼류	150	2,049	189	2,354	26.2	14.9
- 과일류	16,846	37,166	15,397	40,009	△8.5	7.8
- 버섯류	3,789	7,398	3,847	8,363	1.5	13.0
- 돼지고기	2	20	2	6	35.9	△70.7
- 가금육류	-	-	213	1,268	-	-
- 산림부산물	3,081	11,243	5,399	15,572	75.2	38.5
<가 공>	173,066	424,575	195,177	488,799	12.7	15.1
* 면 류	22,944	60,576	22,858	60,363	△0.4	△0.4
* 소스류	15,266	35,667	15,629	38,187	2.4	7.1
* 주 류	13,045	16,766	14,225	18,805	9.0	12.2
* 과자류	11,857	52,225	12,750	60,931	7.5	16.7
* 연초류	2,760	49,851	2,858	59,450	3.6	19.3
* 유제품	4,611	4,911	4,388	5,341	△4.8	8.8
- 목 재 류	6,956	12,195	6,807	12,217	△2.2	0.2
<수 산>	29,372	217,490	29,381	217,076	0.0	△0.2
- 어 류	10,390	88,834	9,587	87,059	△7.7	△2.0
- 연체동물	8,312	32,832	10,268	32,225	23.5	△1.9
- 해조류	6,903	76,601	6,252	79,033	△9.4	3.2
- 갑각류	1,235	10,586	1,190	11,120	△3.7	5.1
- 기 타	2,532	8,636	2,084	7,640	△17.7	△11.5

※ 자료 : 농수산물식품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나) 품목별 수출동향

- 과자류 : 전년대비 16.7% 증가한 60.9백만불
 - 히스패닉 및 아시안 등 타인종 마켓 진출확대, 현지인 대상 마케팅 강화로 매년 수출이 증가되고 있음

- 소스류 : 전년대비 7.1% 증가한 38.2백만불
 - [고추장] 비빔밥, 떡볶이 등 고추장 소스가 들어간 한식에 대한 인지도 및 인기가 유지됨에 따라 전년수준의 9.2백만불 수출
 -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등 간장, 된장, 고추장 이외의 다양한 소스제품 출시 및 시장진출 확대에 따라 소스류 전체 수출 증가

- 면 류 : 전년대비 0.4% 감소한 60.4백만불
 - 다양한 면류 제품이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마케팅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라면제품이 부진함에 따라 전년대비 0.4% 소폭 감소

- 주 류 : 전년대비 12.2% 증가한 18.8백만불
 - 주 수출품목인 소주(10.2백만불, 6.9%)와 맥주(3.7, 21.2%)의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인삼주 등 고가의 제품이 수입됨에 따라 전년대비 12.2% 증가한 18.8백만불 수출

- 수산식품 : 전년대비 0.2% 감소한 217.1백만불
 - 수산식품은 김의 현지시장 진출확대에도 불구하고 '14년 한국산 굴, 어류 등의 어획량 감소로 전년대비 0.2% 감소한 217.1백만불 수출
 - [김] 현지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제품다양화, 진출매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5.4% 증가한 70.9백만불 수출, 미국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

□ 한국 농수산물 대미 수입통계

(단위 : 달러, %)

품목	2013	2014	증감률	2015.03누계
농산물 전체	3,624,751,867	5,065,715,568	39.75	1,036,818,765
과실류	542,386,072	538,113,039	-0.79	137,511,032
버섯류(농산물)	106,044	84,090	-20.70	21,319
버섯류(임산물)	3	23,533	784,333.33	643
인삼류	33,280	59,933	80.09	13,751
채소류	72,264,061	70,821,283	-2.00	15,283,608
김치	179	46	-74.30	0
과자류	96,719,114	121,783,400	25.91	31,451,924
면류	1,327,027	1,264,691	-4.70	306,727
소스류	20,080,678	21,742,228	8.27	5,535,992
음료	16,696,336	16,547,288	-0.89	3,457,036
주류	42,754,286	88,667,788	107.39	28,955,274
수산물 전체	221,369,429	237,391,770	7.24	56,906,542
갑각류	24,950,018	45,179,382	81.08	11,493,871
어류	161,803,306	155,558,222	-3.86	36,390,982
연체동물	5,017,250	2,558,346	-49.01	672,329
해조류	26,225	68,286	160.39	3,468
축산물 전체	1,470,937,043	1,878,103,410	27.68	470,891,949

※ 자료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미국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규모는 2014년 71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1% 증가했음. 전체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액이 급증한 이유는 한국내 수입과자 및 주류의 인기로 인한 소비증가 때문임
- 과자의 경우 수입액은 2013년 96백만 달러에서 2014년 121백만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주류도 두배가까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전년 대비 39.7%나 증가
-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 증가로 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27.6% 증가한 18억 7,81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수산물또한 갑각류의 수입이 81% 증가하여 전년대비 7.2% 증가

다. 한국산 농식품 수입운송

- 한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해안의 주요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와 철도, 트럭 등을 이용해 내륙지역이나 동쪽

항구 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음

- 미국 서해안의 대표항구로 LA와 롱비치 항, 오클랜드 항, 포틀랜드 항, 시애틀, 타코마 항 등 6개가 위치. LA와 롱비치 항은 캘리포니아 주 남부 샌 페드로(San Pedro) 만에 바깥쪽에 건설한 방파제를 활용해 만든 항구로, 이 두 곳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물동량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

- 미국 최대 해운물류 전문지인 JOC에 따르면 LA항은 2013년 566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20ft 컨테이너)를 처리하며 2000년부터 13년 연속 미국 항만 중 물동량 처리 실적 1위를 지키고 있음

- 롱비치 항도 지난해 496만 TEU를 처리하여 LA항 다음으로 물동량이 많으며 서부 LA 지역에 물동량이 몰리는 이유는 중국과의 교역 증가 때문. 지난 5년간 이 두 곳의 항구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항만 중 가장 높은 물동량 성장세를 보인 곳은 타코마 항으로 2013년 130만 TEU를 처리해 전년보다 19.3% 증가

- 미국 동부연안의 주요 항만은 보스턴 항, 뉴욕과 뉴저지 항, 필라델피아 항, 버지니아 항, 볼티모어 항, 버지니아 항, 찰스턴(Charlston) 항, 사바나(Savannah) 항, 잭슨빌(Jacksonville) 항 등으로서 대서양 항로 서비스 선사들과 태평양 항로 올위터 서비스 제공 선사들이 주로 이용. 뉴욕과 뉴저지항은 2013년 420만TEU를 처리하며 북중미 지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

- 미국으로 들어온 전체 한국 식품의 물동량은 LA와 롱비치항이 43.9% (2012년 기준)를 차지하며 미국 항구 중 가장 물동량이 많았고 그 뒤를 뉴욕과 뉴저지 항이 21.1%, 볼티모어 항이 6.9%, 세인트 루이스가 6.8% 순으로 나타났음. 이밖에 오클랜드와 시애틀, 시카고는 각각 4.7%, 4.1%, 3.9%의 한국 식품 물동량을 처리. 한국에서LA까지의 운송기간은 대략 10여 일이며 LA 항구는 한국 식품 물동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미국의 관문이 되는 곳임

□ 미국 항구별 한국산 식품 물동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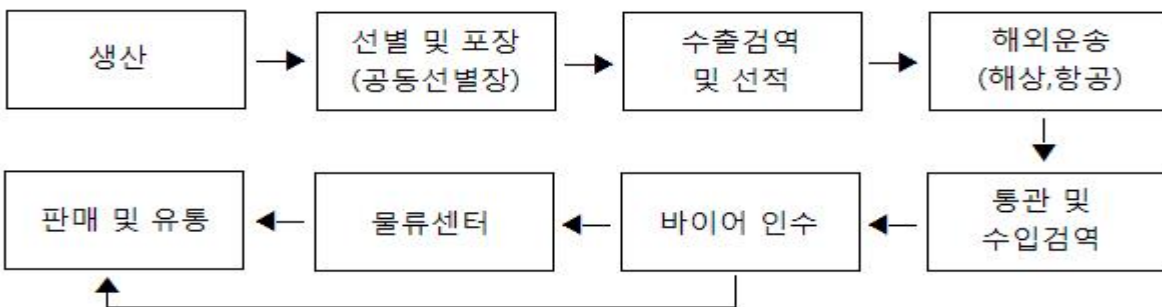
II

수출관련절차

1

한국산 농식품 미국수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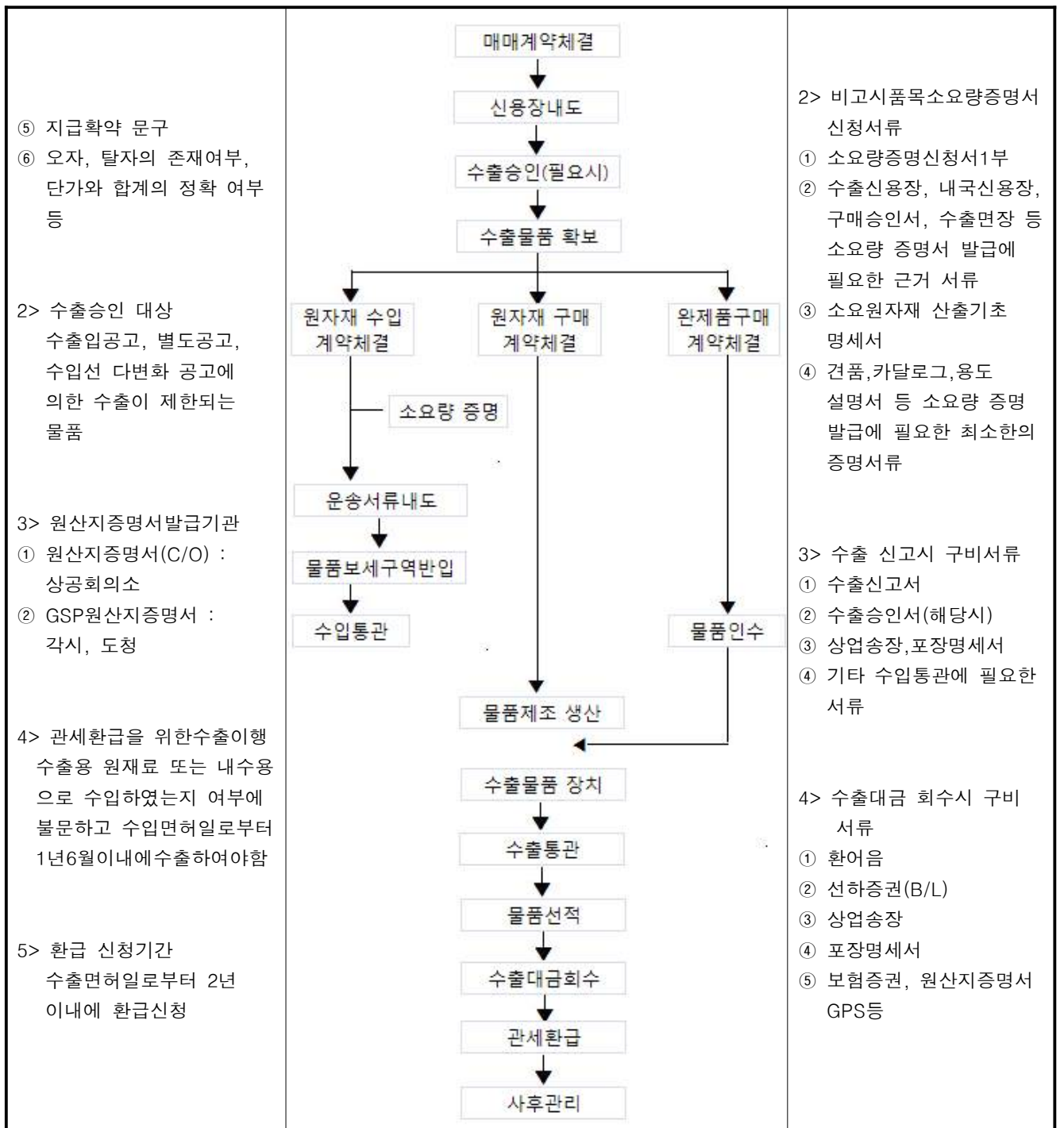
가. 수출 프로세스





나. 수출과정상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검토 및 참고사항	절차(L/C방법)	구비서류
1> 신용장 내도시 주요확인 사항 ①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② 취소불능신용장인지의 여부 ③ 개설은행 신용상태 ④ 특수조건 및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검토		1> 수출승인시구비서류 ① 수출승인신청서 4부 ②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사본1부 ③ 기타 수출승인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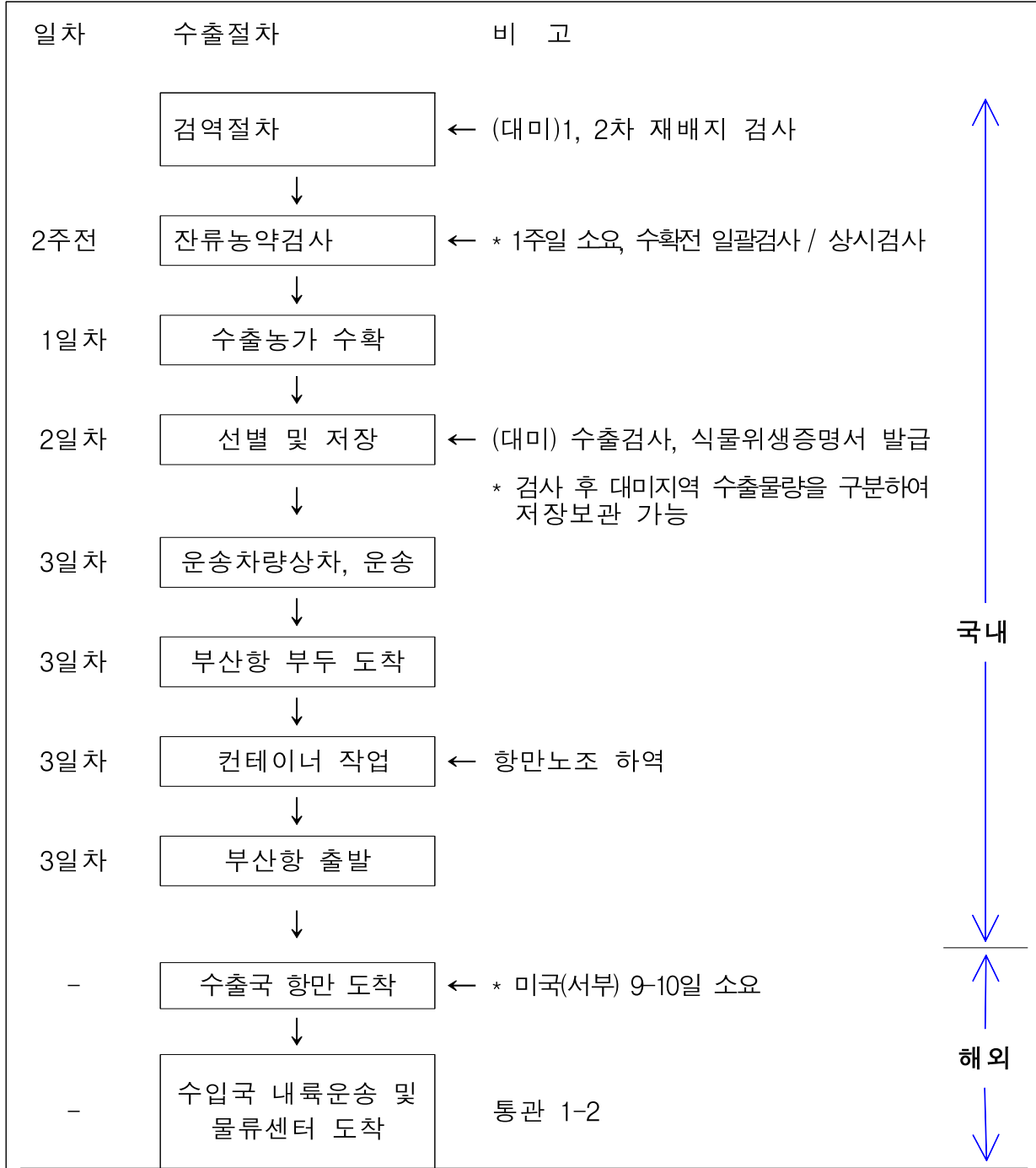
2

품목별 수출절차

가. 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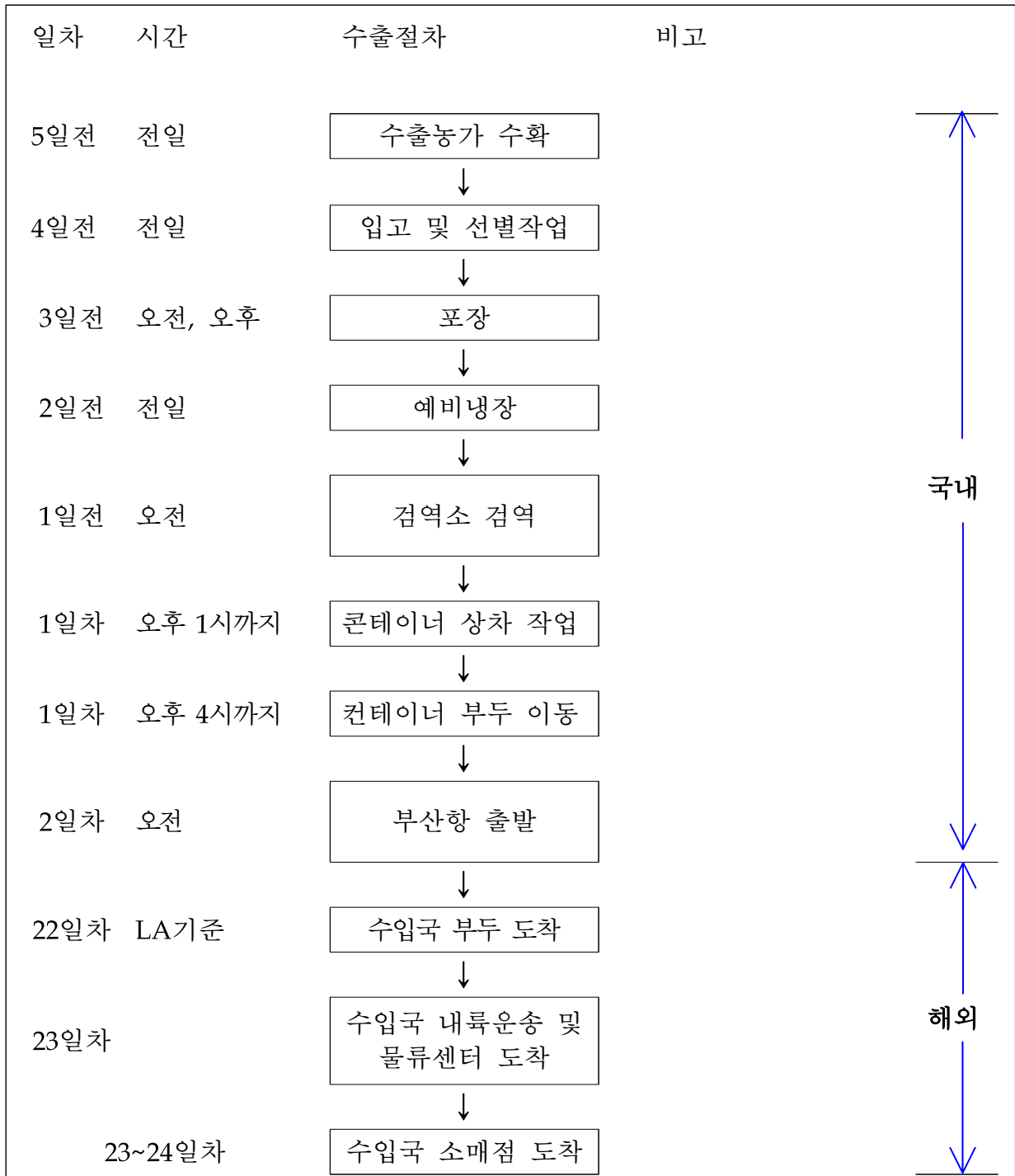
□ 배

○ 수출절차



□ 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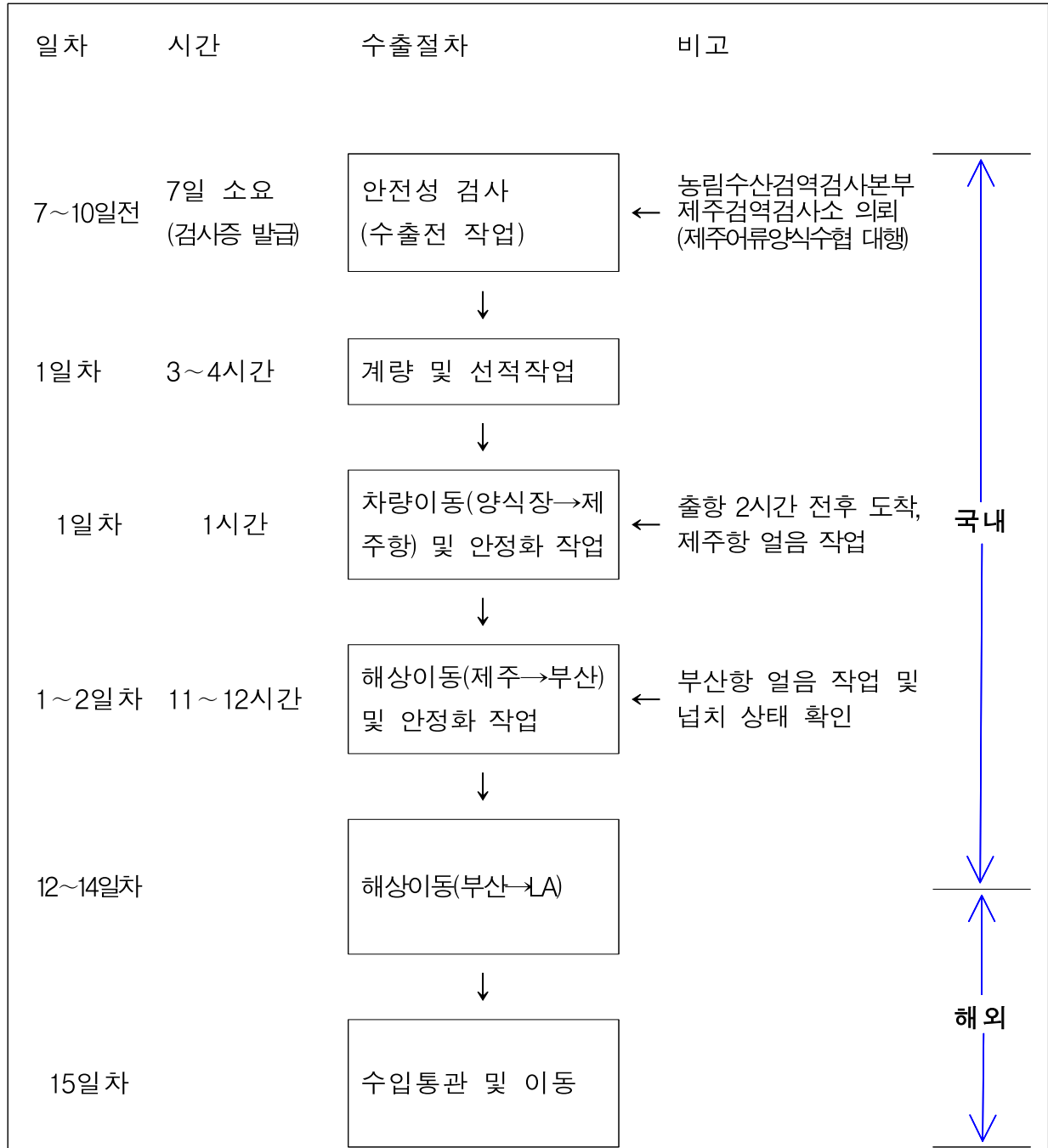
○ 수출절차



다. 수산물

□ 넙치(활어)

○ 수출절차



가. 수출 안전성 관련규정

1) 식물 분야

가) 법령 및 규정

○ 수출식물에 대한 검사의무(식물방역법 제11조)

-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식물방역법 제11조단서 및 시행 규칙 제 22조)

* 위 규정에 불구, 아래의 식물은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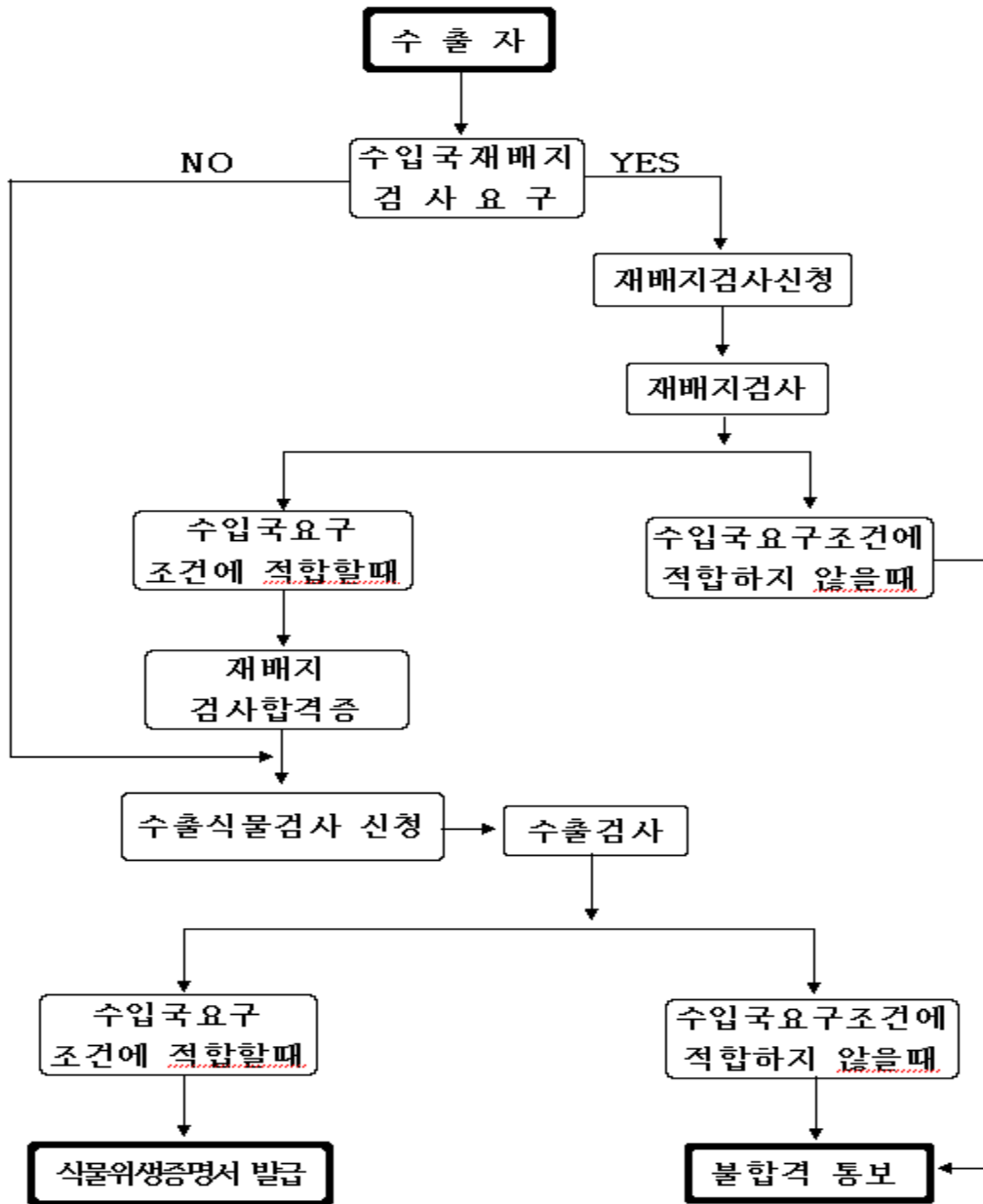
- 우편물로 수출하는 식물
- 수입국이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
- 생약재로서 가공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 등
- 냉동처리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 등
- 휴대하여 수출되는 식물 등

○ 검사신청 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전송, 방문접수, 전화(수출검사합격증명서 작성에 지장이 없을 경우)

○ 검사일자 및 장소 : 검사인력 가동이 가능하고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검사 실시

○ 검사합격증 발급 : 검사결과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맞을 경우 검사합격증 (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발급

나) 식물 수출 검역절차



- 수출검사는 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 또는 수출항에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하는 장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수출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는 현장에서 발급
- 외국에서 수입한 후 가공,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검사신청을 해야함

2) 축산물 분야

가) 법령 및 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 다만, 검역방법 및 절차는 수입국의 검역 요구사항 따름

※ 지정검역물

- 동물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제외))
- 유가공품(원유, 살균처리되지 않은 우유, 분유, 버터, 치즈 등 가공한 유제품)
- 난가공품(식용란, 멸균처리 되지 않은 난백, 난분 등 가공한 알제품)
- 육가공품(식육, 멸균처리 되지 아니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한 육제품)
- 동물사료(동물성 원료를 포함하는 애완동물 사료 등)
- 비식용 축산물(육골분 및 우모분)

※ 의뢰검역물

-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으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동물검역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

○ 기타 : 축산물위생관리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나) 축산물 검역절차



○ 상대국 수출조건 확인

- 수출하려는 품목이 수입국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 하여야 하며, 수출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확인
- 수입국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수입국의 대사관을 통해 확인
- ※ 최초 수출되는 경우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정부와의 수출위생 조건 및 검역증 서식 협의후에 수출이 가능

○ 검역시행장 지정

- 시설·장비 등 검역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장 및 보관장 등에 대하여 국내 가축방역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우려가 없으며,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동물검역기관에서 인정하는 장소로서 검역시행장을 지정
- 지정받으려는 경우 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동물검역기관으로 제출

○ 수출작업장 등록

- 수입국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출작업장으로 등록하여 해당작업장에서 수출하는 것을 허가
- ex) 일본 돈육수출작업장, 홍콩 식용란 수출작업장

○ 도축검사

- 검역관이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가축에 대한 생체·해체검사 실시
- 수출을 목적으로 축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도축(계)검사 신청서를 현장에 파견된 검역관에게 제출
- 다만 간, 선, 장기 등 부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한 도축검사 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음

○ 검역시행장 입고

-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 또는 동물검역기관이 지정한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
-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으로

안전한 상태로 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공처리 공정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및 검역물의 견본확인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에 편리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

○ 검역신청

- 관할지역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검역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역신청서를 제출

① 검역신청서

② 선적관련 서류 등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 검역관은 수출검역 신청시 검역물의 가공과정별 전염성 질병 오염여부, 위생적 처리 여부 등 현장검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

○ 수출검역증 발급

-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

※ 수출자는 선적전에 제품에 요구되는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많은 국가에서 선적후에 발행된 동물위생증명은 인정하지 않음

○ 선적확인

- 검역후 선·기상 적재시는 검역실시 내용과 화물대조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재를 지시
- 수출검역증명서와 검역물 확인, 검역필 날인하고 상차작업 후 봉인
- 검역을 필한 검역물이라 할지라도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때 까지는 검역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검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관이 재검역을 실시 할 수 있음

3) 수산물 분야

가) 법령 및 규정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3조(지정검역물)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수입검역) 및 제31조(수출검역 등)

나) 검역대상

- 이식용 수산동물(정액 또는란을 포함한다)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 있는 물건

다) 검역대상 전염병

구분		전염병
어류	8종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유행성계양증후군, 자이로닥틸루스증 (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
패류	5종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모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모사), 마르테일리아감염증 (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성폐사증
갑각류	7종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란머리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라) 검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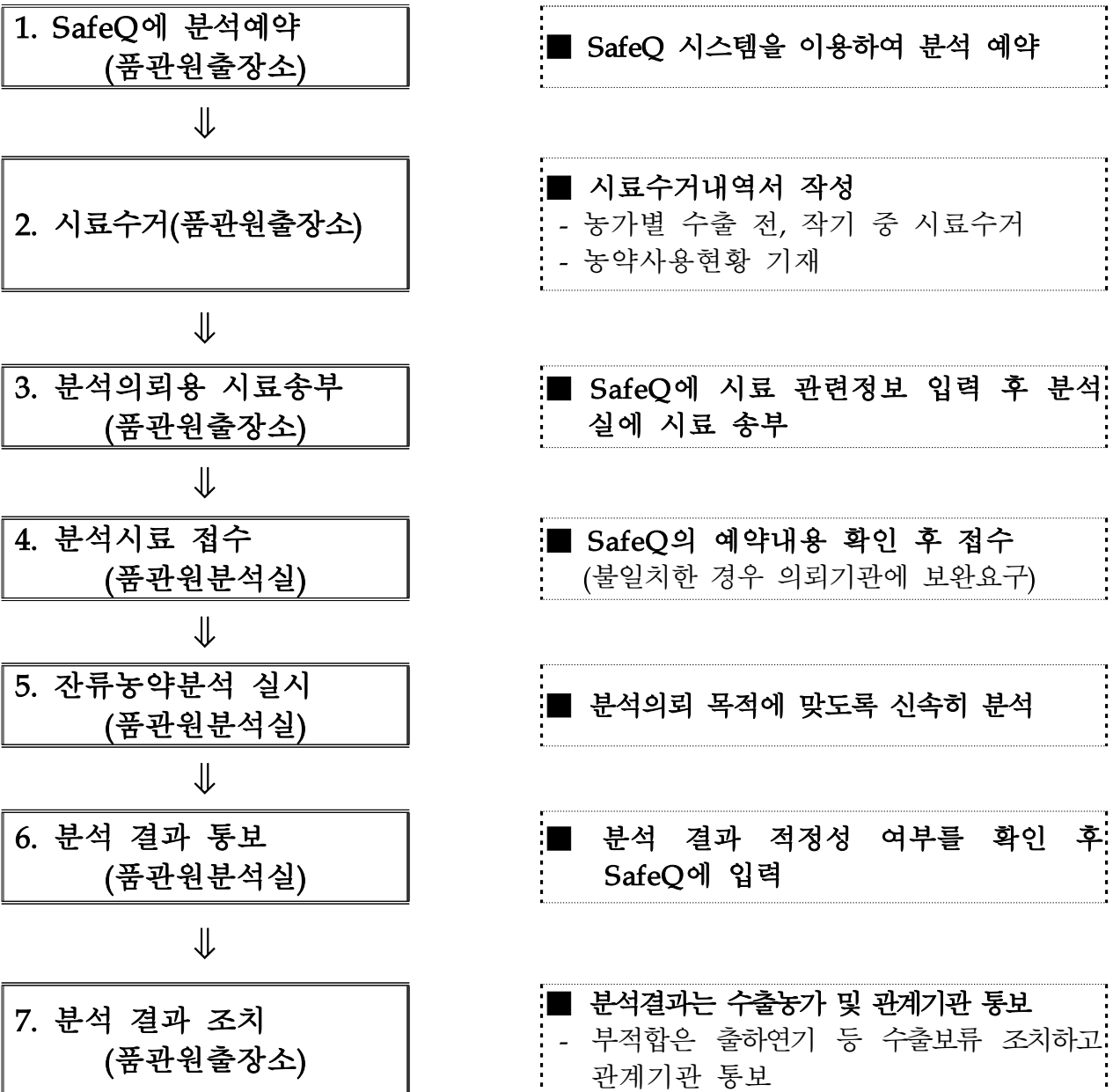
구분	검역종류	처리기간	주요대상
수입	서류검사	2일	검역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임상검사	3일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
	정밀검사	15일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혈청학적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
수출	임상검사	3일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
	정밀검사	15일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혈청학적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

※ 참고 : 수입검역 지정(제한) 항만·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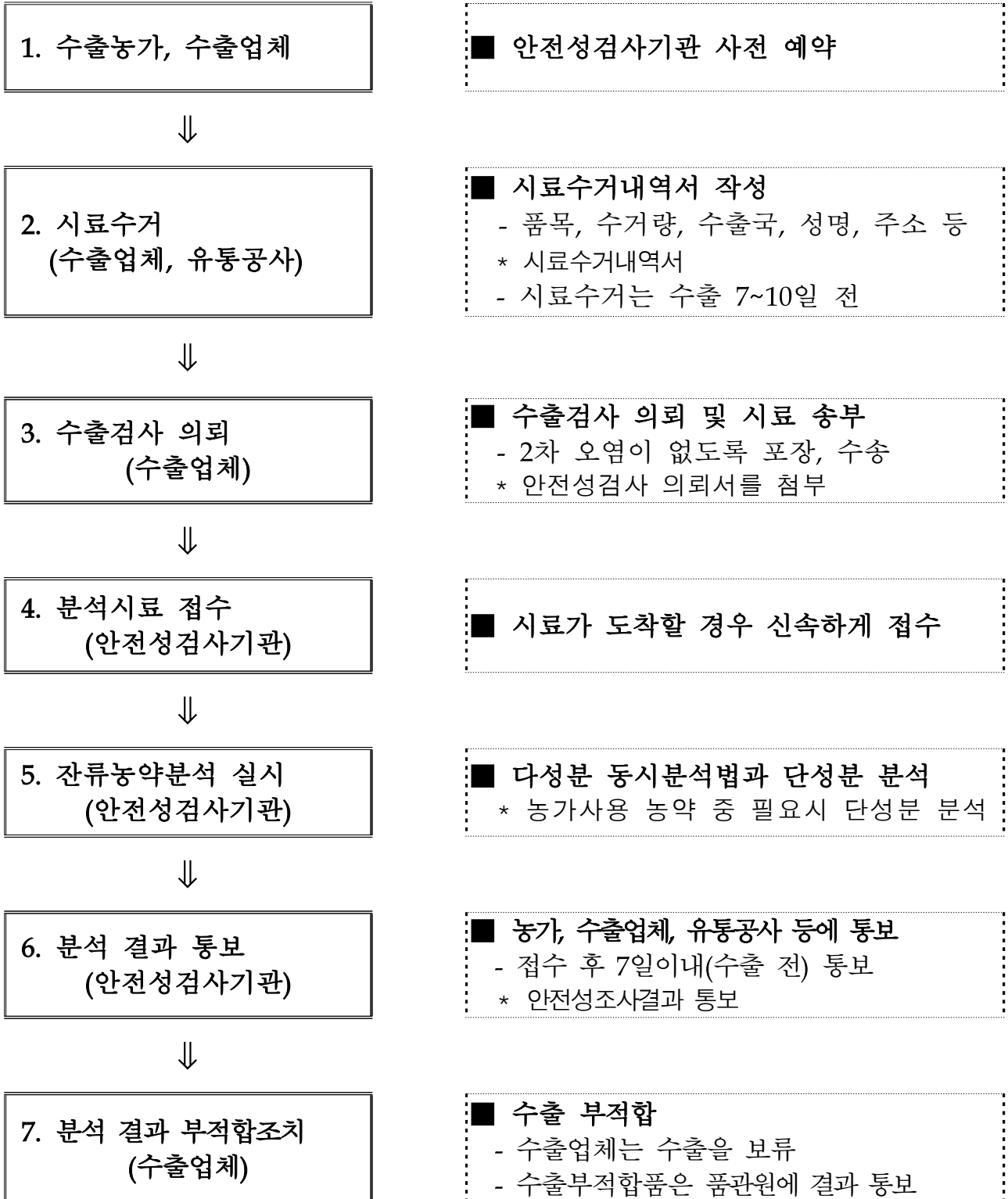
- 항만 : 부산 · 인천 · 군산 · 제주 · 동해 · 평택 · 목포 · 통영 · 삼천포 · 여수 · 포항 · 완도 · 속초항
- 공항 : 인천 · 김포 · 김해 · 제주공항
- 검역시행장(검역장소)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
- 유상수조 보관시설, 유상수조(축제식) 양식시설, 수조관시설, 저온창고 시설

나. 수출 안전성 검사 절차

1) 품질관리원 검사 절차



2) 민간검사기관 검사 절차



3) 농약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체계



다. 수출통관절차

1) 수출통관 개요

-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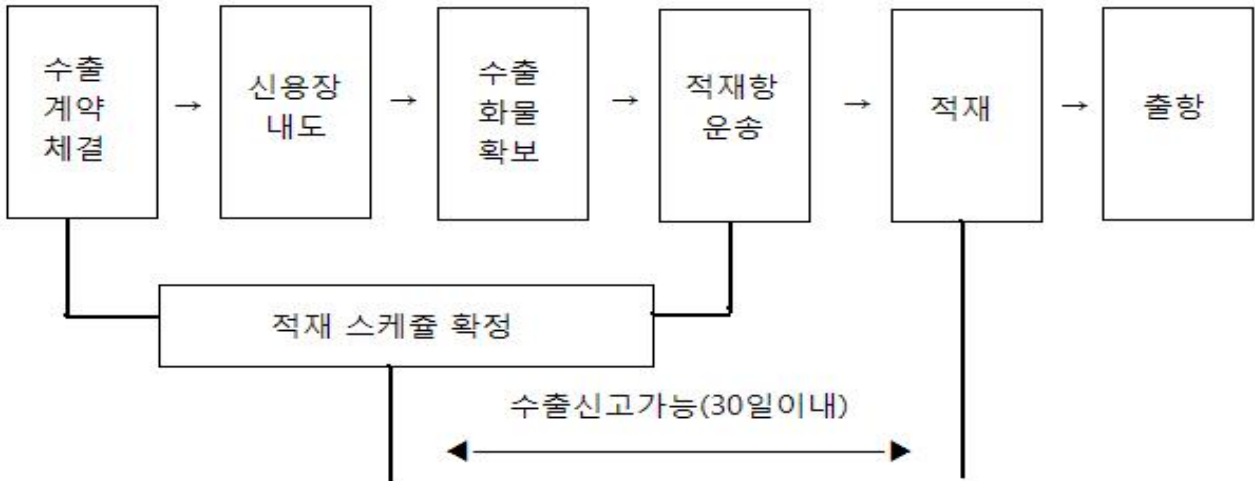
-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
 -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및 인터넷을 통한 수출통관 절차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탈로그 등은 더욱 손쉬운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음

-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취 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함
 -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함
 -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름

2) 수출통관 흐름도



3) 반 송

- 반송의 개념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함

○ 반송의 유형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단순반송물품)
 -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 수입 신고전에 계약상이 확인된 물품
 - 수입 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 및 기타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요건 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 해외에서 위탁가공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
-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 미군 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 불하한 보세물품

○ 반송신고 및 절차

- 반송신고는 수출통관절차와 동일하게 신고서(수출신고서 양식)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함.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참조
-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 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함

라.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

1) 보험종류

농수산물수출보험은 농수산물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당해 농수산물이 국내가격 변동으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수출불능위험 :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대금회수불능위험 :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가격상승위험: 당해 농수산물의 국내가격 상승으로 수출품의 국내조달 비용이 매매 계약상 구매대금보다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2) 적용대상

- 수출불능위험 : HS 코드 2단위의 제 1, 2, 3, 6, 7, 8, 9, 10, 12, 16, 20, 21류
- 대금회수불능위험 : HS 코드 2단위의 제 1~24, 44~46류

○ 가격상승위험 : HS 코드 2단위 제 2, 3, 6, 7, 8, 9, 12, 16, 20, 21류

3) 보험금액

○ 수출불능위험 : 수출계약금액의 95 %이내

○ 대금회수불능위험 : 수출물품대금의 95 % (중소기업은 100 %)

○ 가격상승위험 : 수출계약금액의 80% 이내

4) 보 험 금

○ 수출불능위험 : 손실액×95%. 단, 보험금액 한도내

○ 대금회수불능위험 : 손실액×95% (중소기업은 100 %)

○ 가격상승위험 : 손실액× 95%. 단, 보험금액 한도내

5) 운영방식 : 개별보험

마. 농수산물 수출물류지원제도

1) 목 적

○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이하「지자체」라 한다)의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세부 지원기준을 정함

2) 세부지원내용

가) 총액한도제

○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시,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비율 총계의 한도를 정하는 제도

나) 지원기준

○ 지원대상

구 분	대 상
중앙정부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US25만불 이상인 업체
지 자 체	각 지자체 자율적 기준 설정

○ 지원품목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품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자체지원 품목 별도운용 가능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통으로 지원하는 품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원(중앙정부 10%이내, 지자체 25%이내)
- 중앙정부 지원품목이나, 지자체 지원품목이 아닌 경우 중앙정부만 지원 (10%이내)
- 중앙정부 지원품목은 아니나, 지자체 지원품목인 경우 지자체만 지원 (25%이내)

○ 지원한도

- 기본물류비는 표준물류비의 35%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
 - 지원비율 : (중 앙)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0%이내
(지자체)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25%이내
 - 지자체의 지원기준(농가지원 포함)을 수출물량기준으로 통일하고 총액한도 (25%)에 농가지원분을 포함
-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본물류비 지원을 중단
 - 지자체는 수출물류비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비율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용

다) 지원절차

○ aT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수출업체 지원

- 수출업체는 「수출업체지원시스템」에 매월 10일 이내 전월 말 수출실적을 입력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수출물류비를 신청

- 지자체에서만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aT 관할지사를 통해 지원 대상업체 등록 후 신청
 - 수출업체의 신청내역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지원금액 확정
 - aT와 지자체는 시스템 상 지원금액 확인 후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지급
- (중 앙) aT를 통하여 매월 수출업체 지원
-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통합하여 시·군·구가 수출업체 지원
- * 신규 표준지원단가 반영에 따른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업체 혼선 최소화를 위하여 지원지침 개편 이후 운영하며, 개편 전까지 기존 수출지원시스템 (atess) 활용

라) 기타사항

- 수출물류비 제재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업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지원하는 업체에 적용
- aT는 업체 제재 즉시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농식품부에서는 시·도에 관련 내용 통보,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제재내용 공유
- 지자체의 총액한도(농가지원 포함)를 초과하는 지원예산은 신시장 개척 및 수출인프라 구축예산 등으로 전환 지원

3) 중앙정부 지원기준

가) 사업개요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38,004백만원('15년도)
 - 신선농산물(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등) : 29,242백만원
 - 가공식품(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미곡류 등) : 8,762백만원
- 사업시행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 라 함)

나) 수출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기준 25만불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출자」 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은 지원제외

- 복수 부류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류별 수출액이 25만불 이상 되어야 함
- 수출물류비 지원 중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법인 간 합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전 수출실적은 신규사업자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화주 및 제조자(물품 공급자 포함)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조자의 수출실적은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사실과 관계없이 인정하되, 수출자가 수령한 수출물류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단,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일 경우, 제조자나 화주도 지원대상 등록 불가)

-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일본 채소류 ID제도 대상품목은 ID보유업체에 한해 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깻잎

○ 지원대상 품목

- 지원부류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미곡류 등 11개 부류

- 지원품목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 김치류, 인삼류, 유자제품, 녹차, 감귤농축액, 장류, 축산물, 쌀가공품 등 가공품은 주원료가 국산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주원료에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원료 : 인삼제품(인삼 및 엑기스), 유자제품(유자 또는 유자과즙), 김치(배추, 무), 감귤농축액(감귤), 된장·청국장(대두), 고추장(고추, 밀쌀), 간장(탈지대두, 밀), 녹차(차잎), 현미녹차(차잎, 현미), 조제분유·요구르트·우유[원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돈육열처리가공품(돼지고기), 냉동비빔나물(해당 재료), 막걸리(쌀, 밀), 쌀가공품(쌀)

○ 지원대상품목 선정 절차

- 지원지침 확정 이후 지원대상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품목 담당부서와 aT는 수출물류비 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지원필요성, 지원효과 등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또는 aT 담당부서로 요청

- 농식품부와 aT는 요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며, aT는 지원품목 선정에 대한 심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지원품목 심의결과 승인

○ 지원기간 : '15. 1. 1 ~ '15.개편(안) 공고 이전까지 수출 선적 분(선박, 항공)

- 단, 수출물류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품목 등은 단축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기본물류비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6~10%(품목국가별 지원단가)

• 기본물류비는 품목별 국가별 표준물류비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지원하되, 수출전략품목 및 수출협의회 구성품목은 10%이내, 기타 품목은 8% 이내에서 지원

* 품목별 수출협의회 구성(파프리카, 버섯, 인삼, 김치, 유자차, 전통주, 배, 양란, 단감, 막걸리, 사과, 딸기, 장류, 닭고기, 쌀, 채소종자)의 경우, 협의회 가입 시에는 10%, 미가입시는 6%를 적용하며, 수출협의회 신규가입은 신청일 기준, 승계 시는 승계일 기준 적용함

- 운송기점이 제주강원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국내운송비(10원/kg) 추가 지원

• 도착지점이 운송기점과 동일 시·도인 경우 및 수출자, 화주, 제조자(물품공급자 포함)의 자가 차량으로 운송 시는 지원 제외

[참고 1] 연도별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물류비 지원수준	표준물류비*20%	15	10	8~10	8~10	6~10	6~10
지원대상 수출실적 요건	전체부류 FOB 20만불 (단일부류15)	20 (15)	(20)	(25)	(25)	(25)	(25)

* '15년도 지원기준은 개편(안) 확정시점 이전까지 적용

* 정부 정책 변화 및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에 수출물류비 지원단가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향후 WTO 협상결과에 따른 수출물류비 감축 또는 철폐에 대비,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의 자생력 강화, 규모화를 위해 기본물류비 지원 수준의 단계적 축소 및 지원대상 수출실적 요건이 강화될 수 있음

○ 인센티브

- 전략시장 인센티브

- 지원대상 : 기본물류비 지원대상 수출자
- 지원품목 : 수출전략품목
- 대상국가 : 해당 품목의 연간 수출액이 30백만불 이상이거나 품목의 국별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국가를 제외하고, 향후 주 수출국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차상위 3개국 선정
- * 전략시장 대상국가는 사업기간 중 품목별 수출협의회 건의를 받아 농식품부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 * 수출액은 직전년도의 연간 통관실적 기준이며, 매년 대상품목 및 국가는 조정 가능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7% 추가 지원

- 원예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원예전문생산단지(정부지정) * '14년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결과 의거
- 지원기준 : 평가결과 최우수단지는 표준물류비의 10%, 우수단지는 7% 지원
- 지원조건 : 당해 원예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수출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하며 수출제품의 가공용으로 공급한 경우, 제품에 함유된 순수 원료 중량을 계산하여 지원
- * 가공제품 지원물량 계산식 : 제품수출량 × 원료함유율 × 원예단지 구매비중
- 신청방법 : 정부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농산물 출하공급 확인서 및 농가별 출하 내역서, 가공품은 정부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공급원료 사용(변경) 확인서 제출

-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

① 수출계열화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지원조건 : 품목별 선도조직 품위기준에 맞게 수출한 물량
(사업신청서상 제시한 물량한도)
- 지원비율 : 매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표준물류비의 3~5% 차등지원
- 신청방법 : aT에 선도조직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제출

② 연합조직 인센티브

- 지원대상 : 수출연합조직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지원조건 : 계약재배, 규격품, 공동브랜드 사용 시
(사업신청서상 제시한 물량한도)
- 지원비율 : 매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표준물류비의 3~5% 차등지원
- 신청방법 : aT에 선도조직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제출
- * 수출선도조직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관련 세부내용 및 기타사항은 「2015년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의 내용에 따름

- 인센티브 지원한도 : 해당되는 인센티브 모두 지원 가능

○ 신규 등록업체 지원

- 지원대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물량부터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되, 수출액은 먼저 선적된 물량부터 계산

- 적용 예 : A수출업체가 사과를 5회 수출한 경우 ①(1.2일) 10만불, ②(2.5) 5만불 ③(2.10) 7만불 ④(2.20) 5만불, ⑤(3.1) 3만불

⇒ 지원대상 요건 충족 수출실적 : 27만불 ① + ② + ③ + ④

⇒ 수출물류비 지원 : (④의 2만불에 해당되는 수출량 + ⑤에 해당되는 수출량) × 지원단가

- * 지원대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선적일에 수출품목이 다수인 경우 수출단가가 낮은 것부터 수출 실적에 산입하고 수출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

○ 지원한도

- 수출건별 지원액은 수출금액(FOB)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항공운송 수출의 경우는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기간 내 업체별 기본물류비 누계액이 5억원 초과 시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지원액	5억이하	5억초과~ 10억 미만	10억이상~ 15억미만	15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25억미만	25억이상~ 30억미만
지원비율	100%	98%	96%	94%	92%	90%

*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대상 제외

○ 산물형태(벌크형태) 수출지원

- 수출자는 수출물류비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aT에 제출
- 산물형태의 수출물량에 집행된 kg당 실 수출물류비(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의 10%와 해당품목 물류비 지원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되, 수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업체별 지원액이 지원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지자체의 지원액(또는 지원 예상액)과 합산하여 표준물류비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지원 불가

다) 품목별 세부지원 기준

구 분	세 부 지 원 기 준
공 통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수출물류비 지원신청 업체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 수출실적을 점검하여 당해년도 지원대상자를 확정 ◦ 기본물류비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 시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훼류의 경우 별도로 정함 - 항공운송 시는 Chargeable Weight 기준으로 지급 ◦ 인센티브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은 기본물류비 기준을 적용하되, 지원단가는 선임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함 ◦ HS코드가 불일치하여도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 가능, HS코드가 일치하여도 지원품목이 아니면 지원 불가 ◦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양상이 나타나는 품목은 일정기간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브랜드, 종자 및 품위기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물류비를 차등 지원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반송 또는 현지폐기 수출물량, 외화획득용 물량 중 미군납(해외기지 수출 제외),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한으로 시험·견본 수출한 경우와 정부비축 물자(마늘, 양파 등 - 농식품부의 지시에 의한 경우 지원 가능) 수출실적 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 단위 미만 절사 ◦ 중량은 Kg단위 소수점 이하 절사 ◦ 제주·강원지역 생산품에 대해 추가 국내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국내운송에 대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운송장을 제출하여야 함 ◦ aT는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성분배합비율표, 원산지증명서, 수출대금 입금확인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이에 응해야 함
과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자차는 유자성분 함량이 30% 이상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자차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성분배합비율표 징구
화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시 B/L상 총중량(절화류는 용적중량, 분화류는 계근중량)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적재 허용중량 범위내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화류(kg) : 12ft(2,349), 20ft(4,169), 40ft(8,329) - 분화류(kg) : 12ft(4,000), 20ft(17,500), 40ft(20,000) * 계근표상 중량 적용 * 용적중량(kg) = (박스 가로cm × 세로cm × 높이cm) / 6,000 × 박스개수 * 절화류 물류비 신청 시 박스규격이 명시된 물품공급내역서를 aT 지사에 제출하고, 각 지사는 해당 박스규격을 사용한 수출 건에 한해 물류비 지급 (반기별 1회 점검 실시) ◦ 총중량 기재된 B/L, Packing List, 계근표(분화류) 별도 제출하되, 절화류의 경우 B/L 또는 Packing List에 상자별 규격(가로cm,세로,높이) 및 박스개수, 타 업체 물량 흔적 내역 반드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B/L에 서로 다른 업체의 물량이 포함(흔적)된 경우, 컨테이너별 최대 적재 허용중량 범위 내에서 업체별 중량 비율에 따라 지원

구 분	세 부 지원 기준	
김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캐릭터 부착품에 한해 지원 ◦ 냉동비빔나물(콩나물, 시금치, 고구마줄기, 무, 당근 및 믹스 제품)의 원료가 되는 품목은 국산원료 구매확인서 징구 	
인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캐릭터 부착품에 한해 지원 	
전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농민주, 민속주) 또는 명인주로 지정받은 주류에 대해 지원 	
	막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농민주, 민속주) 또는 명인주 지정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나 국내산 주원료(쌀, 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
	리큐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곡물 또는 과일, 채소만 사용한 전통주에 한함
축산물	오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검역증 및 수출신고필증 상 White 또는 Grey Duck Feather 기재된 것에 한해 지원 *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별도 제출
	돈 육 부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돼지고기의 부산물 또는 부산물 열처리 가공품 * 검역증명서(부산물) 또는 식품위생증명서(열처리 가공품) 등 별도 제출
	우 유 탈지분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원유를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요구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원유 또는 탈지유를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조제분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원유, 탈지(분)유 또는 전지(분)유, 기타 주원료로 간주할 수 있는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제품
	우유, 요구르트, 조제(탈지)분유, 돈육열처리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및 수출 해당품목 원산지 표시된 배합비율표 또는 품목제조업 신고서 제출 * 검역증명서 또는 식품위생증명서 별도 제출
장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식품 인증업체 또는 국산 주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품목제조업 신고서 또는 배합비율표 제출 * 주원료 : 된장·청국장(대두), 고추장(고추, 밀쌀), 간장(탈지대두, 밀) 	
쌀 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식품 인증업체 또는 국내산 쌀을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품목제조업 신고서 또는 배합비율표 제출 * 가공밥은 국내산 쌀을 사용한 즉석밥, 볶음밥, 덮밥, 비빔밥 등을 포함 	
미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멥쌀, 찰쌀, 메현미, 찰현미에 한하여 지원 * 원산지증명서 제출 	
녹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식품 인증업체, 지리적표시등록업체, 국산 주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품목제조업 신고서 또는 배합비율표 제출 * 주원료 : 녹차(차잎), 현미녹차(차잎, 현미) 	

- * 품목별 세부지원기준 적용대상 : 중앙정부 지원 수출자, 중앙정부·지자체 동시 지원 수출자
- * 축산물 검역증명서 제출은 해당 증명서 제출 불필요 국가로 수출 시 생략가능
- * 지자체만 지원하는 수출업체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위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라)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 aT 홈페이지(최초 공고) 및 수출지원시스템(매월)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고
- aT지사 및 지자체 등을 통하여 수출자에 안내

○ 지원대상 등록

- 대 상 :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지원 대상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합계가 25만불 이상 수출자
- 등록방법
 - 수출자는 수출지원시스템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수출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aT 지사에 지원품목 수출실적증빙(수출신고필증, B/L)을 제출
 - * 입력사항 :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연락처 등
 - * 무역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이 의무임에 따라, 관세무역개발원의 무역통계 정보로 확인을 갈음하여 수출실적증빙 제출은 생략 가능
- 승 인
 - aT 지사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본사에 지원 대상업체 등록 요청문서 송부
- 통 보
 - 본사 승인 후 aT 지사는 수출물류비 신청방법을 수출자에 안내

마) 수출물류비 신청

○ 신청방법

- 지원대상 수출자는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 말 기준 수출건별 실적을 수출지원 시스템에 해당 지자체 수출량 및 국내 운송지역을 구분하여 입력
- 입력사항 : 수출 국가, 품목, 물량, 금액, 수출신고서번호 등
-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함께 aT 관할지사로 제출 (지자체 단독 신청 건은 해당 증빙을 각 지자체로 제출)

○ 수출실적 증빙자료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자는 그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aT로 제출함. 단, 지자체가 수출물류비 집행을 위해 수출실적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지자체에서만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그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여야 함

[참고 2] 제출서류

*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공 통
1. 수출신고필증 COPY본 1부 및 B/L COPY본 각1부(공통)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의 경우 B/L제출 불요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최초 1회) 3.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신규신청, 신고내용 변경 시) 4. 계좌입금 요청서(신규신청, 신고내용 변경 시) 5. 반송(현지폐기, 재수출)내역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1부(신청 시 전산동의로 같음) 6. 「수출농식품 공정거래지원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에 의한 수출 농식품 공정거래 서약서 1부(신청 시 전산동의로 같음) 7. 운송기점이 강원 및 제주지역인 경우 국내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 COPY본 1부
해당사항
1. (전통주) 전통주 제조면허 사본 또는 전통식품명인 지정서 사본 1부 2. (축산물) 동물검역증명서 1부 3. (가공식품) 국산원료 사용 수출품 제조 확인서 1부 * 유자차, 감귤농축액, 전통주, 유가공품, 돈육열처리가공품, 장류, 쌀가공품, 녹차 등 4. (김치/인삼) 캐릭터사용(부착)수출확인서 1부 5. (절화류) 수출용 박스 주문발주서 및 물품공급내역서 1부 6. (미곡류) 원산지증명서 1부 7. (채소, 과실, 화훼류)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농산물 출하공급 확인서 1부 8. (채소, 과류, 화훼류)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농가별 출하 내역서 1부 9. (제조자 또는 물품공급자에게 수출물류비 지원을 동의한 수출자)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확인)서 1부

바) 수출물류비 지급

- aT 지사는 수출자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등 제 증빙서류와 수출지원 시스템 입력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aT 본사 통보
 - aT는 수출물류비 지급 전 필요시 수출자에게 수출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제 증빙 징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aT 본사는 수출물류비 지급액을 산출하여 지사에 통보하고 지사는 해당 물류비 지급하며, aT 본사는 해당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함
- 각 지자체는 자체 검토 후 지출함

4) 안전성 및 반송물량 관리

가) 안전성 기준 및 관련법령 준수

- 일본으로 수출하는 채소류(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깻잎)는 「일본 수출 채소류 안전성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연중 품목 추가 시에도 동일 적용
- 미국(배), 대만(배, 사과, 복숭아)으로 수출하는 과실류는 상대국과의 검역협상 사항,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산물은 「대 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EU 등으로 수출 시 상대국의 검사 및 검역기준 준수
- 돈육 및 돈육가공품(부산물, 열처리가공품)은 수출국에서 지정 또는 승인한 제조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출하여야 함

나) 기타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에 대한 지원회수

- 수출자의 수출 농식품이 검역위반, 클레임 제기 등으로 반송 되거나 현지 폐기, 타국으로 재수출 한 경우
 - 반송 또는 재수출 사유, 내역, 관련 증빙(수입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aT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반송 또는 현지폐기, 재수출 한 물량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납 또는 정산 요청하여야 함

- 사후관리과정에서 수출자가 반송(현지폐기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 aT는 반송(현지폐기)된 물량에 지원한 수출물류비를 회수하고 반송(현지폐기)사유에 따라 동 지침 「5) 제재기준」 적용 조치

- aT는 수출 관련기관(관세무역개발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수출 농식품의 반송(현지폐기)현황을 분기별로 조회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여부 조사. 단,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파악 불필요

5) 제재기준

가) 제재내용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1.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수령한 경우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나. 정부의 승인 없이 정부비축물자를 수출용으로 공급 또는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다. 국내산이 아닌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라. 주원료가 국내산이 아닌 원료를 혼합하여 생산된 가공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마. 수출자가 원예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신청 시 해당단지 물량이 아닌 물량을 혼합하거나, 공급량을 허위로 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업체 및 해당단지에 적용						○
바.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2. 안전성기준 및 관련법령 위반						
가. 수입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수출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나. 반송·폐기 또는 재수출로 자진 신고한 사유가 수입국의 안전성 기준 위반인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2. 안전성기준 및 관련법령 위반						
다. 기타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 국내재배단계 1년 이내 안전성 위반 - 수출업체의 ID 사용 위반(도용, 혼입 등)			1회	2회	3회	
라. 현지검역 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지정 요건(선과장, 도축장)을 충족하지 않은 수출품을 수출하고 수출 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에 대한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의 수출 물류비 지원 제한				○		
마.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국 관련 기관에 1년 이내(최초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발된 농가가 소속한 단지 ⇒ 제재내용 :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지원 제한		1회	2회	3회		
바. 품목별 수출협의회에서 정한 수출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해당 수출협의회와 농식품부 및 aT 심의를 거쳐 제재내용이 확정된 수출업체 ⇒ 제재내용 : 해당품목 수출물류비 지원 제한(6% 감경지원 아님) * 3회 위반 시는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				1회 (해당 품목)	2회 (전 품목)	
사.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운영기준」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및 수출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는 농식품부 및 aT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3. 기 타						
가. 수출농산물을 폐기 또는 재수출하고 30일 이내에 aT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회 가항 적용					2년 이내 ○	
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수출업체의 수출농산물이 반송되었으나, 30일 이내에 aT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3년 내 동일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회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이상
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부나 aT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라. 단순 착오에 의한 과오신청으로 인해 물류비를 과다 또는 중복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과오 지원액 회수 및 제재조치	○					

* 제재기준 적용대상 : 중앙정부 지원 수출자, 중앙정부·지자체 동시 지원 수출자

* 지자체만 지원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위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정하여 시행 가능

나) 제재기준 적용

- 수출자, 화주, 제조자(물품공급자 포함) 중 수출물류비 지원을 제한받는 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도 지원을 제한. 단, 수출선도조직(연합법인 포함) 및 원예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조직 및 단지만 지원을 제한함
- 제재대상은 법인 및 대표자이며 지원제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당품목, 지원제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부류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중단
- 제재기준 제2호(안전성기준 위반 및 관련법령 위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수출자가 동일 제재사유로 다시 지원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출자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1년 간 중단
- 지원제한 기간이 동일한 2개 이상 조항을 동시에 적용해야 되는 경우는 상위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
- 지원제한 기간이 상이한 2개 이상 조항을 동시에 적용해야 되는 경우는 지원제한 기간이 긴 조항을 적용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
- “경고” 제재를 받은 수출자(정부단지 포함)가 제재기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
- 제재 받은 수출자(정부단지 포함)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aT는 이의신청 내용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심의
 -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일본 채소류 ID제도 대상품목의 안전성 위반의 경우는 「중앙안전성위원회」를 통해 심의
 - 단, 제재기준 3 기타. 나. 반송물품 의무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수출자는 제재기간이 절반이상 경과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 마련 후 제재기간 중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방지대책 및 제재처분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음

- 제재기산일은 아래와 같음
 - 수출물류비를 지원한 날과 상관없이 위반일자(해외의 경우는 문서 등에서 정한 위반일 등)부터 기산
 - 심의를 통한 제재조치는 제재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
 - 지원제한 기간 중 다시 지원제한 또는 차상위 제한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원 제한하는 날부터 기산

- 제재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중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건전한 수출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원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식품부 및 aT가 위반내용의 경중,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재수준을 심의·결정할 수 있음

6) 사후관리

- aT는 연 1회 이상 가공식품 지원업체를 방문하여 지원품목의 원료구매처, 제조과정, 수입원료 사용, 국산원료 표기 등을 점검하고 사용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음

- aT는 반기별 1회 이상 절화류 등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 aT는 이미 지급한 수출물류비를 회수할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7) 기 타

- 수출물류비 지원제도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 목적상 필요할 경우 일부 내용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예외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음

1 미국의 식품수입제도

가. 수출준비사항

1) 미국의 식품 수입제도

- 미국은 2001. 9. 11 테러, 탄저균사건 이후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등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식품분야도 “공공보건과 바이오테러대응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public Law 107-188:The Bioterrorism Act)” 을 2002. 6.12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바이오테러대응법은 5개 주제(Title)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오테러의 3번 주제 (TitleIII)의 하부주제 A(Subtitle A(식품공급의 보호))의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음
 - 식품관련시설의 등록
 - 식품수입의 사전신고
 - 식품에 관한 기록의 정비 및 보존
 - 행정적 억류조치

2) 수입식품 관련법규

- 미 연방 식품의약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 공정포장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수입우유법/치환유법(Import Milk Act/Filled Milk Act)
- 21주제 CFR, 특히 파트 1, 하부파트 E수입과 수출(Title 21 CFR, especially Part 1, Subpart E-Import and Exports)
- 보건 및 안전을 위한 방사능 통제 법(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Act)
- 연방 부식성 독 법(Federal Caustic Poison Act)

3) 온라인 시설등록절차

가) FDA웹페이지(<https://www.access.fda.gov/oa>)에서 ID와 Password를 만든 후 로그인

나) FDA시설등록 절차

Section 1 - Type of Registration (등록종류)

국내등록 또는 국외등록여부 입력 및 기존시설등록 여부 입력

Section 2 - Facility Name/Address Information(시설명/주소)

등록시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입력

Section 3 - Preferred Mailing Address Information(우선주소지)

선택사항으로 등록시설의 주소가 위와 같을 경우 입력 불필요

Section 4 - Parent Company Name/Address Information(회사명/주소)

등록시설을 소유하는 회사명과 시설명이 다를 경우 반드시 입력

Section 5 - Facility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비상연락처)

외국시설을 위한 선택사항으로 미입력시 미국 내 에이전트 연락처를
비상 연락처로 간주함

Section 6 - Trade Names(사업자명)

등록시설의 이름과 다른 사업자명이 있을 경우 입력

Section 7 - United States Agent(미국 내 연락처)

외국시설의 경우 미국 내 에이전트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

Section 8 - Seasonal Facility Dates of Operation(시설가동기간)

Section 9 - Type of Activity Conducted at the Facility(시설가동성격)

선택사항으로 등록시설의 가동이 연중이 아닌 시즌일 경우 입력
선택사항으로 시설의 용도가 제조, 가공, 포장, 저장인지에 대해 입력

Section 10 - Type of Storage(저장시설형태)

선택사항으로 시설의 주 용도가 저장일 경우 입력

Section 11a- General Product Categories-Food for Human Consumption

식품에 관계된 시설일 경우 해당사항에 표시하며 식품이 아닐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 표기

Section 11b - General Product Categories-Food for Animal Consumption

선택사항으로 동물용 사료에 관계된 시설일 경우 해당사항에 표기

Section 12 - Owner, Operator, or Agent in Charge Information

소유자, 운영자, 에이전트 정보입력

Section 13 - Certification Statement(입력내용확인)

입력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 위의 모든 사항의 입력과 확인이 끝나고 제출 후 등록번호 부여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ucm073706.htm>

4) 재등록절차

- FSMA가 2011년 1월 4일에 법으로 지정된 후 미국에서 사람 및 동물이 소비하는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국내 및 해외 시설등록이 필수
 - 시설등록은 2년에 한번 FDA에 재등록 필요, 매 짝수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 2015년 1월부터 FDA에 등록 또는 재등록되지 않은 해외 식품시설에서 수입되어지는 식품은 FD&C Act의 Section 801(I)에 의해 억류

- 업데이트하는 것과 재등록은 엄연히 다름
 - 재등록기간에는 FFRM(Food Facility Registration Module) 메인메뉴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재등록을 마친 후에 업데이트 필요시 버튼 사용가능

가) 재등록 방법

(1) FDA Industry Systems에 로그인

- Food Facility Registration으로 들어가 FFRM(Food Facility Registration Module)홈에서 Biennial Registration Renewal을 선택



(2) 격년 등록(biennial registration)을 해야하는 등록된 시설 리스트가 보이면 등록을 선택

(3) 각 섹션마다 수정(edit)버튼이 있는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 후 제출(Submit)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ucm324780.htm>

2

라벨링제도

가. 라벨링제도 일반

1) 식품표시 제도

- FDA가 관할하며, 식품명, 내용물의 실중량, 원재료명, 영양분석표 등을 주 표시면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 (주 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
- 식품표시제도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조항이 있음
 - 원재료표시: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영양분석표: 영양분석표 면제 대상으로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의 경우 구매시점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 별도표기 권장

2) 영양분석표 (Labelling)

- '90년부터 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 (영양표시 및 교육법)에 의해 시작된 조치로서 미국내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류에는 상세한 영양 분석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이 조치는 우리 농수산물 수출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 주정부에 따라서는 연방 식품의약국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성분분석표를 요구하기도 하며, 이러한 특별 요구사항은 지방정부와 품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특별한 조사가 요구됨
- 지방정부에서 FDA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세분화된 영양 분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식품제조 과정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
- 미 정부에서는 영양분석표가 미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 3의 검사기관 (식품 제조회사와 관계없는 제 3의 기관)에서 작성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함

-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미 정부에서는 문제의 식품을 다시 시험하고 새로운 증빙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얼마든지 반복 요구할 수 있음
-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전 미국내에서 허가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이런 검사기관들은 주로 미국내에 있음) 식품검사와 영양분석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미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3) 특징

- 식품라벨링 규정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하게 식품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음. 허위정보를 표시할 경우에는 부정 표시식품(Misbranded Food)로 간주하여 수입이 금지됨 그러나 라벨링 규정에 맞도록 개선된다면 수입이 허용 될 수 있음

4) 기본표기사항

- 식품의 명칭은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며 포장용기의 주표시면에 표기해야 하고 활자의 크기는 주표시면에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함
- 순중량의 표시는 주요면 하단 30%위치에 표시하고 미국단위와 미터법단위로 함께 표시해야 함. 제조자, 포장자, 유통자의 명칭과 주소는 성분표시면과 같은 면에 기재해야 하며 예외가 없는 한 완전한 주소를 표시해야 함
- 성분표시는 라벨의 표시면, 측면 혹은 후면의 정보표시면에 표기할 수 있으나 제조자, 포장자 혹은 유통자와 같은 면에 표시해야 함. 성분의 목록순서는 중량이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의 순으로 하고 통상명칭으로 기재해야 함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성분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함

5) 일반표기사항

- 라벨표시사항(Label statements)은 주표시면(principle display pannel ;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Information pannel ; 주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함

- 주 표시면에는 식품명과 실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정보표시면에는 주 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과 영양표시 등과 같은 사항들을 표기함

가) 식품명(Statement of identity) 표기

- 식품명은 반드시 주 표시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표시면의 인쇄 중 가장 큰 것의 1/2 이상의 크기이어야 함
- 식품이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갖는 경우 이를 식품명으로 사용하며 일반적, 통상적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을 잘못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식품명은 포장의 바닥과 평행하게 쓰여져야 함
- 식품명표기는 포장된 식품이 액체가 아닐 경우 ‘가늘게 썰어진 것인지(sliced)’ ‘썰지 않은 것인지(unsliced)’ ‘반으로 잘라진 것인지(halves)’ 등의 식품형태를 명시해야 함
- 어떤 신제품이 기존에 있던 식품과 유사하며 기존 식품의 대체재로 사용될 때, 만약 그 신제품이 기존의 것보다 필수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함량이 낮다면 신제품에는 ‘모방’ (imitation)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
- ‘모방’ (imitation)이라는 표기는 식품명과 같은 글자 크기와 선명도로 표시해야 함
- 과일이나 야채의 그림, 맛이나 외관, 라벨표기 등으로 소비자가 주스를 함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료는 주스(과일이나 야채의 천연즙)의 함량을 %로 표기해야 함
- 아래와 같이 향미(flavor)를 위해 소량의 주스가 함유된 음료에는 주스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제품에 ‘향미’ (flavor) 또는 ‘향미의’ (flavored) 라는 용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주스’ 라는 용어가 원재료명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어떤 방법으로든 주스가 함유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경우
- 100% 주스로 만들어진 음료의 경우는 ‘주스’ 라고 표시할 수 있으나 100% 미만으로 희석된 음료는 음료, 드링크, 칵테일의 의미를 갖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또는 ‘희석(diluted) ____주스’ 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음

나) 내용물의 실중량(Net Quantity of Contents) 표기

-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포장재나 용기 안에 담겨있는 식품의 양을 가리키는 라벨의 표시 사항임
- 내용물의 실중량은 별도 항목으로서 주표시면의 밑부분 30%이내에서 포장의 바닥면과 평행으로 쓰여져야 함
- 내용물의 중량은 미터법(grams, kilograms, milliliters, liters)과 미국 통상단위법(ounces, pounds, fluid ounces)에 따라 두가지로 표기되어야 함
- 미터법 표기 위치는 미국통상단위법 문구 위치의 앞, 뒤, 위, 아래 모두 가능함
예) Net wt 1 lb 8 oz (680g)
-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용기나 포장 안의 식품의 실중량만을 포함하며 용기나 포장지, 포장재의 무게는 포함되지 않음. 실중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채운 용기의 평균무게에서 빈포장용기, 뚜껑, 포장지의 평균무게를 뺀 것
- 일반적으로 용기안의 식품에 부가된 물이나 다른 액체는 실중량 표시에 포함됨

다)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list) 표기

- 원재료명 목록(Ingredient list)이란 식품에 사용된 각각의 원재료를 주된 것부터 내림차순(중량이 가장 많은 것부터 가장 적은 것의 순서로 쓰는

방식)으로 나열한 것을 말함

- 원재료명 목록은 식품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주소 등이 있는 면(주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영양표시,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주소의 앞이나 뒤에 표시할 수 있음
- 원재료명은 규정에 다른 용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사용함예) 과학용어인 ‘sucrose’ 대신 ‘sugar’ 를 사용함.
- 허가된 방부제(preservative)를 식품에 첨가할 경우 원재료명에 그 방부제의 일반적 또는 통상적 명칭을 기재하고 아래의 예처럼 방부제의 기능을 명시해야 함예) ‘방부의’ (preservative), ‘부패지연’ (to retard spoilage), ‘곰팡이방지’ (mold inhibitor), ‘향미보호’ (to help protect flavor) ‘색상 유지증진’ (to promote color retention)
- 향신료(spices),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는 원재료명 목록에 특정한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기재하거나 ‘향신료(spices)’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 라고 표시할 수 있음
- 파프리카(Paprica), 튜메린(Tumeric), 샤프론(Saffron) 등 색소로도 사용되는 향신료는 ‘파프리카’ 와 같이 실제 이름을 기재하거나 ‘향신료와 색소’ 라는 용어로 표시함
- 색소의 표기는 공인된 색소의 경우 약어 또는 특정 이름을 사용하고 공인이 면제되는 색소의 경우, 색소 규정이 승인한 색소들만 사용해야 함
예) 공인된 색소(Certified colors) : ‘FD&C Red No. 40’ 또는 ‘Red 40’
공인이 면제된 색소(Non Certified colors) : ‘caramel coloring’ 또는 ‘beet juice’

라) 영양표시(Nutrition labeling)

- '94년 5월 8일 이후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New Nutrition label을 의무화
- 다음의 식품들은 영양표시 면제대상이며 *가 표시된 식품들로 영양정보가 제공되거나 강조표시가 된 경우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함

- 소규모로 조제된 식품
 -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가정으로 배달되어 바로 먹는 식품
 - 제조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조제식품(요리한 고기, 훈제생선, 소시지, 과자, 사탕류)
 - 인스턴트 커피(plain, 무가당)나 대부분의 향신료 등과 같이 특별한 영양소가 없는 식품
 - 조제분유와 4세 미만의 영아, 유아용 식품(이 종류의 식품에 대해서는 수정된 라벨규정이 있음)
 - 식사 보조용 식품(dietary supplements)
 - 의료용 식품(medical foods)
 - 소매되기 전 가공이나 포장을 위해 큰 단위로 수송되는 식품
 - 생식품이나 해산물(자발적으로 겉면에 영양표시를 할 수 있음)
 - 주문 가공생선(Custom-processed fish)이나 사냥육(game meat)
 - 상자 단위의 계란(영양정보를 뚜껑 안쪽이나 상자 안에 삽입)
 - “이 포장은 소매판매용이 아님” 이라고 표시되어 안에 여러 단위의 포장이 되어 있고 밖에 모든 필요한 표시문구가 있는 경우
 - Self-service bulk foods : 영양표시는 겉면에 하거나 본래 용기에 잘 보이도록 표시함
 - 판매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증정용으로 만든 식품
- ‘영양정보(Nutrition Facts)’ 의 표시는 원재료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이름, 주소와 함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음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면(alternative panel)’ 에 표시할 수 있음
- 포장이 세로로 공간이 부족해서 위와 같이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로로 표시할 수 있음
- 아침식사용 씨리얼이나 날개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소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소포장 단위 식품)의 경우에 제조자는 각각의 소포장에 일일이 영양정보 표시를 하거나 한 개의 포장에 통합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마) 제조자·포장업자·유통업자 표시

-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조, 포장,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 제조, 포장, 유통업자와 제조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회사와 제품의 관계를 명시하는 ‘~에서 제조한’ ‘~에서 유통하는’ 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 거리주소 : 회사이름과 주소가 현행 전화번호부나 인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도시명, 주명(수입식품일 경우 국가명), 우편번호

나. 품목별 표기방법

1) 건강보조식품

가) 관련법규

-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DSHEA)
- DSHEA에 근거한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 규정은 1997년 9월 23일 입안되어 1999년 3월 23일부터 효력 발생

나) 라벨링 요구조건

- 건강보조식품의 명칭(Statement of Identity) : 통상적, 일반적 명칭과 dietary supplements 표기를 병행 예: “ginseng”
- 순중량(Net quantity) : 예, “60 capsules”
- 구조-기능 주장 및 진술(Structure-function claim and statement)
예: “This statement has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복용법(Direction for use) : 예, “Take one capsule daily.”

- Supplement Facts panel(건강보조식품영양정보) : 일반식품의 영양분석표와 유사한 것으로 1회분 용량, 활성성분 함량 등이 기재
- 성분목록 : 일반적, 통상적인 명칭으로 함량이 많은 것에서 작은 것의 순
- 제조업체나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이름 및 주소
- 유통기한표기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표기시, 합법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함

2) 신선농산물

예외조항

- 원재료명 표기 :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므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영양분석표 : 영양분석표 면제대상으로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의 경우 구매시점(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 별도표기를 권장함

다. 라벨링 표기오류 사례

1) 통관 또는 현지 유통시 문제 사례

- 라벨링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미국에 반입되는 한국식품 가운데 15%정도가 라벨링미비나 부정표시로 수입이 거부되고 있음.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더라도 현지에 반입될 때 스티커 작업을 하면 통관시 전혀 문제가 없음. 일부 제품의 실제 내용물과 라벨링이 다를 경우, FDA테스트를 거쳐 부정표시로 반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현지 수입자가 생산자, 수출자로부터 정확한 라벨링 정보를 입수하고 라벨링 규정에 맞춰 개선조치를 신청해 승인받는다면 스티커처리 등 보다 간결한 방법으로 가능

라. 라벨링관련 규정

1) 관련법 및 규정

- 연방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A)에 의거 ChapterIV-Food, Section 402-Adulterated Food 그리고 Section403- Misbranded Food(21USC-Section342/Section343)에 따른 관련 법은 아래와 같음
 - The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식품라벨링 및 교육법)
 - The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건강보조식품 및 교육법)
 -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바이오테러리즘법)
 - The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식품 알러지 라벨링 및 소비자보호법)
-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of 1996(바른 포장 및 라벨링법)은 15USC Chapter 39-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Section 1451-1461을 따름
- 수입식품원산지표기와 관련해서는 The Tariff Act of 1930(관세법)에 의거 19USC Section 1304-Marking of imported articles and containers를 따름
- 미 식품의약국규정(FDA Regulations)은 미 연방법 21 CFR Part100-General, Part101-Food labeling, Part105-Food for Special Dietary Use, Part119-Dietary Supplements that present a significant or unreasonable risk, Part190-Dietary Supplement and other Parts 102-189에 따름
- CBP Regulations(미세관국토안보부규정)으로 연방법 19CFR-Part1 134 Marking of Country of Origin을 따름

2) 산업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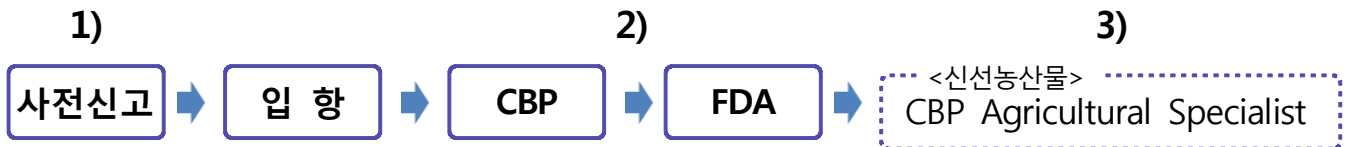
- Guidance of Industry : A Food Labeling of 2008
- Guidance of Industry : A Dietary Supplement Labeling Guide

3) 관련 규정 세부내용 검색링크

- <http://www.fda.gov/Food/LabelingNutrition/FoodLabelingGuidanceRegulatory>
- <http://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legislation/default.htm>
-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
- <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

3 | 수입통관절차

가. 식품수입통관 절차



- 1) 수입회사가 수입신고서(Entry Notice)를 접수시키고 관세청의 통과를 위한 보증금 (Customs bond)을 준비
 - '13.12월부터 모든 수입식품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사전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FDA가 분석·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식품의 사전통보를 의무화함
 - 수입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수입 서류 및 통관당국(CBP)의 입국장 문서 검토내용이 FDA 데이터베이스 OASIS(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에 입력되면, 이를 통해 FDA가 선적물의 상대적 위험도를 판단하고 세부 검사 여부를 결정
- 2) 국토안보국(CBP) 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입 허가 결정을 요청함
 -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해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입이 허가됨
 - 검사할 필요가 있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FDA가 샘플조사를 하며, 이 조사는 FDA 직원이 샘플을 수거해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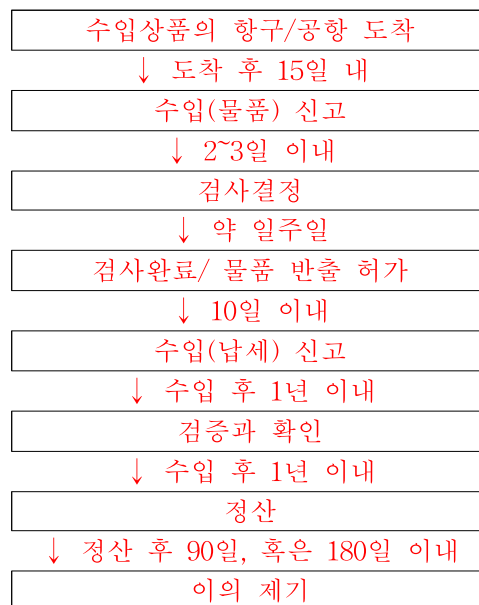
- 샘플조사 결과 FDA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그 즉시 수입이 허가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수입이 거부되고 불합격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이의 제기할 권리가 있음
 - 최근 샘플조사없이 역류조치할 경우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합당하면 허가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됨
- 3) 신선 농산물은 CBP Agricultural Specialist에서 병충해 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시 수입허가를 하며, 병충해 발견시 수입을 금지시키고 CBP 감독하에 폐기 또는 반환조치

나. 세관 통관 절차

1) 통관절차의 형식

- 상품의 수입통관은 관세납부의무의 시점에 따라 일반수입통관, 보세통관 및 임시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통관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보세통관은 통관후 일정 보세기간동안 관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한편 임시통관의 경우는 납세납부의 의무가 없으나 일정조건 위반시 특별의무가 발생함

2) 통관절차 흐름도



다. 세관 조직과 임무

- 9.11 테러사건 이후 국토안보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세관이 이민국과 동식물 검사국의 검사기능과 인력을 통합하여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로 국토안보부 산하에 확장 편성됨.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미국역사상 최초로 국경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통합된 국경수비 연방기관으로 철저하고 효과적인 국경관리, 통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테러분자와 테러용 무기류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운영예산은 110억불 이상이며 고용인원은 약 5만 8천여명에 이룸. 주요 조직으로는 Office of Field Operations, Office of Border Patrol, Office of Air and Marine,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와 327개에 이르는 일선통관항 세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라. 수입자의 자격 및 책임

- 많은 국가의 경우 수입업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수입업 면허가 필요하고 개개 수입거래에는 외환송금을 위한 수입인증이 필요함. 그러나 미국은 누구든지 수입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주류 및 기타소수의 특정상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상 면허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외환의 해외유출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수입인증 제도도 존재하지 않음. 다만 수입통관 전에 일반적으로 연방소득세 등록번호와 함께 세관에 수입자등록을 함. 등록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복수의 수입부서를 갖거나 수입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는 복수의 등록을 취득할 수도 있음
- 미국에서 설립된 기업도 외국인 지배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업에 종사할 수 있음. 더욱이 외국의 기업도 조건만 만족시키면 미국내 연락사무소 또는 대리인의 지정을 통하여 수입자로서 직접 통관행위를 할 수 있음. 이는 외국의 기업이 미시장의 직접진출을 위한 처음단계로서 활용하는 제도임
- 수입자는 당해 수입상품의 선하증권상 수하인 또는 소유자일때에만 통관 행위를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수하인과 소유자는 동일인이지만 무역거래의 특성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음. 예를 들어 수출자 또는 구매자의 미국내

대리인이 수하인인 경우는 수하인과 구매자는 동일인이 아님. 한편 수입자금의 금융자가 담보권행사를 위하여 수하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결국 수하인 또는 소유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통관신고 및 그에따른 통관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통관신고자는 미 관세법상 수입자로 간주되어 당해상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법상 모든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됨

- 수하인과 소유자의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 것은 미 관세법 및 다른 수입품에 관한 법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함. 기타 법규는 관세법과의 별도의 개념에서 수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수하인과 구매자의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이들 법규 아래에서 수입에 따른 책임부담의 범위를 결정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수하인과 구매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관련 거래 및 계약의 내용을 감안 각 케이스별로 관련법규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

마. 수입(물품) 신고(Entry)

일반수입통관의 첫단계는 수입(물품) 신고로 수입품의 세관구역 밖으로의 반출을 허가받는 절차임. 수입자는 수입품의 항구도착전 5일부터 사전신고가 가능하고 항구 도착후 15일 이내에 수입물품신고를 하여야 함. 수입(물품)통관 신청서류의 제출시점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관세율이나 기타 수입관련 법규의 변경은 일반수입통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통관 신청서류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임

1) 신고절차와 서류

- 신고서 전송(ABI 를 통한CBP Form 3461 내용 전송)
- 무서류허가(Paperless Release)
-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CBP Form 3461,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이나 항공증권, 통관본드,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함
- 수입신고시 한미자유무역 협정특혜 청구를 할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2) 통관 본드(Customs Bond)

- 수입(물품)통관 신청시 수입금액이 2500불이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통관본드를 제출하여야 함. 통관본드는 세관과 수입자 및 본드발행자의 이에 대한 연대보증 조항을 담고있음. 일반적으로 통관본드는 결산에 따를 관세부족액의 지급과 사후 법규위반 발견시의 수입물품의 세관구역으로의 반납 등의 수입자의 의무를 정함
- 통관본드는 수입자가 이들 의무의 불이행시 세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규모를 미리 약정하고 있음. 세관은 본드배상금을 다른 벌과금과 함께 병과할 수 있음. 또한 세관은 통관서류상 원산지의 고의적 허위표기에 따른 벌로 수입자로부터 최고 그 시장가격에 상당하는 민사벌금을 추징할수도 있음. 본드배상금은 사적 계약상의 벌금인 반면 민사벌금은 공법상의 벌금임

3) 한미자유무역 협정 특혜 원산지 증명(U-KFTA Certification)

- 수입(물품)신고시 한미자유무역 협정특혜 청구를 할 경우에 소지할 원산지 증명서(첨부 3 참조)는 세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시 유의할 사항과 필수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음

가) 필수 기재항목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 수입상품의 명세
- 수입상품의 분류번호
- 특혜관세 결정기준
- 단일 선적상품
- 복수 선적상품
- 서명고 서명자의 연락처, 서명일자
- 증명(보증)

나) 작성시 유의사항

- 성분목록과 제조과정에 관한 실제적,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한 후, 적용 가능한 모든 분류규정들을 해석, 적용하여 최적의 분류번호를 결정
- 상기의 분류번호에 적합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에 관한 모든규정들 (예를 들면, GN33(b)(ii)(A)—tariff shift rule; GN33(b)(ii)(B) - regional value

content rule; GN33(e) - Deminimis rule; GN33(O) - PSR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특혜관세 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a)을 결정함(예를 들면, PSR-CC, CTH, CTSH)

- 성분목록과 제조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분석한 후 특혜관세 결정 기준(preference criteria)을 해석, 적용하여 수입상품이 특혜관세 기준이 정하는 세번변경 요건에 해당거나 역내산 부가가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한국산 특혜관세 원산지를 결정함
- 서명한 작성자가 오류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짐

4) 억류 및 검사조치(Hold & Exams) :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할 경우 억류 및 검사조치를 취함

가) 억류조치

- 선박회사의 적화 명세목록에 입력된 정보에 기초하여 행하는 억류(Manifest Hold)와 특정이슈(즉, 소비자 제품의 안전기준,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의한 규제, 정확한 분류 및 평가 등)의 준법여부를 검증하는 통상집행 억류(Commercial Enforcement Hold)등이 있음

나) 검사 방법

- 검사방법으로는 안보검사(비접촉검사 방법, 예를 들면, X-ray 검사등), 농무검역검사(예를 들면, Seal - check, Back-in, or Intensive Exam), 통상 집중검사(Intensive Exam)가 있음

다) 검사 목적

- 수입품의 적법성, 법규위반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수입물품을 검사함. 예를 들어 마약 및 상표등의 모조품의 수입은 당연히 불법이며, 쉐타품목의 경우 쉐타량을 초과하는수입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불가능함. 수입품이 합법적일지라도 원산지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통관은 허용되지 않음. 한편 물품의 실제내용과 통관신고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갖는 경우 일정 벌을 부과할 수 있음

라) 검사 결과

- 검사에 따라 범규위반이 발견되면 세관은 수입품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는 곧장, 압류조치 또는 벌금조치를 취하기도 함. 특히 보류조치의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범규위반 사항을 교정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음. 물론 수입자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결론 도출상의 오류 또는 법적근거의 부재를 들어 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구매자에게의 신속한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조치의 정부당성과 관계없이 지적된 범규위반사항을 재빨리 교정하여 재검사를 받는것이 중요함. 물론 이와는 별도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일도 매우 중요함. 조치가취소되지 않을 경우 범규 위반 전력에 따라 향후 통관시 계속적으로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바. 수입(납세) 신고(Entry Summary)

수입품의 물품통관후 10일 이내에 수입자는 추정관세를 그에따른 서류와 함께 세관에 납부하여야 함.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신고절차와 서류

- 납세신고서의 전송 (ABI 를 통한 CBP Form 7501)
- 무서류허가
-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CBP Form 7501, 추정관세 납부, CBP Form 3461, 상업송장, 포장리스트, 항공이나 선하증권,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대부분 품목의 통관이 물품검사가 아닌 서류심사에 의존하므로 상업송장은 통관을 위한 가장 기본적 서류임. 특히 상업송장은 세관이 수입물품의 상품분류 및 관세부과 기준액 평가를 위하여 이용하는 기초서류이기 때문에 상품분류 및 관세부과기준액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그리고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 묘사내용의 차이에따라 상품분류 및 적용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여야 함. 또한 해당 수입거래에 관련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모든 비용요소, 할인액 및 환급액을 기재하여야 함. 수출판매자 및 수입구매자의 이름도 표기하여야 한다. 이들 요구되는 정보들은 관세부과 기준액을 산정함에 필요한 정보들임

- 품목에 따라서는 특정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거나 별도의 특별송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이들 송장기재의무의 불이행은 경우에 따라 민사벌금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이의 이행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영업비밀의 누설 및 서류기재의 번잡성이라는 부담을 주게됨. 따라서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이들 부담을 피할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송장기재내용 : ① 입항지, ② 판매일시, 장소, 판매자, ③ 상품적요, ④ 수량 및 무게, ⑤ 매매가격, ⑥ 각종 발생비용(포장비, 수송비 등), ⑦ 각종 수출품의 할인, 환급, 보조금, ⑧ 원산지, ⑨ 상업송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외에 지불된 상품이나 서비스

사. 신고 후 절차

1) 사후 정정신고(Post-entry Amendment)

- 수입자는 기존 신고행위의 정정을 신청하여 세관의 심사와 결정에 따라 기존 신고행위를 정정할 수 있음

2) 검증 절차(Verifications)

- 세관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제출한 세번, 과세가격, 원산지, 특혜관세 원산지(특혜관세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여 협정국내의 역내제품을 판단), 그리고 기타 신고내용의 관세법규의 준수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CBP Form 28 -정보요구서를 발부,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요구한 후 심사와 확정절차를 거친후 CBP Form 29 -결정을 통지하여 확정함

3) 한미자유무역협정 특혜청구의 수입건별 검증(Port Verifications)

- 검증절차 : 한미자유무역 협정특혜관세 원산지를 확정하기 위한 검증절차도 동일한 서식 CBP Form 28과 CBP Form 29를 사용하여 수입건별로 수입지

관할 지방세관의 수입품 전문 세관공무원이 수입건별로 검증함. 검증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같이 진행함

- 가) 검증선정의 기준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의 준법기록을 근거함
- 나) CBP Form 28 -정보요구서를 발부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차 이상의 정보요구서를 발부하여 자료를 수집함
- 다) 필요시 수입자를 방문하여 검증하거나(including the check of internal control), 혹은 필요시에 수출자, 생산자를 현지방문하여 검증할 수도 있음
- 라) 상기의 절차를 통하여 수집한 검증자료를 심사하여 CBP Form 29 -결정 통지서를 사용하여 예비결정 혹은 최종결정을 통보함

○ 자료 요청 : 정보요구서(CBP Form 28)를 사용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수입상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의 제출이 요구됨

-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 원재료 목록과 원재료 구매자료, 생산공정자료(하청 계약 생산자료를 포함)
- 수출한 상품이 해당공장에서 실제로 생산된 상품인지를 입증하는 수출관련 자료
- 생산공장 프로필, 기계목록
- 수출상품의 주문서, 신용장, 대금지급 증빙서류
- 수출상품이 한미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상품이라고 판단한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 설명자료

○ 입증 자료 제출

- 수입자는 세관이 요구하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
- 입증자료가 회사 기밀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는 생산자가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음
- 세관이 현장 검증을 통하여 직접 수집함

○ 세관의 결정

- 세관이 부정적 결정을 제안했을 경우, 수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갖음
- 세관이 부정적 결정을 확정했을 경우, 추가 심사 기회없이 확정된대로 정산조치가 되고 수입자는 정산후 18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확정된 부정적 결정은 포괄적 원산지 증명에 표시된 모든 동일한 수입 상품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영향을 줌
- 상습적 허위 또는 무근거 청구로 확정했을 경우, 상품의 추후 수입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특혜청구를 거부당할 수 있음

아. 수입 신고후 한미자유무역 협정 특혜청구서를 제출하여 납부한 추정관세 반환 요구(Post- importation preference claim)

- 1) 신고후 특혜청구서 제출 : 수입자는 수입후 1년 이내에 신고후 특혜청구서를 일선 지방세관에 제출하여 납부한 추정관세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음 {(19 USC 1520(d)}.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함
 -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이 특혜원산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진술서와 수입신고 번호와 수입일자
 -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이 특혜원산지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함
 - 수입(납세)신고서류 및 기타 관련 서류의 제 3자에게 유출여부에 관한 진술서
 - 상품의 수입신고에 관하여 이의제기, 재정산 요청을 했는지 여부와 요청을 했다면 요청서류의 명세
- 2) 심사와 조치
 - 세관은 제출한 청구서류가 수입물품이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에 적합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정도로 불충분하면 검증절차의 진행을 유보하고 특혜를 거부할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세관은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가 불충분하거나 특혜청구가 법적 청구 요건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고 거부 조치함. 이후 추가 보충서류를 첨부한 재신청을 허용함

- 수입신고의 정산 전, 제출한 특혜청구는 심사, 확정절차를 거친후, 승인 혹은 거부조치로 정산결정이 됨
- 수입신고의 정산 후, 제출한 특혜청구는 심사, 확정절차를 거친후, 승인 조치로 재정산결정이 됨
- 수입신고의 정산 후, 제출한 특혜청구는 특혜관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부정적 원산지 검증이 완료한 후에만 거부 조치될 수 있음
- 수입신고의 정산 후, 세관의 특혜청구의 거부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부 통지의 날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이의 제기는 제출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자. 정산절차(Liquidation)

- 수입(납세) 신고시 수입자가 납부하는 관세액은 추정관세액으로 추후 정산 절차에 의하여 정산이 이루어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조치의 대상품목 인 경우는 수입자는 일반관세와 특별관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특별관세의 추정관세액은 미상무부 국제 무역청이 결정한 추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일반관세의 추정액은 수입자가 관세율 및 과세가 격을 스스로 추정하여 납부할 수 있음. 물론 수입자의 추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수입(납세) 신고 서류상에 신고의무가 있는 사실 및 이의 진실성에 입각하여야 함
- 납부한 일반관세 추정액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미세관의 공식입장은 정산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짐. 정산은 수입(납세) 신고 서류상에 신고된 사실 및 제출된 샘플을 토대로 관할 지역세관이 집행함. 한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추정액의 과다여부는 일차적으로 미상무부 국제 무역청의 연례 심사시 결정되고 이 결정을 바탕으로 관할 지역세관은 정산을 하게됨. 일반관세 및 이들 특별관세의 정산은 동시에 이루어짐. 미 상무부국제 무역청의 연례심사는 통상 수입후 몇년이 지나야 진행되므로 따라서 특별 관세조치의 대상품목에 대한 세관의 정산은 그만큼 지연되게 됨

- 수입자가 납부한 추정액이 세관의 결산금액보다 적을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그 차액의 납부 의무를 통지함. 한편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은 통지 없이 정산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수입자는 세관의 정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한 내에 세관의 재정산을 요구하는 이의제기를 관할세관에 제출할 수 있음(세관이 수입자의 추정관세액을 인정하여 정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는 수입자 자신이 추정하여 납부한 관세액이 법상 타당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이를 수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함임. 만약 미 관세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관세 특별법원인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정산후 일정기한내에 수입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정산은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수입자는 이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한편 확정후라도 미 세관은 당해 통관과 관련한 수입자의 기만행위를 이유로 재정산 조치를 취할 수있음

차. 이의 제기(Protest)

- 대부분의 세관 결정이나 조치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는 청산일 후 90일에서 180일 이내에 서면상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이의제기서류는 제출한 날로부터 2년안에 검토되어 여부가 결정됨

4 | 원산지 규정

가. 개 요

- 미국정부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원산지 표시 규정은 미국 관세청 (U.S. Customs)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써 FDA에서 관장하고 있는 라벨링 (Labeling) 규정과는 별도의 것임
 - 관세법(Tariff Act of 1930 as amended-19 U.S.C § 1304(a))에 의해 규정됨

- 따라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미국 무역 세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나. 원산지의 정의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원산지란 수입되는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개조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최종 소비자 (Ultimate purchaser)가 구입할 때 그 상태의 물품을 의미함

다. 원산지 표시법

- 국가명 -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반드시 표준영어로 표기법에 맞는 영어로 된 국가 이름이라야 함. 따라서 한국 상품일 경우, 반드시 Korea를 사용하여야 함 (예: Made in Korea, Product of Korea)
- 표시방법 - 표시방법은 3가지 규칙이 적용
 - 눈에 잘 띄이는 곳에
 - 읽기 쉽게
 - 지워지거나 분실되지 않게
- 따라서 아주 작은 활자로 포장지 구석에 표시할 경우 원산지 규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라. 원산지 기준

1) 비특혜관세 원산지기준(Non-preference rules of origin)

가) 개요

- (1)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and produced entirely) : 일개국에서 전적으로 경작 등 생산 작업을 하거나, 더 나아가 재료상태에서 제품 상태로 변형시키는 제조 및 가공공정을 포함하는 전과정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원산지 판정기준

- (2)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Rule) : 2개국 이상에서 제조 및 가공한 모든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하는 기준.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으로 변형시키는 제조 및 가공공정을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작업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및 가공작업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함. 실질 변형은 사용된 재료와 구별되는 명칭/특성/용도를 가진 새로운 완제품으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함
- (3) 실질변형에 기초한 세번 변경 기준 (Tariff shift rule based on substantial transformation) :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과 Canada와 Mexico(NAFTA당사국)로부터의 수입한 모든 상품(섬유 및 의류제품은 제외)에 적용되며 세번/상품명세별로 구체적인 실질변형 과정을 상술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 각 상품세번의 호와 소호(headings and subheadings of HTSUS)별로 일일이 상품의 생산과정 등을 반영한 구체적 세번변경(tariff shift and other requirements) 요건을 정하고, 이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함
- (4) 실질변형기준의 해석적용 : 실질적 변형 (제조, 가공에 사용한 재료로부터 다른 명칭/특성/용도를 가진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상품별로 한건 한건 개별적으로 검토함. 분류목적 상품명세 확정(establishment of product), 제조 및 가공공정(manufacturing process) 해석 등 복잡한 문제 때문에 기존의 관례와 세관 결정례(유권해석)를 참조하고, 때로는 직접 세관결정을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음

2) 적용목적별 원산지기준

가) 최혜국 대우 또는 정상무역관계 대우를 위한 원산지 기준

- 성분법규의 규정은 없지만, 관세법 관세율 규정 {General Note3-rates of duty to the HTSUS (19 USC Sec. 1202)}과 세관의 시행규정{ Section 102.20 and Section 102.21 of CBP regulations (19 CFR Sec. 102.20 and 102.21)} 이 참조됨
 - 완전생산기준
 - 실질변형 기준
 - 실질변형에 기초한 세번변경 기준의 참조 : 모든 섬유 및 의류제품 그리고 Canada와 Mexico(NAFTA의 당사국)의 모든 수입품(섬유 및 의류제품은 제외)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세번변경 기준이 최혜국 혹은 정상

무역 대우 목적을 위한 원산지 판단에 참조될 수 있음

나) 원산지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원산지 기준

(1) 근거 법규

- 수입상품과 용기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세법 조항 {Section 1304 - marking of imported articles and containers of the Tariff Act, as amended (19 USC sec. 1304)}
-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규정 {Part 134 -country of origin marking of CBP regulations (19 CFR part. 134)}
- 원산지 결정에 관한 시행 규정{ Part 102 - rules of origin of CBP regulations (19 CFR part. 102)}

(2) 원산지 기준

- (가) 완전생산기준 : 일개국에서 기초원자재, 가공원자재, 구성자재로 부터 최종제품으로 생산가공할 때 원산지 표시 목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 (나) 실질변형기준 : 여러 나라에 걸쳐서 제조 및 가공한 모든 수입품(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과 CANADA & MEXICO로 부터의 수입제품은 제외)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 목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 (다) 실질변형에 기초한 세번변경 기준 : 북미 자유무역 협정 (NAFTA) 당사국인 캐나다(Canada)와 멕시코(Mexico)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목적으로 적용하는 기준(농산물은 단순히 냉장, 냉동, 열처리 가공했을 때도 경작지가 원산지, 모든 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섬유 및 의류제품은 봉제지가 원산지)
- (라) 미소기준(De Minimis Rule) : 모든 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섬유 및 의류제품, 그리고 Canada 와Mexico (NAFTA의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섬유 및 의류제품제외)에 관하여 원산지표시를 목적으로 적용하는 보완기준

○ 원산지역 외에서 생산한 구성재료가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수준 한도 내에서는 최종 상품의 원산지를 인정함. 예를 들면, 22류의 음료 / 주류/ 식초 에는 제품 가치의 10%; 50류부터 63류까지의 섬유및 의류 제품에는 제품 중량의 7%; 모든 제품에는 제품 가치의 7%까지 역외산 재료를 허용

○ 미소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 상품으로는 1류의 산동물; 2류의 육류; 3류의 어패류; 4류의 낙농품/조란/천연꿀; 7류의 채소류; 8류의 과일; 11류의 곡물의 분과 조분/밀가루/전분; 12류의 채유용 종자/인삼; 15류의 동식물성 유지; 17류의 설탕/과자; 20류의 채소와 과실의 조제품 등임

(마) 화학적 반응기준 : 28류의 무기화합물; 29류의 유기화합물; 31류의 비료; 32류의 염료/안료/ 페인트/잉크; 38류의 각종 화학 공업 생산품에는 화학적 반응과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함

(바) 기타 보완 기준 : 포장재;부속품, 부품, 도구 등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질적 변형 공정 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기준(예를 들면, 단순히 물로 희석시키는 공정 등)

다) 정부 조달과 정부조달품에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

(1) 근거 법규

○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제1류~제10류{Chapter 1-10 of the Buy American Act of 1933 (41 USC Chapter 1-10)}

○ 미국 경기 부양법의 미국산 우선 구매 조항 {Buy American Provision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L. 111-5)}

○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of 1996)

○ 무역 협정법 제 2511조항 ~ 제2518 조항 (Section 2511 ~ Section 2518 of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 USC Sec. 2511 ~2518, specifically Sec. 2518 (4)(B)}

- 정부조달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시행규정 제 177.21 ~ 제177.31조항 {Government procurement :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of CBP regulations (19 CFR Sec.177.21)}.

(2) 정부조달의 개요

- 일반적으로 정부조달시 미국산 제품구매요건을 적용함
- 일반 정부기관에서는 조달시 일정한 조건하에 미국산 제품구매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미국산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가격차이가 있을 경우, 미국산 제품이 질적 혹은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외국산 제품 구매가 공공이익을 창출할 경우
- 쌍무간 혹은 다자간 정부조달 협정에 상호대우조건이 합의됐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미국산 제품구매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3) 원산지 기준

- (가) 정부조달품에 관하여 “Buy American” 제한조치를 면제할 목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 (나) 완전생산기준
- (다) 실질변형기준

3) 특혜관세 원산지기준

가) 개요

- 특혜관세 원산지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이나 특별무역법에 규정한 특혜관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함. 특히 세번변경기준은 WCO의 통합 상품명세와 부호시스템을 도입, 개정한 관세법의 통합관세율표 규정에 근거함. 세관이 현재 집행하고 있는 각종의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의 근거인 관련법규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일반 특혜 관세 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도서 속령 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규정 (Products of Insular Possessions of the United States)
 - 웨스트 뱅크, 가자 지역 및 기타 해당 산업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규

- 정 (Products of the West Bank, the Gaza Strip or Qualifying Industrial Zone)
- 미-이스라엘 자유무역 협정 이행법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행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아프리카 성장 및 개발법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미-카리브 유역 무역 협력법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 중미 자유무역 협정 이행법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미-한국 자유무역 협정 이행법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미-콜롬비아 무역 진흥 협정 이행법 (United States-Colu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미-파나마 무역 진흥 협정 이행법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나) 한미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현황

- 한미 FTA혜택은 인적 교류, 각종의 서비스 분야(법률, 금융, 보건의료, 통신 등) 에도 혜택을 주지만 상품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줌. 관세 혜택은 품목별 기준으로 즉시철폐가 87%이고 3년내 철폐를 누적하면 91%에 주어짐
- 한미 FTA 특혜관세 해당요건인 역내산 제품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 중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등 일반원칙은 협정문에, 각 상품세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음
- 부속서에 규정한 개별적 원산지 기준은 약 5,000여개(HTS 6단위 기준)의 상품의 세번별로 원자재의 가공 및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 기준임. 한미 FTA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일반 원산지 기준, 상품세번별 품목별 기준, 기타 보충적 기준)이 관세율표의 통주에 규정되어 있음(GN 33-U-KFTA Implementation of HTSUS)

- 한미 FTA혜택은 미국의 국내법이 규제하는 수입품의 검역, 위생, 안전, 환경 보호 요건등과 타협하지 않음. 예를 들면, 첫째로, APHIS가 PPA, AHPA법규에 의하여 규제하는 동식물 제품의 검역기준, 둘째로, FSIS가 FMIA, PPIA, FEIA법규에 의하여 규제하는 육류와 계란 제품의 검사 및 위생기준, 셋째로, FDA가 FD&CA 법규에 의하여규제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구, 전자파를 발산하는 전자제품의 위생 및 안전기준, 넷째로, CPSC 가 CPSA, FHSA, FFA, PPPA법규에 의하여 규제하는 소비제품의 안전기준, 다섯째로, EPA가 CAA, FIFRA, TSCA, DWSA법규에 의하여 규제하는 자동차 및 엔진의 배기가스기준, 살충제의 안전기준, 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식수의 위생기준, 여섯째로, NHTSA가 FMVSS법규에 의하여 규제하는 자동차 및 부속품의 안전기준 등이 한미FTA 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집행됨

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 (1) 완전생산 기준 {GN 33(b)(i) of HTSUS - Wholly obtained and produced entirely }과 품목별 기준 {GN 33 (o) of HTSUS - Product-specific rules} : 기초원자재, 중간원자재,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 가공 공정이 전적으로 역내에서 발생할 경우에 역내산 상품으로 판정하는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 (2) 세번변경 기준 {GN 33(b)(ii)A of HTSUS - Tariff shift rule }과 품목별 기준 {GN 33 (o) of HTSUS - Product-specific rules}

- 역외산 기초 원자재, 혹은 중간원자재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시키는 역내산 상품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특혜관세원산지 기준{GN 33(ii)A of HTSUS - Tariff shift rule and GN 33(o) of HTSUS -Product-specific rule }.

- 세번변경기준은 상품 분류 절차를 거쳐 상품분류번호를 결정하고, 상품분류번호별로 명시한 세번변경기준, 즉 역외산 원자재, 부품, 구성품 상태로 부터 최종제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기준으로, 류의 변경 {Change of Chapter(C C)}, 호의 변경 {Change of Tariff Heading (CTH)} 소호의 변경{Change of Tariff Subheading(CTSH)} 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역내산 원자재만 사용한 가공생산 기준 (GN33(b)(iii) of HTSUS)과 품목별 기준 {GN 33 (o) of HTSUS - Product specific rules} : 역외산 기초 원자재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 가공하여 역내산 중간 원자재를 만들고 더 나아가 최종 제품까지 만들었을 경우 최종상품이 역내산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특혜관세원산지 기준임

(4) 미소기준 (De minimis Rule) {GN 33(e) of HTSUS} :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10% (섬유와 의류제품 가격의 7%)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임(GN 33(e) - De minimis rule of HTSUS)

○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미소기준은 혼합과 같은 단순공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부적용 품목의 예;
 - 3류의 어류제품
 - 4류의 낙농제품
 - 7류의 채소류
 - 1006 호와 11류의 쌀제품
 - 0805 호와 2009.11-39소호의 감귤류, 주스류
 - 8류와 20류의 복숭아, 배, 살구류
 - 15류의 동식물성 유지
 - 17류의 설탕

(5) 누적기준 (Accumulation Rule) {GN 33(f) of HTSUS} : 역내산(미국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일국가의 원부자재가 상대방 당사국의 상품에 결합되고, 기타 관련 특혜관세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

(6) 대체가능재료 및 물품에 관한 기준 (Fungible Goods and Materials Rule) {GN 33 (j) of HTSUS} : 대체 가능 재료나 물품은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료나 물품으로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을 도입함 (GN 33(j)- Fungible goods or materials rule of HTSUS)

- 선입 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 먼저 구입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후입 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구입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7) 세트 포장한 제품에 관한 기준(Products packed in a set for retail sale Rule) {GN 33(n)(iv) of HTSUS} : 수입품이 해석의 총칙 3항 {GRI of HTSUS, Article 3}을 적용한 결과 세트 포장한 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트포장된 각각 제품이 역내산 제품이어야 만 세트 포장한 제품이 특혜 원산지 제품이 됨.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트포장된 역외산 제품의 총가치가 그 세트포장한 제품의 조정가치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세트포장한 제품도 특혜 원산지 제품이 될 수 있음
- (8)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에 관한 기준 (Accessories, spare parts or tools) {GN 33(i) of HTSUS} : 세번번경 규정 적용시 고려대상이 아님, 역내 부가가치 기준적용시 고려대상임
- (9) 소매용 포장재와 용기에 관한 기준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GN 33(k)(i) of HTSUS} : 세번번경 규정 적용시 고려대상이 아님, 역내 부가가치 기준적용시 고려대상임
- (10) 선적 포장재와 용기에 관한 기준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 {GN 33(k)(ii) of HTSUS} : 세번번경 규정 적용시 고려 대상이 아님, 역내 부가가치 기준적용시 고려대상임
- (11) 간접재료에 관한 기준 (Indirect materials) {GN 33(l) of HTSUS}
-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했지만, 제품 속에 혼합되지(incorporated) 않은 재료로서 fuel, tools, dies and mold, spare parts, lubricants, safety

equipments, testing equipments, catalysts 등

○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 혹은 역내가치 포함기준)을 적용시 고려대상이 아님

(12) 직접 운송에 관한 기준 (Transit and transshipment): {GN (c)(iii) HTSUS} :
역외에서 추가 공정과정, 그리고 보존을 위한 조치 또는 수송에 부수하는
작업 (짐을 싣거나 하역하는 행위)이외의 공정은 허용되지 않음

라) 한미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적용사례

(1) 신선 농축수산물은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의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함

○ 화훼, 채소, 과일, 곡물류는 역내에서 재배하고 수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작지 기준

○ 닭고기는 사육과 도축을 행하는 완전생산기준

○ 기타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등)는 역외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를
인정하는 도축국 기준

○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도 위생, 검역조건에 의해 캐나다산 생우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 수입이 금지, 멕시코산 생우는 미국내에서 100일 이
상 사육 후 도축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육국 기준과 동일

○ 원산지기준은 수입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
시함으로써 위생, 검역 조건을 우회한 수입 우려 해소

(2) 가공 농산물 중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
한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의 세번변경 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적용함

○ 역외국가에서 수입한 쌀을 제분한 쌀가루, 또는 쌀가루가 들어간 가공 식품,
찜쌀은 세번변경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역내산 제품으로 불인정

- 역외국가에서 수입한 인삼 제품은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의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선 및 건조 인삼근 (절단되었거나 분쇄된 것도 포함): 소호 제1211.20.00 (Sub- heading 1211.20.00 of HTSUS)
 - 인삼근 엑기스 : 소호 제1302.19.40 (Sub-heading 1302.19.40 of HTSUS)
 - 인삼근 재료를 사용한 식품 (인삼차, 인삼환, 인삼과낙스 등): 소호 제2106.90.99 (Subheading 2106.90.99 of HTSUS)
 - 품목별 특혜관세 원산지규정의 세번변경기준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관한 요약과 해석/적용

(가) 요약

- 역외국에서 수입한 신선 및 건조 인삼근은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역외국에서 수입한 인삼근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신선 및 건조 인삼근은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역외국에서 수입한 인삼근과 인삼근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인삼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내산 인삼제품으로 불인정

(나) 해석/적용

- 신선 및 건조 인삼근 (절단되었거나 분쇄된 것도 포함)은 류의 변경을 요구함{(Change of Chapter (CC): a change to 1201-1214 from any other chapter of HTSUS)}
- 인삼근 엑기스는 류의 변경을 요구함. 단, 신선 및 건조 인삼근(Sub-heading 1211.20)으로 부터의 변경은 예외임{Change of Chapter (CC): a change to subheading 1302.19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subheading 1211.20.of HTSUS}
- 인삼근과 인삼근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만든 인삼제품은 호의 변경을 요구함. 단 신선 및 건조인삼근(Sub-heading 1211.20)과

인삼근에서 추출한 엑기스로부터의 변경은 예외임{Change of Tariff Heading (CTH): a change to ginseng preparations of subheading 2106.90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1211.20 and 1302.19}.

- (3) 역외국가에서 수입한 과일, 견과류, 채소류를 냉동하거나 염수 등에 저장, 처리하거나 또는 구운 방법으로 단순 가공한 경우는 세번변경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역내산 제품으로 불인정

마. 구비서류

- FTA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상품의 품목번호, FTA 관세혜택 등을 확인하고 수입허가증,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해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며, 수입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함
-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발급방식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식	한국정부 권고서식
유효기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

※ 미국 세관에서는 경우에 따라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과 제조과정 확인을 위한 제조회사 진술확인서(Manufacturer's Affidavit)을 요구할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 발급 원산지증명서

(앞 쪽)

1. Exporter			Reference No.: KOREA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2. Importer					
3. Departure Date:			4. Vessel's Name/Flight No.: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7. Country of Origin:		
8. Item Number	9. Description of Goods	10. HS No.	11. Marks & Numbers	12. Quantity & Unit	13. Origin Criterion
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_____ (Importing Country)			15.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뒤 쪽)

작 성 요 령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됩니다.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Importer(수입자) :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수입국을 기재합니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기재합니다.
 4. Vessel's Name/Flight No.(선명/편명)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기재합니다.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적재항 및 운송경로) : 물품을 선적이나 기적하는 최종 항만이 나 공항을 기재합니다.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이 난이나 별지에 환적국가와 환적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최종 목적국) :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싱가포르인 때에는 "REPUBLIC OF SINGAPORE"로 기재합니다.
 7.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는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합니다.
 8. Item Number(물품번호)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9. Description of Goods(품명) :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10. HS No.(품목번호)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11. Marks & Numbers(표시 및 일련번호) :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12.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 : 물품의 수량 및 측정단위(pieces, Kg 등)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3. Origin Criterion(원산지결정의 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R(Wholly Obtained Rule)
 -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 바.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 아.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
- ※ 제8란 내지 제13란의 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14. Declaration by exporter(수출자 신고)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일자, 장소, 수출국명 및 수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15. Certification(증명) 및 Reference No(증명서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기재하고, 발급담당자가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5

품목별 통관제도

가. 수산물

- 미국 식품의약청(US FDA)은 미국에 수입,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음. 수입업체는 세관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화물 도착 5일전부터 제출가능) FDA는 선박도착을 통지받고 서류를 검토한 이후 검사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됨. 대부분은 수입되는 수산물이 금지품목이 아니거나 질병의 의심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FDA는 생선 샘플을 검사하지 않고 “May Proceed Notice” 를 세관과 수입업체에게 송부하여 수입물품의 반입이 가능함

- Labeling of Container : 미 세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원산지 표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냉동생선은 소매업체나 레스토랑에서 판매할 때까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상태여야 하며 수출을 위한 운송기간 중 포장과 냉동/습도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수입요건
 - 수산물은 FDA에서 관리하는 해산물 HACCP 규정에 의해 수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업체에 해당되어 이를 준수해야 하며, 조개류 품목은 NSSP (National Shellfish Sanction Program, 전미 조개류 허가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조개류 (Shellfish)
 - 연안어종이나 산업화에 따른 황폐화로 인하여 각종 병균발생이 우려되는 조개류 4개 품목에 대해서는 NSSP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해당품목: 굴(Oyster), 가리비 (Scallop), 홍합 (Mussel), 조개 (Clam)
 - NSSP 가입국가에 한하여 수출입이 가능하며, 양식장 및 수출입업체가 지정됨
 - 한국은 NSSP 가입국이며, 거제도 등 6개 양식장과 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음

- 미 식품의약청 (FDA)은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단계에서의 위생을 위해 식품 안전프로그램인 HACCP을 제정하였으며 이 계획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 가공업체와 포장업체, 창고업체들에게 적용됨. 이러한 FDA 규칙에 의해서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해외의 공급업체들이 수산물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HACCP를 통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이 규정은 수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와 업체에 다 해당되며 생산과정이란 소비자가 구입하기 직전까지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므로 범위가 다양함
 - 만약 어느 마켓에서 냉동된 해산품이나 통조림으로 된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할 경우 그 마켓은 수산물 HACCP에서 규정하는 생산업체에 해당되지 않음
 - 그 마켓에서 냉동된 수산물을 해동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마켓도 생산업체에 해당되어 HACCP 규정이 적용됨
- 수산물일 경우 거의 모든 보관시설이 HACCP 규정에 해당됨
 - 조개류가 물이 담긴 어항에서 판매될 경우 그 어항도 보관시설에 해당되어 HACCP 규정이 적용되어, 물의 염도, 온도, 청결도 등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임
-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 보툴리움 균에 대한 규정(한국의 멸치가 해당)
 -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생선은 보툴리움균(Clostridium botulium) 존재 가능성이 있어 기본적으로 통관 보류
 - 5인치(12.7cm) 이상은 내장 제거하지 않은 이상 통관 불가
 - 5인치 미만인 경우
 - 내장 문제를 해결(내장 제거)했다는 서류 또는 증명 제출시 통관
 - 내장 미제거시 미국 HACCP Plan에 따라 보툴리움균이 검출되지 않는 증빙 제출하여 인정받는 경우 통관
 - * 현재 수입업체와 미FDA간 자료제출 협의 중이나 인정받은 경우 없음
 - 관련 증빙 제출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반송, 폐기, 실험실 검사(화주비용) 택일
 - * 실험실 검사 : 미국 HACCP Plan에 따라 Water Activity 0.85이하, Water-phase Salt Level 10% 이상 또는 pH 4.6 이하일 경우 통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통과 어려움

- FDA에서 몇몇 국가의 양해각서(MOU)를 HACCP 프로그램 대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조개류에 대한 연체동물 조개류 MOU를 미국 FDA와 교환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조개류는 MOU 규정을 잘 준수하면 따로 HACCP 규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MOU가 아직 체결되지 않음

6 | 품목별 검역제도

가. 식물검역제도

1) 관련법 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해외검역공고, 법령 등을 통하여 규정됨

2) 식물검역법

- 묘목(Nursery stock)의 경우 농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이 미첨부된 경우에는 수입불가(제1조)
 - 묘목 : 야외에서 재배된 화훼묘목(Florist's stock), 교목(Tree), 관목(Shrub), 덩굴(Vine), 삽수(Cutting), 대목(Graft), 접수(Scion), 접아(Bud), 과수 및 관상수목의 핵자 및 종자 기타 번식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제6조)
 - 다음의 것은 묘목에서 제외됨 : 목초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화단용식물, 기타 초본식물, 구근(Bulb), 뿌리(제6조)
- 상기 묘목이외의 식물류가 수입됨으로써 유해식물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포함(제5조)
 - 이때는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및 해당 국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공고 및 입법예고(public hearing)과정을 거쳐야 함
- 미국에 분포하지 않거나 널리 분포하고 있지 않은 나무, 식물, 과실의 병이나 또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묘목이나

기타 식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공포함(제7조)

- 공고과정은 제5조의 내용과 동일

○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Rule), 규정(Regulation)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위임(제9조)

나. 동물검역제도

1) 위생검사제도(육류검사법)

○ 육류 및 가금육의 위생과 안전검사를 위해서 미국 식품안전국(FSIS)의 검사요원이 미국 전역의 6,200개에 달하는 도살장 및 육류가공공장에 상주하면서 현행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검사시 중점을 두고 있는 규칙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도축장과 육류 가공공장은 자체 생산제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HACCP로 불리는 Process Control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함

- 모든 도축장은 유해 미생물의 1차적 오염원인인 배설물로 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신들의 공정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E. Coli균속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해야 함

- 모든 육류 처리공장은 최종제품이 유해 미생물로 부터 오염이 감소된 위생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문서화된 표준작업공정(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을 개발 하고 이행해야 함

2) 소량육류함유제품 관련규정

가) 미국의 축산물 수입조건

○ 미국에서 생산되는 육류와 가금류 및 계란함유 제품들은 연방육류검사법(FMIA), 가금류제품검사법(PPIA), 계란제품검사법(EPIA)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외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육류와 가금류 제품도 반드시 미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식품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동등위생기준)

- 동물 및 동물관련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법(Title 9, Code of Federal Regulation)의 327조항(육류) 및 381조항(가금류)은 수입육류 및 가금류제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은 Section 327.2(육류)와 Section 381.196(가금류)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
- 육류와 가금류제품의 미국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동등위생기준을 위한 자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절차는 미국수출을 원하는 외국정부가 FSIS에게 요청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며 FSIS는 외국의 육류 및 가금류 식품규제시스템의 인증을 위해 (1)서류분석, (2)현장감사, (3)통관검사의 과정을 거치게 됨
- 따라서 FSIS에서 승인한 해외검역시스템의 인증시설이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과 동등한 위생기준을 인정받아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자국의 식품규제시스템으로 인증한 자국내 생산시설을 의미함
 - FSIS가 승인한 해외검역시스템 하에서 인증된 시설을 검색하려면 미 농무부 (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 웹페이지를 통해 가능

http://www.fsis.usda.gov/Regulations_&Policies/index_of_certified_countries/index.asp

- 국가인증절차에 대한 정보

<http://www.fsis.usda.gov/OPPDE/IPS/EQ/EQProcess.pdf>

<미국으로 육류 종류별 수출 가능국 리스트>

Countries/Products Eligible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COUNTRY/PRODUCTS	Beef/Veal		Lamb/Mutton		Goat		Pork		Poultry/Rabbits		Equine		Egg Products
	Raw	Proc.	Raw	Proc.	Raw	Proc.	Raw	Proc.	Raw	Proc.	Raw	Proc.	Proc.
1 Argentina		X		X		X		X					
2 Australia	X	X	X	X	X	X	X	X	XXX	XXX			
3 Austria	O	O											
4 Belgium	O	O					X	X					
5 Brazil		X		X		X	X	X					
6 Canada	X	X	X	X	X	X	X	X	X	X			X
7 Chile	X	X	X	X	X	X	X	X	X	X			
8 China													
9 Costa Rica	X	X	X	X	X	X		X					
10 Croatia		O						X					
11 Czech Rep.	O	O							O				
12 Denmark	O	O					X	X					
13 Finland	O	O					X	X					
14 France	O	O					X	X	O	O			
15 Germany	O	O					X	X					
16 Great Britain	O	O					X	X	O	O			
17 Honduras	X	X	X	X	X	X		X					
18 Hungary	O	O					X	X					
19 Iceland	X	X	X	X	X	X	X	X					
20 Ireland	O	O					X	X					
21 Israel													X
22 Italy	O	O						X					
23 Korea													X
24 Japan	X	X						X					
24 Mexico	X	X	X	X	X	X	X	X	XX	XX			
25 Netherlands	O	O					X	X					O
26 New Zealand	X	X	X	X	X	X	X	X	XXX	XXX			
27 Nicaragua	X	X	X	X	X	X		X					
28 Northern Ireland	O	O					X	X					
29 Poland	O	O					X	X					
30 Romania	O	O							O				
31 San Marino		O						X					
32 Spain	O	O					X	X					
33 Sweden	O	O					X	X					
34 Uruguay	X	X	X	X				X					

Proc: Processed with kill steps sufficient to inactivate bacteria and viruses.

X: Countries listed as eligible for slaughter and processing under 9 CFR 317.2, 381.96, or 590.910

XX: Countries listed as eligible for processed poultry ONLY under 9 CFR 381.96

XXX: Countries listed as eligible for slaughtered and processed rabbits ONLY under 9 CFR 381.156

O: Countries listed as eligible for slaughter and processing in 9 CFR 317.2, 381.196, or 590.910, but whose eligibility is suspended pending an equivalence re-verification.

☐:

Shaded: Eligibility suspended for animal health reasons (notes below).

- MEXICO: Raw pork from Mexico permitted only from States of Baja California, Baja California Sur, Campeche, Chihuahua, Nayarit, Quintana Roo, Sinaloa, Sonora, and Yucatán.
- MEXICO: Raw poultry from Mexico permitted only from TIF-241 and TIF-344 if origin of poultry was U.S. or other END-free country eligible for export of raw poultry to U.S.
- BRAZIL: Raw pork from Brazil permitted only from State of Santa Catarina establishments SIF 140, SIF 490, SIF 2181, SIF 3237, SIF 3392, and SIF 3548

나) 소량육류 함유제품

- 한국은 현재 미국으로 육류 및 가금육을 수출할 수 없으며 이는 현재 한국이 미국의 구제역/돼지독감/조류독감 청정국 명단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임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해결된 이후에도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FSIS(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에 한국의 축산안전 시스템이 미국과 동일하다는 동등위생자격(equivalent country)을 신청, 획득해야 함
 - 멸균가공가금육의 경우 수출절차진행을 통해 '14년 10월부터 대미수출가능

- USDA와 FDA와의 업무관할권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가공식품 중 Raw meat/poultry 3% 미만과 Cooked meat/poultry 2%미만 이면 FSIS에서 관여치 않고 FDA에서 일반식품과 같이 처리

- 그러나 수입의 경우 소량의 육류, 가금육 및 가공난성분을 함유한 식품이라도 첫째, USDA/FSIS의 검역하에서 생산되거나 둘째, FSIS에 의해 인정된 외국의 검역체계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즉, 육류가 2%(가공제품만 해당, Raw meat은 불가) 규정을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USDA 소관의 육류제품으로 분류되어 한국은 원천적으로 수출이 불가능
 - 육류가 2%미만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FDA 소관의 소량육류함유제품으로 분류되어 수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한국 가공식품의 경우 인증된 국가로부터 가공된 원료(processed ingredient:Beef(chicken) extract, Beef(chicken) powder)만 수입할 수 있으며(고기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할 수 없음) 이러한 원료의 비중이 최종제품중량의 2% 미만이어야 함

다. 유제품검역제도

1) 검역제도 일반

- 검역조건 : 함유량의 관계없이 미농무성 산하의 동물검역소의 허가를 받아야 됨

- 밀크라 함은 전유 혹은 탈지유(일부 혹은 완전탈지한것)를 말함. 밀크제품은 밀크에서 얻어지는 제품으로 농축유(Evaporated milk, condensed milk, dry milk), 당분이 들어있는 밀크, 버터, 치즈, 숙성밀크등임

- 낙농품류 : 미국 수출입 종합편람 제4류(낙농품)의 소호주(additional US notes)와 밀크를 원료로 만들어진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 2202. 90. 10 ~ 2202. 90. 28로 표현되는 밀크가 일부 포함된 제품을 의미함. 여기에는 밀크류 혹은 크림으로 (흰초콜릿과 비식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유지방 중량이 제품의 5.5%이상이 되는 제품 즉, 상업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제18류 소호주 2와 소호주 3에 나온 수입쿼터제외)임 ; 건조밀크, 유장, 혹은 버터밀크로 (0402.10, 0402.21, 0403.90, 0404.10) 단일재료와 혼합한 재료의 유지방중량이 5.5%이하인 제품으로 보통 다른 재료들과 혼합되는 제품이나 설탕첨가 여부를 불문; 유지방을 첨가한 제품으로 전체중량의 응고유가 16%이상 들어있어 차후 가공을 위하여나 직접소비제품이 아닐 경우임

- 제외 : 식료품가운데 밀크 혹은 밀크제품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소량포함 (예:건조밀크-밀크지방건조 그리고 밀크비유지방건조물이 평균5%미만) 혹은 지금까지 직접소비제품으로 밀크식품산업역사에서 낙농품으로 여겨지지 않을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예: Sugar confectionary, non-sugar confectionary로 빵, 비스킷, 스낵, 전병, 와플과 같은 제품으로 한국 수의과학검역원에서 Health Certificate이나 미국내 동식물검역소산하의 동물검역소(V/S)에서 수입허가(Import Permit)을 받을 필요는 없음

- CBP(국토안보부) 통과요건 : 요구르트는 종류에 따라 쿼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음

2) VS/APHIS 검역요건

- 관련규정
 - Animal health protection act(7USC Ch.109)
 - VS/APHIS regulations(9CFR Part-94)
 - Animal Product Manual
- Import Permit VS 16-3 필요
 - 밀크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즉 낙농품 혹은 비낙농품이라고 해도 (설탕이 들어간 제과나 비캔디제과 제외) Veterinary Service(VS)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함

3) FAS 검역요건

- 일부 요구르트, 요구르트류, 요구르트드링크는 수입쿼터에 제한이 있음
- 수입라이선스 불필요

4) FDA 검역요건

- 관련규정
 - Federal Import Milk Act(FIMA:21 USC Ch.4, Subchapter IV)
 - FDA REgulations(21 CFR Part131-Milk and cream and part 1210- FIMA regulations)
 - Food, Drug, and Cosmetic Act(21 USC Ch.9)
 - Compliance Policy GuideCompliance Policy Guide
- FIMA Import Permit은 불필요

라. 저산성식품 및 산성화식품

1) 정의

- 열처리 및 진공포장된 식품으로 소매점에서 상온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으로, 중독성 물질과 유해 박테리아 (Botulism) 발생가능성이 있는 식품임
 - 저산성식품 (LACF: Low-acid Canned Food): 열가공후 밀봉용기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에 포장된 pH가 4.6이상,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인 식품으로 주스, 참치통조림 등이 해당됨
 - 산성식품 (AF: Acidified Food):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이 저산성식품에 산등을 첨가하여 pH가 4.6이하로 조절한 식품으로 피클, 절임류 등이 해당됨

2) 유의사항

- 미국으로 통조림 제품 같은 저산성식품과 산성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미국 FDA에 제조시설을 등록하고, 제조공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FDA에서는 서류검사를 통해 등록업체에 FCE (Food Canning Established Number, 제조시설등록번호)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조사가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FCE는 수입허가가 아니며, 단순한 수입자격 요건으로 수입통관시 FDA 검사에 대비해야 됨

마. 식품첨가제와 색소첨가제 (Food additives & color additives)

- 식품을 보존, 향미, 혼합, 농화, 채색시키고 영양결핍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 첨가제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다채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줌
- FDA는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첨가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규제, 정밀 검사를 철저하게 행하며, 규정을 통해서 식품에 사용되기 전에 위생안전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요구함
- 추가로 모든 첨가제는 과학적인 실험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위생안전 심사를 받아야 함

IV

식품안전규정

1

수입식품안전관련 법규 및 기관

가. 수입식품관련법규

- 미 연방 식품의약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mended)
- 공정포장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수입우유법/치환유법(Import Milk Act/Filled Milk Act)
- 연방 부식성 독법(Federal Caustic Poison Act)
- 보건 및 안전을 위한 방사능 통제법(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Act)
- 공공 보건 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art F, Subpart 1, Biologic Products)
- 연방 담배 표시 및 광고법(Federal Cigarett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 연방법 챗터 21, 특히 파트 1, 하부파트 E의 수입과 수출(Title 21 CFR, especially Part 1, Subpart E-Import and Exports)

나. 수입식품안전 관련기관

1) 관세 및 국경보호청(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속으로 수입, 수출 및 관세에 관련한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

2) 식품의약품 안전처(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 보건복지부소속으로 농무부에서 연방안전청으로 분리 후 복지부로 편입되었고 육류, 가금육, 가공난제품을 제외한 모든 국산 및 수입식품을 감독함

3) 식품안전검사국(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미 농무부소속으로 원래 APHIS에서 동물관련식품을 전담하기 위해 분리되어진 기관으로 식품안전과 수입식품의 규제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하며 국내산 및 수입산의 육류, 가금육, 가공난제품들을 규제함
- 육류, 가금류 및 가공난류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인증된 곳으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FSIS는 통관 및 국경수비대와 동식물 검역소(APHIS)와 협력하고 있음

4) 동식물검역소(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미 농무부소속으로 동물건강보호법에 의거 수입을 규제하며 동식물관련 질병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

5) 해양수산청(NMFS: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 상무부 소속으로 수산제품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식약청의 소관이나 해양수산청은 미국의 어장 및 수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식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수산제품의 감시 프로그램(Seafood Inspection Program)을 실시, 수산식품의 관련규정준수여부를 감독하며 품질을 평가함

6)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FWS:Fish and Wildlife Service)

- 내무부소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 및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어류 및 캐비어 등의 수입을 규제, 감독함

2

FSMA 진행상황

가. 추진배경

-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식품으로 인해 매년 약 4,800만명(미국인 6명 중 1명)이 질병에 걸리고, 128,000명이 입원을 하며, 3,000명이 사망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심각한 부담이 되지만 대부분은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함
- 따라서 미국 정부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처하기보다는 사전예방에 주안점을 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정을 추진하였고, 동 법은 2010.12.21. 의회를 통과한 후 2011.1.4.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됨
- 특히, 미국 전체 식품공급량의 약 15%가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 신선 과일과 채소는 60%, 수산식품은 80%를 차지함. 이에 따라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게 수입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나. FSMA의 주요 식품안전 제고방안

1) FDA의 예방적 관리의 강화

- (식품업체의 예방적 관리 의무 부여) 식품업체로 하여금 제조과정에서 위해성 평가, 예방적 조치, 감독기록 유지, 개선조치 등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
- (식품안전기준) FDA로 하여금 과일·채소의 안전한 생산·수확을 위해 과학에 기초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 안전기준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해요소 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요소들도 고려하고, 토양 개량제, 위생, 포장, 온도관리, 재배지에서의 동물사육 및 용수 등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함

- (불량식품 제조행위 방지) FDA로 하여금 불량식품 제조행위를 방지하고 식품공급망 중 취약부문에서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토록 함

2) FDA의 검사 권한 강화와 생산·가공업자의 기준 준수를 강조

- (의무적 검사빈도) 식품별 위험성에 기초하여 식품업체에 대한 FDA의 의무적 검사빈도를 설정하고, 이러한 검사빈도를 즉시 높이도록 함
 - 국내업체 : 높은 위험성을 가진 미국 내 모든 업체는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FDA의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매 3년마다 받아야 함
 - 외국업체 : FDA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적어도 600개의 외국 업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 매년 검사 대상을 2배로 상향
- (관리기록 조회권한) FDA에게 식품업체의 식품안전계획과 그 시행 등 모든 해당 기록을 조회할 권한을 부여
-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특정 식품검사는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FDA로 하여금 검사기관 지정 프로그램 수립토록 함

3) 식품사고 발생시 대응 강화를 위해 FDA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

- (강제회수) 위해식품의 자발적 회수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강제회수 명령
- (유통금지 권한 확대)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유통 금지조치 확대
- (등록 정지) 건강에 심각하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합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등록 정지

- (제품추적 기능 강화) 국내 및 수입 식품에 대한 추적 기능 강화
- (고위험 식품에 대한 기록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지정 고위험성 식품(high-risk foods)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업체에 해당 기록 보존 책임 부과

4) 수입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FDA에 전례 없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 (수입자의 책무 부여) 외국의 공급업자가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예방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입자가 입증토록 하는 공급자 증명 제도를 최초로 시행
- (제3자 인증제도 도입) 외국 식품업체가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자격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인증할 수 있는 제3자 인증제도 도입
- (고위험성 식품에 대한 인증서 요구) 고위험성 수입식품의 반입 조건으로 신뢰 할만한 제3자 인증 등 여타 보증 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FDA에 부여
- (자격구비 수입자 제도 도입) 특정 자격을 구비한 수입업자의 경우는 수입식품 검사와 반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업자 자발적 자격구비제도 도입(인증받은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자에 한정)
- (반입거부 권한 부여) 외국의 업체나 국가가 FDA의 현지 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수입식품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FDA에 부여

5) 국내 및 국외의 다른 정부 기관들과 공식적 협조체계를 강화

- 식품안전에 대한 집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및 지방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국 정부 및 식품업체에 대한 교육 등 지원과 협력을 강화

다. 추진경과

1) 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2011.1.4) 이후 세부 시행규칙 제정중

- 기록의 작성·관리 및 이용 : 기록이용조건 수정('12.2 입안예고)
- 신선농산물에 대한 재배·수확·포장·보관에 관한 기준('13.1.16 입안예고)
- 식품에 대한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cGMP) 및 위험에 기초한 예방적 관리(HARCP) ('13.1.16 입안예고)
- 식품 및 사료의 유통금지명령에 관한 기준('13.2.5 시행)
- 수입식품의 사전신고에 필요한 정보('13.5.30 시행)
- 식품안전 검사 및 인증서 발행을 담당하는 독립(제3자)검사/인증기관의 지정('13.7.26 입안예고)
- 식품 및 사료 수입업자에 대한 외국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13.7.29 입안예고)
- 사료에 대한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cGMP) 및 위험에 기초한 예방적 관리(HARCP) ('13.10.29 입안예고)
- 식품의 의도적 오염 방지('13.12.24 입안예고)
-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14.2 입안예고)
-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의 위해가능식품신고등록(Reportable Food Registry)에 대한 FSMA 이행 수정('14.3)
- 기록이용조건 : 기록의 작성·관리·이용('14.4 최종 발표)
- 식품 및 사료 수입업자에 대한 식품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14.9 보완 규정 입안예고)
- 신선농산물에 대한 재배·수확·포장·보관에 관한 기준('14.9 보완 규정 입안예고)

- 사료에 대한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cGMP) 및 위험에 기초한 예방적 관리 ('14.9 보완 규정 입안예고)
- 식품에 대한 현행우수제고관리기준(cGMP) 및 위험에 기초한 예방적 관리 ('14.9 보완 규정 입안예고)

라. FSMA 하위 규정 주요 내용

1) 신선 농산물의 재배·수확·포장·보관을 위한 기준

가) 최초안('13.1.16 입안 예고, ' 13.11.22까지 의견 수렴)

- FDA는 농장에서 농산물의 안전한 재배·수확·포장·보관에 대한 과학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아래와 같은 미생물 오염의 경로에 중점
 - 농업용수는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하고, FDA는 농업용수의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
 - 퇴비와 같이 동물에서 생산된 생물학적 토양 개량제는 공중보건에 영향을 주는 병원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방법을 제시
 - 박테리아 등 병원균은 사람간 또는 사람으로부터 음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농장 종사자는 손 씻기 등 위생적인 활동을 하도록 요구
 - 병원체는 동물 배설물을 통해 과일·채소 생산과정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농장은 병원체가 농작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가축과 야생동물에 대한 조치를 취함
 - 농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구, 건물, 위생설비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
 - 재배환경은 병원체의 성장에 최적의 조건이므로 종자 처리, 용수 검사, 재배환경 모니터링 등을 시행
 - 농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
- 본 규정은 소비가 적거나 개인용 소비 또는 가공할 예정인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 적용(판매금액이 적은 일부 농장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 면제)

- 본 규정은 2013.1.16. 입안 예고되었고, 2013.11.22.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였으며, 최종 규정은 공포 후 60일에 발효될 예정
 - 실질적인 규정의 준수는 최종 규정 발효일 2년 후에 적용되고, 일부 용수관련 내용은 4년 후에 적용되며, 다만, 최근 3년간 연간 평균 판매액이 5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은 공포 3년(용수는 5년) 후에 적용되고, 평균 판매액이 25만 달러 미만인 영세 사업체는 4년(용수는 6년) 후에 적용됨

나) 수정안('14.9.29 입안예고, ' 14.12.15까지 의견수렴)

- 수질의 기준과 검사를 보다 탄력적으로 함
 -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직접 적용될 물의 미생물 기준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제안함
 - 제안된 미생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용수를 가진 농장은 기준을 충족하고나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가져야 함
 - FDA는 수자원별로 다른 수준의 오염 위험을 가진다는 인식 하에 공중 보건을 보호하면서도 농가에게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미 살균 수자원을 검사할 수 있도록 다층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접근법을 제안함

○ 시비 전략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연구

- FDA는 동물에 기원한 미 살균 생물학적 토양 개량과 작물 수확 간에 최소 9개월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제안을 철회하고, 적절한 시간간격의 결정은 우선 보류하고 농무부 등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임
- FDA는 USDA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기준에 부합하는 농장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의도는 없음

○ 적용되는 농장을 보다 잘 정의함

- 연간 농산물의 현금가치가 25천 달러 이하인 농장은 적용되지 않음
- 영세 사업체나 소규모 사업체의 정의도 당초 '식품 판매액' 기준에서 '농산물 판매액' 기준으로 변경함

- 농장의 정의도 다른 소유자의 농장에서 재배된 원료 농산물을 단순히 포장하거나 보관하는 농장은 식품 시설로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식품에 대한 예방 관리 규정 ‘ 보다는 ’ 농산물 안전규칙 ‘의 적용을 받게 됨

- 적용면제(qualified exemption) 대상 농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분명히 함
 - 적용면제 대상 농장의 지위를 식품안전상의 이유로 박탈하는 경우 그 절차를 정함
 - FDA는 적용면제 지위 박탈에 앞서 경고서신, 리콜, 행정적 격리, 압류, 금지 명령 등 다른 조치를 고려함
 - FDA는 농장에게 적용면제 지위를 위협하는 환경을 통보하고, 대응할 기회를 주며, 농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고려하여야 함
 - 새 규정은 박탈된 적용면제 지위를 부활하는 절차도 규정함

- 야생동물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함
 - 제안된 규정은 멸종위기동식물법을 위반하여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농장에게 권한을 주거나 요구하지 않음

- 준수일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25천 달러 이상이고 250천 달러 미만인 영세사업체는 규정 발효일로부터 4년, 250천 달러 이상 500천 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는 3년, 나머지는 2년 후에 적용됨
 - 수질 기준, 관련된 검사 및 기록 규정은 나머지 최종 규정의 준수일보다 2년의 추가적인 기간이 부여됨

2) 식품에 대한 우수제조관리기준(cGMP)¹⁾ 및 위험에 기초한 예방적 관리(HARCP)²⁾

가) 최초안(‘13.1.16 입안 예고, ’ 13.11.22까지 의견 수렴)

1) cGMP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2) HARCP :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 본 규정은 크게 위해요소 분석에 따른 위험에 기초한 예방적 관리(HARCP)와 우수제조관리기준(cGMP) 강화 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HARCP와 관련하여 식품업체 소유자·운영자·대리인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에 기초한 예방적 관리를 하여야 하며, HARCP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① 식품의 제조·가공·포장·보관 유형에 따라 예상되는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
 - ② 제조공정관리, 알레르기 항원 관리, 위생관리, 회수계획 등 예방적 관리조치
 - ③ 예방적 관리조치와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절차
 - ④ 예방적 관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시정 조치
 - ⑤ 예방적 관리조치가 의도한 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및 재평가
 - ⑥ 예방적 관리조치, 점검·확인, 개선조치 등에 대한 기록 유지 등
- 새로운 cGMP 규정은 식품 오염 방지에 대한 기존 cGMP 조건에 알레르기 항원에 의한 식품의 교차오염에 대한 방지도 포함하도록 개정
 - 일반적으로 cGMP 조항은 HARCP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개정된 조건에 따르는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
- 본 규정은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에 적용되고, 농장에서의 활동을 적용받지 않음
- 본 규정은 2013.1.16. 입안 예고되었고, 2013.11.22.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였으며, 최종 규정은 공포 후 60일에 발효될 예정
 - 실질적인 규정의 준수는 최종 규정 공포일 1년 후에 적용되며, 다만, 종업원이 500인 미만이고 면제대상이 아닌 소기업은 2년 후에 적용되고, 영세 사업체는 3년 후에 적용. 영세 사업체 대상으로는 연간 식품 매출액이 25만, 50만, 100만 달러 미만 사업체 등 3가지 옵션이 제시되었음

나) 수정안('14.9.29 입안예고, ' 14.12.15까지 의견수렴)

- 다른 농장에서 생산한 식품을 포장 또는 보관하는 농장은 본 예방적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단순히 포장 또는 보관할 경우 식품 시설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FDA는 포장과 보관을 관행적인 농업활동으로 간주함
 -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포장 또는 보관하는 것은 '식품에 대한 사전예방 규칙' 이 아니라 '농산물 안전규칙' 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부가적인 가공 또는 제조 행위를 하는 농장은 '식품에 대한 사전예방 규칙' 을 적용받게 됨

- 100만 달러 이하의 영세 사업체의 정의
 - 영세사업체의 정의에 대해 당초 3가지 옵션이 제시되었으나, 연간 식품 판매 총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농장으로 결정

- 적용면제(qualified exemption) 대상 시설의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분명히 함
 - 적용면제 대상 시설의 지위를 식품안전상의 이유로 박탈하는 경우 그 절차를 정함
 - FDA는 먼저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해당 시설에 사전통지한 후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박탈된 적용면제 지위를 부활하는 절차도 규정함
 - FDA는 해당 시설이 위해분석과 예방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요건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면제 지위가 박탈된 시설에 대해 명령을 받은 후 60일 (전체 120일)을 추가적으로 제공함

- 제품 검사, 환경적 모니터링, 공급자 관리 등이 제안됨
 - 관련 내용이 제정안 서문에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으로 제시되지는 않았고, FDA는 식품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위해 다음의 내용이 필요한지 의견을 구하고 있음
 - 해당 시설은 예방관리의 이행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설·식품 및 예방적 통제 관리의 성격에 적합하게 제품 검사를 실시함

- 환경중에 있는 병원균이 즉석식품에 오염되어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면 시설은 예방관리의 이행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설·식품 및 예방적 통제 관리의 성격에 적합하게 환경적 모니터링을 실시함
- 공급자 관리는 원료를 공급받는 시설이 위해분석을 통해 원료나 성분에서 중요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해당 위해요소가 원료나 성분을 공급받기 전에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적용됨
-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다면 위해의 노출이 사람의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은 현장 검증, 샘플링 및 검사와 같은 적절한 검증활동을 결정할 유연성을 가지게 될 것임
- 시설이 공급자에 대한 다른 검증활동이나 덜 잦은 현장검사도 위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적절한 확신을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한 연례 현장 검증이 요구될 것임

○ 경제적 동기에 의한 오염 문구가 제안됨

- FDA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위해분석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도록 해야 할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3) 사료에 대한 우수제조관리기준(cGMP) 및 위험에 기초한 예방적 관리(HARCP)

가) 최초안('13.10.29 입안 예고, ' 14.3.31까지 의견 수렴)

- 그 동안 미국은 안전한 동물사료 생산을 위한 기본요건을 제정하는 cGMP와 HARCP에 관한 연방 규정이 없었으나, FSMA가 제정되면서 동물사료의 제조·가공·포장·보관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cGMP를 최초로 제정하게 됨
- 본 규정은 국내산 애완동물 사료, 가축 사료 및 원자재와 성분뿐만 아니라 수입 사료에도 적용됨

- 새로운 cGMP 요건에는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위생요원 연습·훈련, 시설 운영·유지관리, 장비·기구 설계·유지관리, 절차 및 통제 수단, 창고 보관·유통 등의 요건을 포함. 그러나 동물 사료 cGMP는 알레르기 항원 교차 접촉과 같이 동물 사료와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다루지 않았음

- 또한 HARCP 관리를 위해 적용대상 시설은 위해요소 분석, 예방적 관리, 모니터링 절차, 시정 조치, 검증 활동, 기록 유지 등을 포함하는 식품 안전 계획서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 본 규정은 2013.10.29. 입안 예고되었고, 2014.3.31.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 규정은 공포 후 60일에 발효
 - 실질적인 규정의 준수는 최종 규정 공포일 1년 후에 적용되며, 다만, 종업원이 500인 미만이고 면제대상이 아닌 소기업은 2년 후에 적용되고, 영세 사업체는 3년 후에 적용. 영세 사업체 대상으로는 연간 동물사료 매출액이 50만, 100만, 250만 달러 미만 사업체 등 3가지 옵션이 제시되었음

- 나) 수정안('14.9.29 입안예고, ' 14.12.15까지 의견수렴)
 - cGMP 규정을 사료에 보다 적용 가능하게 수정하였음
 - FDA는 사료산업에 보다 더 적용 가능하고, 사료시설의 유형에 있어서 광범위한 유연성을 부여하며, 안전한 사료생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 FDA의 식품안전요건을 이미 준수하고 있는 식품가공업자는 부산물을 사료생산용으로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 오염을 예방할 cGMP 외에는 부가적인 예방관리나 cGMP 규정을 이행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더 가공할 경우에는 사료에 대한 예방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영세 사업체의 정의는 당초 3가지 옵션 중 매출액이 250만 달러 미만으로 제안함
- 적용면제(qualified exemption) 지위 박탈 절차를 보다 발전시킴
 - 적용면제 대상 시설의 지위를 식품안전상의 이유로 박탈하는 경우 그 절차를 정함
 - FDA는 먼저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해당 시설에 사전 통지한 후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박탈된 적용면제 지위를 부활하는 절차도 규정함
 - FDA는 해당 시설이 위해분석과 예방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요건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면제 지위가 박탈된 시설에 대해 명령을 받은 후 60일 (전체 120일)을 추가적으로 제공함
- 의견수렴을 위해 제품 검사, 환경적 모니터링 및 공급자 관리에 대한 잠정적인 규정 문안을 제시함
 - 관련 내용이 제정안 서문에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FDA는 사료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위해 시설에 다음의 내용을 요구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고 있음
 - 예방 관리의 이행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품 검사를 실시함
 - 환경중에 있는 병원균이 사료에 오염되어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면 시설은 예방관리의 이행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환경적 모니터링을 실시함
 - 공급자 관리는 원료를 공급받는 시설이 위해분석을 통해 원료나 성분에서 중요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해당 위해요소가 원료나 성분을 공급받기 전에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적용됨
 -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다면 위해의 노출이 동물의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은 현장 검증, 샘플링 및 검사와 같은 적절한 검증활동을 결정할 유연성을 가지게 될 것임
 - 시설이 공급자에 대한 다른 검증활동이나 덜 잦은 현장검사도 위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적절한 확신을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한 연례 현장 검증이 요구될 것임

○ 경제적 동기에 의한 오염 문구가 제안됨

- FDA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위해분석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도록 해야 할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 농장 소유의 사료 공장

- 사료공장·동물·토지·시설이 같은 소유로 되어 있는 사료공장은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 415조의 규정 하의 식품시설로 등록하고 제안된 규정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함

4) 식품 및 사료 수입자를 위한 외국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

가) 최초안('13.7.29 입안 예고, ' 14.1.27까지 의견 수렴)

- FSVP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이 국내 식품생산업자들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위생관리 하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검증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됨
- 모든 수입자들은 달리 면제를 받지 않는 한 FSVP을 설정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 수입자는 반입 당시 식품의 미국 소유주 또는 수하인이어야 하고, 아닐 경우에는 외국 소유주·수하인의 미국 대리인이어야 함
- FSVP 규정에 따른 수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수입자들은 식품을 수입하기 전·후에 정기적으로 해당 식품과 외국 공급자의 준수상태를 점검해야 함
 - 수입자들은 수입하는 각 식품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분석해야 함
 - 현장 감사, 정기적인 샘플링 분석, 외국 공급자의 식품안전관리 기록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들이 적절히 관리되는 것을 검증해야 함
 - 수입식품에 대한 불평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 FSVP 마련 후 3년 이내에 또는 마지막 평가후 3년 이내에 FSVP를 재평가해야 함
 - 관세국경보호국에 반입 신고 시 수입 식품의 이름과 DUNS³⁾ 번호를 제공해야 함

3) Dun and Bradstreet 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 준수상태 점검, 위험요인 분석, 외국 공급자 검증활동, 조사 및 시정조치, FSVP 재평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해야 함

- 공급자 검증 요건은 특정 식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와 그 위해요소의 특성에 주로 기초하여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두 가지 옵션을 제안하고 있음

(옵션1) 사람이나 동물에게 심각한 건강 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를 외국 공급자가 자신의 시설에서 관리하는 경우 수입자는 외국 공급자에 대해 현장감사(원료제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조사 포함)를 실시하거나 현장감사에 대한 문서를 확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위해요소를 외국 공급자가 관리하는 경우 수입자는 현장감사, 샘플링 및 검사, 외국 공급자의 식품안전관리기록의 점검, 기타 적절한 절차 중에서 1개 이상의 조치를 취함

(옵션2) 외국 공급자가 관리하는 모든 위해요소에 대해 수입자들은 현장감사, 샘플링 및 검사, 외국 공급자의 식품안전기록 점검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 가운데서 검증절차를 선택

- 연구용개인소비용 수입식품, 자체적인 공급자 검증 조항이 있는 HACCP 규정을 준수하는 시설에서 공급하는 주스 및 해산물 등에는 FSVP 적용이 면제
- 본 규정은 2013.7.29. 입안 예고하여 2014.1.27.까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최종 규정은 공포 후 60일에 발효

나) 수정안('14.9.29 입안예고, ' 14.12.15까지 의견수렴)

- 위해 분석
 - FDA는 수입자가 수입식품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요건과 수입업자가 식품의 위해를 분석하는 요건을 통합함으로써 식품과 공급자 위험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제안하고 있음
 -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는 수입업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요구함

- 식품에 있어서 위해의 본질
- 외국 공급자 또는 외국 공급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같이 위해 관리를 적용할 주체
- 식품안전과 관련된 외국 공급자의 절차, 과정 및 실천
- 외국 공급자의 관련 규정 준수에 관한 적용 가능한 미국 식품안전 규정 및 정보
- 외국 공급자의 식품안전 이행 이력

○ 공급자 검증

- FDA는 제안된 규정의 2가지 옵션을 혼합한 공급자 검증 활동에 대한 규정을 제안
- 당초 제안규정의 옵션 1에서 외국 공급자에 대한 연례 현장감사는 외국 공급자가 식품의 위해를 통제할 때, 위해에 대한 노출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경우에 요구됨
- 옵션 2에서 현장 감사는 어떤 환경 하에서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수입업자는 식품과 공급자의 준수 상태와 노출이 심각한 위해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에 의해 제시된 위험에 기초하여 적절한 검증 활동을 결정함
- FDA가 제안한 접근법은 식품의 가장 심각한 위해에 의해 야기된 공중 보건에 대한 더 큰 위험을 인정하면서 수입업자에게 식품과 공급자 위험에 기초한 적절한 검증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함

○ 다른 제안된 FSMA 규정과의 일관성

- 식품 및 사료의 예방적 관리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 수정사항을 포함
 - 영세 사업체와 소규모 사업체의 정의를 연간 식품 판매액 50만 달러 미만을 1백만 달러 미만으로 수정함
 - 예방적 관리에 포함될 잠정적인 공급자 검증 조항을 준수하는 식품시설을 운영하는 수입업자는 중복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유사 FSVP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

○ 준수일

- 일반적으로 준수일은 FSVP의 최종 규정의 공포 후 18개월이 될 것임
- 예방적 관리와 농산물 안전 규정에 따르는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는 외국 공급자가 예방적 관리와 농산물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은 후 6개월에 FSVP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이러한 준수일은 규정과 규모에 따라 다양함

5) 기타 관련 규정

가) 독립(제3자) 감사인 지정제도(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13.7.26 입안예고)

-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FDA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특정 수입식품의 미국 내 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식품의 신속한 심사 및 반입을 위해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자발적 프로그램에 해당 수입자가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가받은 감사인(third-party auditor)이 발급한 인증을 사용할 수도 있음
- FDA는 동 규정에 따라 인가단체(accreditation bodies)들을 인정하고, 동 단체들은 식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프로그램에 의거 외국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독립 감사인(third-party auditors)을 인가함
- 동 규정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가단체에 대한 요건, 독립 감사인에 대한 요건, 참여 인가단체 및 감사인들의 점검·감독과 관련된 요건, FDA의 인정 및 인증 절차, 감사대상 설비 내의 상태에 대한 FDA 신고 요건 등이 포함
 - 인가단체(accreditation bodies)는 외국 정부/기관 또는 민간 제3자로서 법적 권한, 자격 및 능력, 공정성/객관성, 품질 보장 및 기록 절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인가를 위한 독립 감사인 평가, 독립 감사인 성과 평가나 인가 변경·거부에 대한 FDA 신고, 자체 성과 평가·수정, 보고서 제출, 이해상충에 대한 보호, 기록에 대한 FDA 접근 유지·제공 등의 기능을 함
 - 독립 감사인(third-party auditors)은 외국 정부, 외국 협동조합 또는 기타 제3자로서 법적 권한, 자격 및 능력, 공정성/객관성, 품질 보장, 기록 절차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감사요원의 적격성 및 객관성 유지, 엄격한 감사

실시, 감사 보고서 제출, 위험 발견 즉시 신고, 자체 성과 평가·수정, 이해 상충에 대한 보호, 기록에 대한 FDA 접근 유지·제공 등의 의무를 가짐

- 외국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규정은 인가된 독립 감사인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일단 FDA 인가 시스템이 정립되면 수입자들이 FSVP의 공급자 검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점차 인가된 독립 감사에 의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FDA는 예상
- 본 규정은 2013.7.26. 입안 예고되어 2014.1.27.까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최종 규정은 공포 후 60일에 발효

나) 식품의 의도적 오염 방지('13.12.24 입안예고)

- (목적) 식품공급에 있어서 대규모로 대중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해당 시설은 운영에 있어서 취약한 공정을 관리해야 함
- (적용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유하며,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 제415조에 의거하여 식품시설로 등록하도록 요구되는 국내외 시설
 - 면제 대상 : 영세기업(연간 식품매출총액이 10백만 달러 미만), 액체저장탱크 내의 식품 보관을 제외한 식품 보유, 식품을 직접 접촉하는 용기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경우의 식품 포장, 재포장, 라벨 부착 또는 라벨 교체, 농장의 정의에 해당하는 활동, 동물사료의 제조·가공·포장·보유, 특정 조건하의 알코올 음료
- (주요 내용) 각 시설은 실행 가능한 공정단계 파악, 단계별 집중적인 완화전략 파악, 모니터링, 시정조치, 검증, 교육, 기록유지 등을 포함하는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실행해야 함
 - FDA는 식품시스템 내에서 가장 취약한 주요 활동으로 벌크 액체 수령·적재, 액체 보관·취급, 이차 성분 취급, 혼합·유사 활동 등 4가지를 제시
 - 각 설비는 이와 같은 유형의 활동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들의 생산 시스템을 검토하거나 자체 취약성 평가를 실시 필요
- (발효 및 준수) 동 규정은 최종 규칙이 공포된 후 60일에 발효되고, 사업체는 공포 후 1년 내에 준수해야 함

- 다만, 영세기업(연간 식품매출총액이 10백만 달러 미만)은 3년, 소기업(500명 미만의 종업원 고용)은 2년 내에 준수

다)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14.1.31 입안예고)

- (목적) 식품을 적절히 냉장하지 않는 경우, 식품 적재 전에 차량을 적절히 청소하지 않은 경우, 운송 중에 식품을 올바르게 보호하지 않는 경우 등 식품 안전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함
- (적용 대상) 자동차나 철도로 미국 내에서 식품을 운송하는 출하인, 수령인 및 운송사
 - 식품이 미국 내에서 소비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외항 선박에 의해 국제 운송 컨테이너로 또는 항공 운송 컨테이너로 식품을 미국으로 배송하며 미국 내 상업 운송을 위해 미국 내에서 컨테이너를 그대로 자동차나 철도로 이동하는 것을 주선하는 수출업자
 - 면제 대상 : 연간 총매출액 50만 달러 미만, 농장에서 실시하는 원 농산물 운송, 미국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환적되는 식품,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식품 또는 미국 내에서 소비·유통되지 않는 식품, 컨테이너에 의해 완전히 봉해진 상온에서 상하지 않는 식품, 압축 식품 가스의 운송, 산 식용동물의 운송
- (주요 내용) 동 규정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포함됨
 - 운송하는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및 운송 장비의 설계 및 유지관리
 - 적절한 온도 조절, 식품과 같이 적재된 비식품 품목의 분리 등 운송 중 조치
 - 이전 화물, 운송장비의 청소, 온도조절에 관한 정보를 출하인·운송사·수령인 간에 교환하기 위한 절차
 - 위생적 운송 관행에 대한 운송사 직원의 교육 및 교육 내용 기록
 - 운송장비 청소, 이전 화물 및 온도조절에 관한 서면 절차 및 기록
- (발효 및 준수) 최종 규칙이 공포된 후 60일에 발효하고, 사업체는 공포 후 1년 내에 준수해야 함
 - 5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출하인이나 수령인이 아닌 운송사, 연간 수

령액이 2550만 달러 미만인 자동차 운송사 이외의 사업체는 공포 후 2년 내

라) 수입식품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정보 요구(2013.5.30.시행)

○ FDA는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신고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

-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사료의 잠재적인 위험을 FDA가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입자는 수입코자 하는 식품이나 사료의 반입을 거절한 적이 있는 나라의 이름도 사전 신고시 보고해야 함

마) 식품 및 사료의 유통금지 명령을 위한 기준(2013.2.5.시행)

○ 과거에 FDA는 식품이나 사료가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해 유통을 금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새로운 규정 하에서 FDA는 식품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표시기준 위반인 경우에도 유통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음

○ FDA는 압류와 같은 더 강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동안 최대 30일 동안 시장으로부터 제품을 격리시킬 수 있음

바) 기록의 작성·관리·이용 : 기록이용요건의 수정('14.4.4 발효)

○ FSMA 통과 이전에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은 오염되었거나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FDA가 합리적으로 믿는 식품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 FDA의 접근 권한을 부여함

○ 수정안은 FDA의 접근권한을 FDA가 유사한 방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다른 식품에 대한 문건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하여 식품의 구체적인 협의문서와 관련된 기록까지 확대하였음

○ 또한, FDA가 식품 문건의 사용이나 공개가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하게 부

정적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나 FDA가 유사한 방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식품 문건과 관련된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함

사)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의 위해가능식품신고등록(RFR)에 대한 FSMA 이행 수정('14.3.25 입안예고)

- FSMA 섹션 211은 소비자가 위해가능식품(reportable food)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관계자에게 신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 지향적 정보를 FDA에 제출하도록 함
 - 위해가능식품은 식품의 사용과 노출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정의함
- FSMA 섹션 211은 FDA로 하여금 소비자 지향적 정보를 FDA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1페이지로 요약하도록 함
- 위해가능식품을 판매하는 15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식품매장은 FDA 웹사이트에 게시된 후 24시간 이내 1페이지 요약자료를 14일간 게시하여야 함
- FDA는 위해가능식품 보유 여부 판단 정보의 종류, 정보제출 형식, 소매점 안내 요건에 따른 소매점 설립 유형, 소매점의 FDA 웹사이트 정보 인식 방법, 소매점 게시 정보, 게시에 따른 소매점 영향, 영양제·이유식·신선 과채류 미적용 안내 여부, 판매 불가능 식품에 대한 정보의 FDA 제출 필요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

마. 향후 추진일정

1) FSMA 세부시행규칙은 '16년 5월까지 완료 예정

-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우수제조관리기준 및 위험에 기초한 예방적 관리 : '15. 8. 31
- 식품 및 사료 수입자를 위한 외국공급자검증프로그램 : '15.10.31
- 신선농산물의 재배수확포장보관을 위한 기준 : '15.10.31
-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 '16.3.31
- 식품의 의도적 오염 방지 : '16.5.31

3 HACCP 프로그램

가. 개 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은 생산,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위생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임

나. 미국의 식품관련 HACCP 의무조항

1) 축산물

- 미국의 식품 중 육류 및 가금육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에 관련된 업체에서는 HACCP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하여야 함
 - 9 CFR Parts 304, 308, 310, 320, 327, 381, 416, and 417

2) 수산물

- 미 식품의약청 (FDA)은 국내산 및 수입산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단계에서의 위생을 위해 1991년 해산물프로그램('91년 Office of Seafood Programs)을 신설하고 해양수산청(NMFS)과 함께 식품 안전프로그램인 HACCP을 제정하였으며 이 계획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 가공업체와 포장업체, 창고 업체들에게 적용됨. 이러한 FDA규칙에 의해서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해외의 공급업체들이 수산물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HACCP를 통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Part 123-fish and fishery products of FDA regulations (21 CFR part 123) 어류 및 어류생산물에 관한 FDA규정 (미연방규정집 123부 21)
 - Fish & Fishery Products Hazard and Controls Guidance: 4th edition, Nov. 11 어류 및 어류생산물 위해요소 관리지침 (2011.11 제4판)

3) 주스제품

- 21 CFR part 120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Systems

다. 식품 위해요소

1) 식중독 병원체 위해요소 (Foodborne Pathogens)

- 병원성 세균 (Pathogenic Bacteria)
 - 살모넬라균 종
 - 리스테리아
 -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
 - 캄필로박터
 - 비브리오 콜레라
 - 장염 불니피쿠스균
- 쇄상 구균 및 기타
 - 대장균군 (EEC Group) : 황원형 O17:H7 (E-Coli O157:H7)
- 기생충 (Parasites)
- 바이러스 (Virus)
 - A형 간염 바이러스
 - E형 간염 바이러스 등
- 곰팡이 (Fungi)

2) 화학적 위해요소 (Chemical Contaminants)

- 아크릴아마이드 (Acrylamid)
- 다이옥신 (Dioxins and PCBs)
- 우레탄 / 에틸카바메이트 (Urethane / Ethyl carbamate)
- 퓨란 (Furon)
- 멜라민 (Melamine)
- 과염소산염 (Perchlorate)
- 방사성핵종 (Radionuclide)
 - 아이오딘/요오드 (Iodine)-131
 - 세슘 (Cesium)-134 + 세슘 (Cesium) 137, 스트론튬 (Strontium)-90

- 플루토늄 (Plutonium)-238 + 플루토늄 (Plutonium)-239 + 아메리슘 (Americium)-241

3) 중금속 위해요소 (Metals)

- 비소 (Arsenic)
- 납 (Lead)
- 수은 (Mercury / Methyl mercury) & etc.

4) 독소 (Natural Toxins)

- 어패류 독소
- 아플라톡신
- 버섯 독소
- 테트로도톡신
- 스킴브로이드 중독 (스킴브로톡신, 히스타민) 및 등

5) 살충제 잔류 (Pesticides residue)

- PART 180 of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 규정) regulations (40 CFR PART 180):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식품에 포함될 수 있는 살충제 잔류의 허용량을 자세히 규정하고, FDA는 잔류허용량을 초과한 식품은 불량식품으로 간주하여 수입거부 조치를 함
- 카르벤다짐
- 마노코젯
- 이산화황 외 기타

6) 동물 항생제 잔류 (Animal medicine residue)

7) 식품 알레르기 (Food allergy)

-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Food allergens)
 - 대두, 땅콩, 견과류
 - 생선, 갑각류
 - 계란, 우유가 들어간 식품

※ 상기 물질은 식품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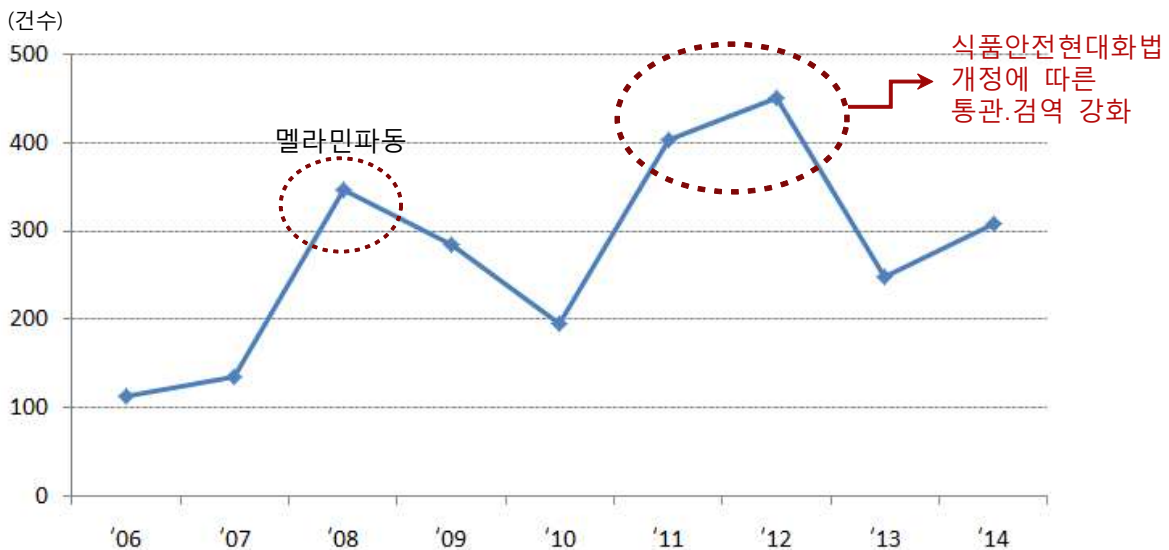
4 | FDA 억류현황 및 과제

가. 연도별 추이

- ‘13년 수출 통관보류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 14년 FDA에서의 검사강화로 보류건수 24% 증가

< 연도별 통관보류 건수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건 수	113	135	347	284	196	403	450	249	309



- ‘12년도는 그간 위생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건멸치, 김, 생굴 등 수산물과 기타농산물 등 ‘소수민족 식품(ethnic food)’에 대한 수입위생 관리가 대폭 강화하여 통관보류 사례 급증
 - 특히, ’ 11년 12월 미국 FDA에서 Alert 16-74※를 발표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 건멸치는 “즉시 압류조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실시함에 따라 멸치 통관보류사례 급증
 - ※ Import Alert 16-74 : 생선류의 경우 식중독균인 Clostridium botulinum 통제를 위해 원료 수확단계부터 HACCP을 적용 생산한 제품이어야 함, 작년까지는 크기가 5인치 이하 생선류만 해당하였으나 ‘14년부터 모든

생선류(' 14.2.28 공고)로 확대됨에 따라 멸치 뿐만 아니라 굴비, 조기 등 내장이 포함된 모든 생선류 통관에 적용

- '14년은 ' 12년 크게 문제가 되었던 수산물(멸치 등)의 비위생적 제조에 따른 보류 건수보다 라벨링 표기사항이 문제시 됨

나. 품목별 위반사례 분석

- '14년 품목별 위반 건수(309건), 세부위반 항목수(506건) 모두 전년대비 각각 24.1%, 46.2% 증가. 특히, 잘못된 라벨링 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아 세부위반 항목수 크게 증가

* 예 : W사 음료제품의 경우 ①주스함량 표기, ②잘못된 라벨링 형식, ③주스 함량 미표기, ④제조과정 누락 의 사유로 통관보류됨

- 수산물 보류건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음료류, 과자류, 기타 농산물 보류건수 급증

- '12년 56건(전체 보류건수의 12.4%차지)이었던 음료류의 경우 ' 14년 85건 (27.5%)로 지속적으로 증가

- 수산물의 보류건수는 '1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보류건수의 36.2%로 비중은 감소

- '14년 음료, 농산물 기타 등 농식품의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 '11년말부터 문제시 되었던 멸치의 통관보류 건수는 ' 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비위생적 제조에 따른 보류는 지속되고 있음

- 품목별 세부항목수 중에도 음료류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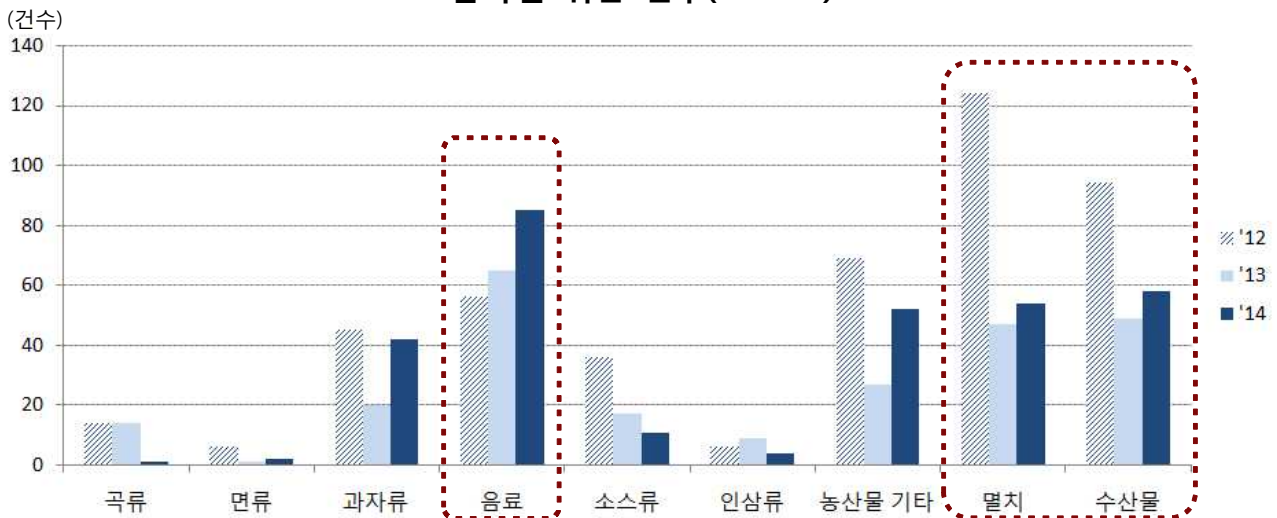
- 음료류 통관보류 세부항목(154건) 중 라벨링 관련(표기누락 100, 표기불량 38) 위반건수가 138건으로 보류 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

- 라벨링 관련 위반 건수 중에서도 영양분석표(Nutrition List) 누락 건수 28건으로 가장 많음

○ 기타농산물(102건) 중 라벨링 표기누락(60건)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단순가공된 농산물이 살충성분이 검출(19건), 약산성식품 미등록 (10건) 등이 주로 통관 보류 사유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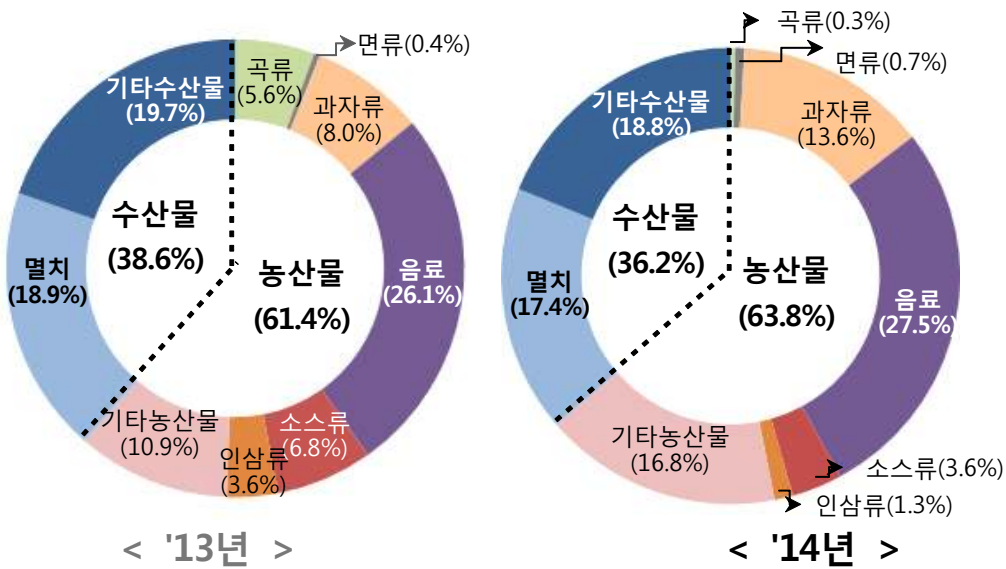
○ 곡류, 면류, 인삼류의 수출보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품목별 위반 건수('12~'14) >



구 분		위반건수			세부위반항목수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총 계		450	249	309	631	346	506
농산물	곡류	14	14	1	23	14	1
	면류	6	1	2	6	4	2
	과자류	45	20	42	81	25	86
	음료	56	65	85	87	116	154
	소스류	36	17	11	57	22	25
	인삼류	6	9	4	7	24	9
	농산물 기타	69	27	52	103	38	102
	(농산물계)	(232)	(153)	(197)	(364)	(243)	(379)
수산물	멸치	124	47	54	137	48	56
	수산물	94	49	58	130	55	71
	(수산물계)	(218)	(96)	(112)	(267)	(103)	(127)

< 품목별 위반 건수 비중('13 vs '14) >



다. 위반 사유별 분석

- '14년 통관보류 사례 중 라벨링 표기 누락건과 유해물질 함유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유별 위반 세부항목수('12 ~ '14) >

(단위 : 건, %)

구 분		'12	'13	'14
계		631(100%)	346(100%)	506(100%)
제조과정상의 문제	유해물질 함유	121	62	79
	비 위생적 제조	198	104	68
	저산성식품 미등록	52	34	26
	(소 계)	371(59%)	200(58%)	173(34%)
라벨링, 표기사항의 문제	표기 불량, 허위 표기	39	38	62
	표기 누락	221	108	271
	(소 계)	260(41%)	146(42%)	333(66%)

- 라벨링 표기 누락 중 영양분석표 누락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본적인 영문표기 누락이 56건, 제조과정 누락이 40건, 재료목록(Ingredient) 누락이 35건으로 나타나 단순한 영문 라벨 준비 없이 수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라벨링 표기사항 문제중, 단순 누락(271건) 이외 잘못된 표기나 허위사실을 표기한 사례가 문제시(62건) 되었으며, 특히 '14년에는 허위 라벨링(42건) 문제가 가장 증가함
 - 허위라벨링으로 인한 통관보류 사례 : ('12)0건 → ('13) 0 → ('14) 42
 - 잘못된 영양성분이나 각종 승인(FDA, USDA 등)을 허위로 제품에 표기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건강적 효능, 건강 관련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 허위 라벨링으로 통관 보류 될 수 있음
- 유해물질은 주로 살충제(21건), 유해색소(21건)가 가장 많았으며 유해첨가물(16건), 살모넬라균(9건) 등도 주로 문제가 됨

- 살충제와 유해색소 문제는 주로 미국과 한국에서 ‘유해’ 한 것으로 규정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며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기준에 적합한 농약과 색소 사용 필요

⇒ 식품에 함유가능한 모든 것을 안내하는 링크를 통해 첨가물 확인필요

- Everything Added to Food in the United States(EAFUS)

<http://www.fda.gov> → 오른쪽 상단에 “Everything Added to Food in the United States” 검색

- 허용 색소 리스트 확인 링크

<http://www.fda.gov/ForIndustry/ColorAdditives/ColorAdditiveInventories/ucm106626.htm>

- 허용 첨가물 리스트 확인 링크

<http://www.fda.gov/Food/IngredientsPackagingLabeling/FoodAdditivesIngredients/ucm091048.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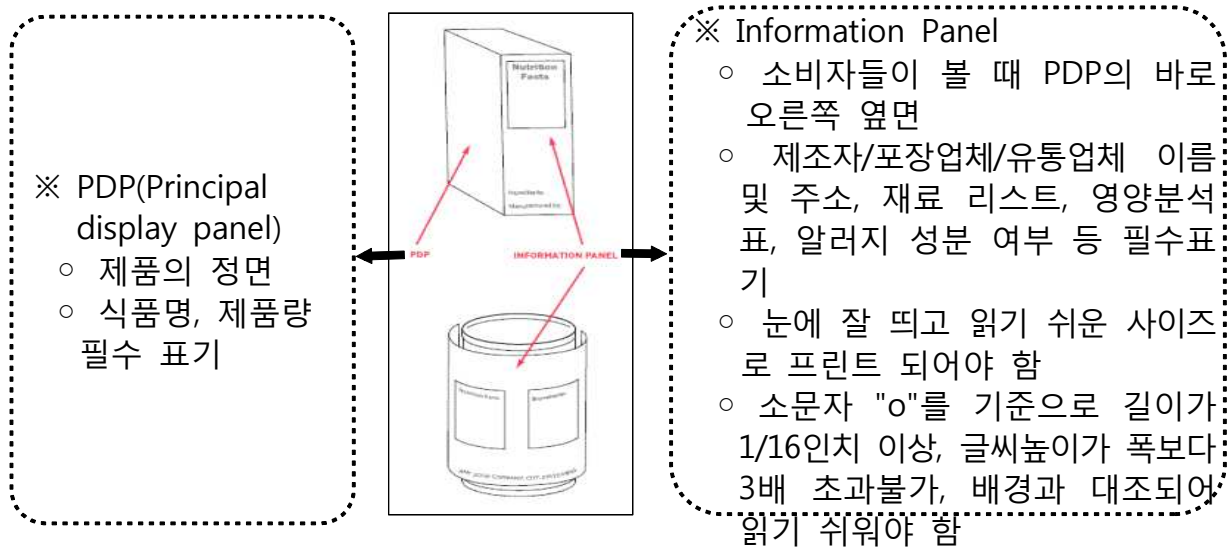
- 비 위생적 제조 위반사례는 모두 수산물에 해당되었으며 멸치품목에서 가장 많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남(53/68건)
 - 멸치 제조자의 HACCP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여 아직 생산환경 및 제조환경이 열악한 것 등이 문제시 됨
 - 원활한 멸치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HACCP 인증받은 제조사의 제품을 받아야 하며, 특히 통관보류가 자주 일어났던 수출업체는 FDA의 RED List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수출이 어려움
- 저산성식품(LACF: Low Acid Canned Food -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경우, 미국선적 전 밀봉포장 식품 제조시설 등록 및 공정과정을 등록해야 하나 많은 업체들이 자사제품이 저산성식품 여부를 모르고 수출하는 경우가 있음
 - 주로 음료류가 저산성식품으로 분류되나 이외의 소스류, 밀봉처리된 단순가공 농산물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14년 통관보류 건수 중에도 음료류(8건) 이외 기타농산물(10건), 소스류(3건), 인삼류(3건) 등이 있었음

★ 산성 또는 저산성식품의 공장 및 공정과정 등록

- 밀봉포장식품 제조시설 등록[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
: FDA Form 2541을 통해 등록하여 FCE Number를 획득하는 것으로 이는
FDA 시설등록과는 별개의 것임.
- 공정과정 등록[SID(Submission Identifier) Number] : FDA Form 2541a (살균
처리포장 : Aseptic packaging 일 경우 FDA Form 2541c)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FDA 검토후 SID Number를 부여함. SID는 해당제품별로 제조공정에 대한 등록
번호를 모두 받아야 함.
- FCE/SID Number는 수입허가가 아닌 단순한 수입자격 요건이므로 수입통관 시
FDA검사에 대비해야함.

라. 라벨링 관련 주요 유의사항

- '14년 세부위반 건수 중 라벨링 등 표기사항의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은 점차 높아짐
- ('12) 260건(41%)/전체 631건 → ('13) 146(42%)/346 → ('14) 333(66%)/506
- 대미 수출에 적합한 라벨링 조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 필요
- 필수표기사항 : 식품명 (statement of identity), 제품량, 제조자/포장업체/유통
업체 이름 및 주소, 재료 리스트, 영양분석표, 알러지 성분 함유 여부



- ※ PDP(Principal display panel)
- 제품의 정면
 - 식품명, 제품량 필수 표기

※ Information Panel

- 소비자들이 볼 때 PDP의 바로 오른쪽 옆면
- 제조자/포장업체/유통업체 이름 및 주소, 재료 리스트, 영양분석표, 알러지 성분 여부 등 필수표기
-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사이즈로 프린트 되어야 함
- 소문자 "o"를 기준으로 길이가 1/16인치 이상, 글씨높이가 폭보다 3배 초과불가, 배경과 대조되어 읽기 쉬워야 함

마. 세부 라벨링 항목별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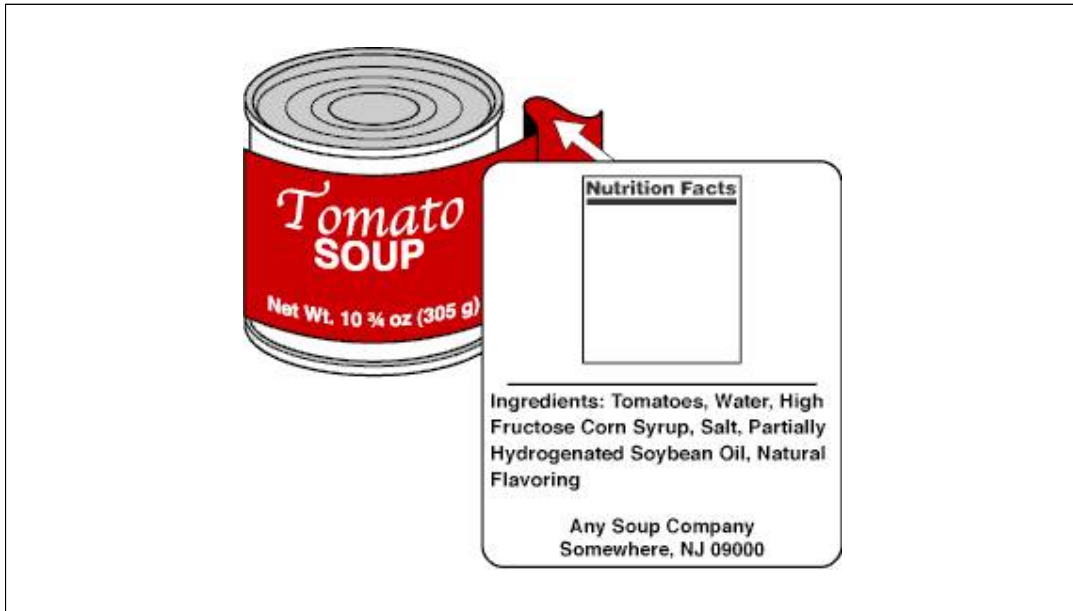
1) 식품명 관련

- 식품명은 눈에 잘 띄고 앞면(PDP)에 부착되어있어야 함
- 원산지표기는 눈에 잘 띄어야 함
- 외국어표기가 있을 경우 필요한 라벨문구는 영어 및 외국어 둘 다 적혀 있어야 함
- 주스(과일 혹은 채소)가 들어 있는 음료의 경우 주스함유량(%) 표기필수
 - 주스함유량은 정보패널의 위쪽에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오직 브랜드명, 제품명, 로고 및 UPC코드만이 그 위에 기재될 수 있음
 - 주스 함유량이 매우 적은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이럴 경우 “flavor“혹은 ” flavored“란 용어로 설명되어야 하고 이런 경우, “juice“란 용어는 재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제품 순수량(Net Quantity)관련

- 무게, 양 혹은 총 개수를 표기해야 하며 주로 식품이 고체종류일 경우 무게로 표기하고 액체일 경우 fl oz나 liter같은 액체단위로 표기함
- 식품량은 PDP의 30%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어야 하고 제품 포장 아래 부분과 평행을 이뤄야 함

- 순수량은 미터법(그램, 킬로그램, 밀리리터, 리터) 및 미국 시스템(온스, 파운드, 액량온스)로 적혀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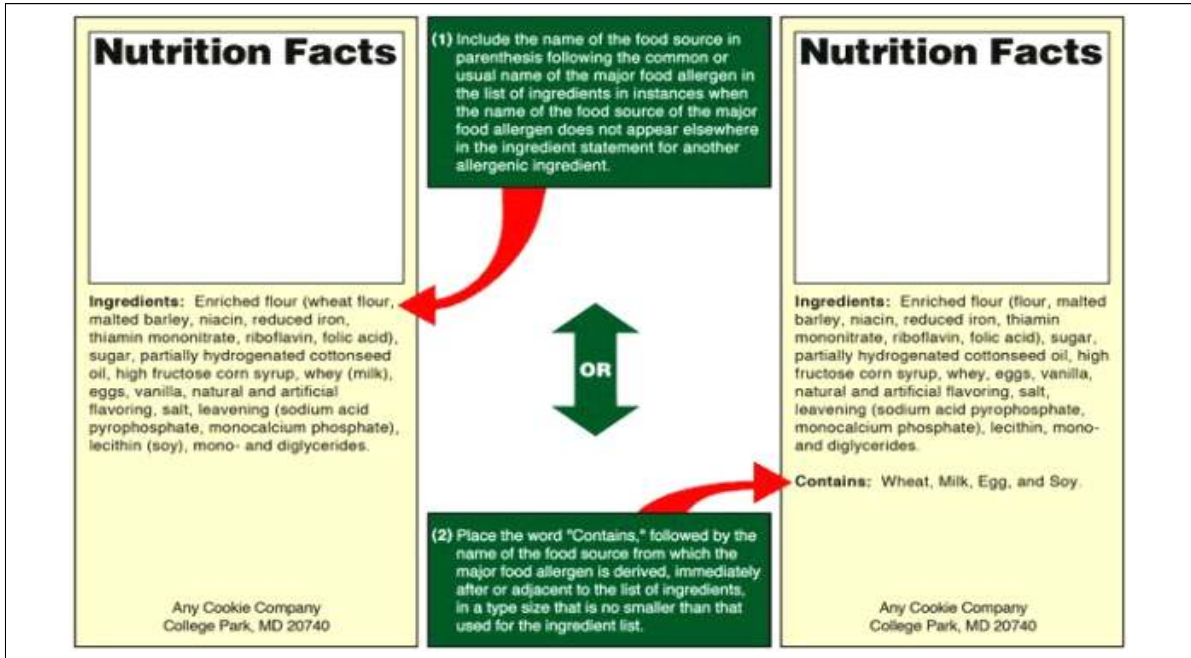


3) 재료리스트(Ingredient List)

- 재료리스트는 양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어야 함
- 제조자/포장업체/유통업체의 이름 및 주소가 있는 같은 패널에 적혀 있어야 함
- 재료의 주로 사용되는 이름을 사용해야 함
 - (예) INGREDIENTS : Apples, Sugar, Water, and Spices
- 식품 알러지 라벨링
 - 식품내 알러지 유발물질(major food allergen)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 주요 식품 알러지 유발물질 :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조개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콩
 - 주요 식품 알러지 유발물질 외에는 라벨링에 반드시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신선 농산물(신선 과일 및 채소)일 경우 알러지 라벨링 불필요

- 알러지 유발물질에서 나온 정제유일 경우 알러지 라벨링 불필요
- 연체조개류는 주요 식품 알러지 유발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4) 영양분석표



-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는 재료리스트와 제조자/포장업체/유통업체 이름 및 주소와 함께 적혀 있어야 함
- 영양분석표 크기 및 그래픽 규제
 - 영양분석표의 크기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Nutrition Fact“ 제목은 영양분석표의 어떤 글씨보다 커야 하며 보통 영양분석표의 넓이를 차지해야 함
 - 영양분석표는 Helvetica Black 혹은 Helvetica Regular로 크기는 6이상, 자간 간격은 -4까지 가능
 - 주요 영양분 및 평균 일일값 %는 Helvetica Black으로 크기는 8 (하지만 %는 Helvetica Regular로 정해짐)
 - 영양분석(Nutrition Facts)은 Franklin Gothic Heavy 혹은 Helvetica Black 글씨체로 해야 하며 표의 넓이에 맞춰야 함
 - 영양분석표의 내용은 Helvetica Regular로 크기는 8이며 앞에 4칸을 띄움

- 비타민 및 미네랄 부분은 Helvetica Regular로 사이즈 6에 1칸 띄움
- 영양분석표는 프린트하여 부착 가능
- 패키지크기에 따라 양 옆으로 나란히 기재가능
- 이중 언어로 영양분석표를 표시할 시에는 각각 따로 영양분석표를 표기 하거나 한가지의 영양분석표에 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

Nutrition Facts

Serving Size 1 cup (228g)
Servings Per Container 2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60 **Calories from Fat** 120

% Daily Value*

Total Fat 13g
Saturated Fat 5g
Trans Fat 2g

Cholesterol 30mg

Sodium 660mg

Total Carbohydrate 31mg
Dietary Fiber 0g
Sugars 5g

Protein 5g

Vitamin A 4% • Vitamin C 2%
Calcium 15% • Iron 4%

*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s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s:

	Calories:	2,000	2,500
Total Fat	Less than	65g	80g
Sat Fat	Less than	20g	25g
Cholesterol	Less than	300mg	300mg
Sodium	Less than	2,400mg	2,400mg
Total Carbohydrate		300g	375g
Dietary Fiber		25g	30g

Annotations:

- Helvetica Regular 8 point with 1 point of leading
- Franklin Gothic Heavy or Helvetica Black, flush left & flush right, no smaller than 13 point
- 3 point rule
- 7 point rule
- 1/4 point rule centered between nutrients (2 points leading above and 2 points below)
- 6 point Helvetica Black
- 8 point Helvetica Regular with 4 points of leading
- All labels enclosed by 1/2 point box rule within 3 points of text measure
- 1/4 point rule
- 8 point Helvetica Regular, 4 points of leading with 10 point bullets
- Type below vitamins and minerals (footnotes) is 6 point with 1 point of leading

※ 글씨체는 Helvetica가 꼭 아니어도 사용가능한 글씨체는 사용가능.
영양분석(Nutrition Facts)제목은 꼭 13이 아니어도 크기가 8보다 크면 사용가능

Nutrition Facts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s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s.	
Serving Size 1 cup (228g)		Calories: 2,000 2,500	
Servings Per Container 2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60		Calories from Fat 120	
% Daily Value*			
Total Fat 13g			20%
Saturated Fat 5g			25%
Trans Fat 0g			
Cholesterol 30mg			10%
Sodium 660mg			28%
Total Carbohydrate 31mg			10%
Dietary Fiber 0g			0%
Sugars 5g			
Protein 5g			
Vitamin A 4%		Vitamin C 2%	
Calcium 15%		Iron 4%	

Nutrition Facts		Amount Per Serving		% Daily Value*		Amount Per Serving		% Daily Value*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s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s.	
Serving Size 2 slices (56g)		Total Fat 1.5g		2%		Total Carbohydrate 26g		9%		Calories: 2,000 2,500	
Servings Per Container 10		Saturated Fat 0.5g		3%		Dietary Fiber 2g		8%		Total Fat Less than 65g 80g	
Calories 140		Trans Fat 0.5g		0%		Sugars 1g				Sat Fat Less than 20g 25g	
Calories from Fat 10		Cholesterol 0mg		0%		Protein 4g				Cholesterol Less than 300mg 300mg	
		Sodium 280mg		12%						Sodium Less than 2,400mg 2,400mg	
		Vitamin A 0%		Vitamin C 0%		Calcium 6%		Iron 6%		Total Carbohydrate 300g 375g	
		Thiamin 15%		Riboflavin 8%		Niacin 10%				Dietary Fiber 25g 30g	
										Calories per gram: Fat 9 • Carbohydrate 4 • Protein 4	

※ 신규 영양성분 라벨법이 2014년 2월에 제안되었으며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한 성분표기 및 영양분석표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함

Nutrition Facts		Nutrition Facts	
Serving Size 2/3 cup (55g)		8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s Per Container About 8		Serving size 2/3 cup (55g)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30		Calories 230	
Calories from Fat 40			
% Daily Value*			
Total Fat 8g	12%	12%	Total Fat 8g
Saturated Fat 1g	5%	5%	Saturated Fat 1g
Trans Fat 0g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0%	0%	Cholesterol 0mg
Sodium 160mg	7%	7%	Sodium 160mg
Total Carbohydrate 37g	12%	12%	Total Carbs 37g
Dietary Fiber 4g	16%	14%	Dietary Fiber 4g
Sugars 1g			Sugars 1g
Protein 3g			Added Sugars 0g

*좌 : 현행, 우 : 신규

※ 영양분석표의 제안규정의 최종본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앞으로 2016년 초에 최종결정 될 것으로 예상

5) 영양분 함량표기(Nutrient Content Claims-NCC)

- 영양분함량 표기(NCC)는 식품의 영양레벨과 관련된 주장을 일컬음 (예: “low fat“, “high in oat bran“, “contains 100 calories 등)
- NCC는 품목명보다 2배로 눈에 띄면 안됨
- 주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정보가 필요함 (예 : 영양분석표)
- 공개내역서란 건강관련하여 위험성이 있는 영양소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영양분석표를 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문구
 - 예 : “See nutrition information for sodium content“
 - 총 지방량, 포화지방량, 콜레스테롤, 염분이 규정량을 넘을시 필요
- FDA규제에 상응하는 주장 외에는 절대 사용불가

※ 관련링크 :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LabelingNutrition/ucm064911.htm>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LabelingNutrition/ucm064916.htm>

6) 건강관련 표기 (Health Claims)

- 식품 혹은 식품보조제에 건강관련 문구, 상징, 무늬 등 식품내용물과 질병 또는 건강관련 컨디션의 관계에 대한 표기를 일컬음
- 건강관련 표기는 질병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며 질병의 진단, 치유, 완화 혹은 치료에 대한 주장은 될 수 없음
 - 가능한 주장 예 : Three grams of soluble fiber from oatmeal daily in a diet low in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may reduce the risk of heart disease. This cereal has 2 grams per serving
-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라벨에 사용할 수 있는 표기 내용을 결정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음
 - 1990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NLEA)은 과학적 증거를 평가한 후 사용가능여부를 주도록 되어있음
 - 1997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FDAMA)는 공중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는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혹은 미국 정부의 과학

관련 기관에서 건강관련 표기를 제공

- FDA의 Interim Procedures for Qualified Health Claims in the Labeling of Conventional Human Food and Human Dietary Supplements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듯이 건강관련 클레임에 대한 진정서를 검토하여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사용가능

※ 관련링크 :

<http://www.fda.gov/Food/IngredientsPackagingLabeling/LabelingNutrition/ucm111447.htm>

7) 기능관련 표기 (Structure/function Claims)

- 식품보조제는 라벨에 영양소 및 구성요소의 역할에 대해 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질병에 대한 표기와 관련이 없어야 함
- 식품보조제는 또한 영양소부족관련 질병(예: 비타민 C 부족 괴혈병 등)에 관해서는 표기할 수 있음
- 주장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제품을 처음 판매하기 전 30일내에 FDA에 사용할 내용(claim)을 반드시 알려야 함

※ 식품라벨링 가이드 전문 :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LabelingNutrition/ucm2006828.htm>

8)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잘못된 상표(Misbranding)를 붙였다고 판단됨

- 거짓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
 - 라벨링이 어떤 경우에서건 거짓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 제품의 홍보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 다른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 다른 식품의 이미테이션
 - 만일 식품이 다른 식품의 이미테이션이면 반드시 라벨에 이미테이션임을 기재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기/포장
- 패키지
 - 생산자, 패키징업체 혹은 배급자의 이름 및 주소지가 없을 경우
 - 식품 내용의 질량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 라벨에 있는 단어, 문구 혹은 어떤 내용이 읽거나 이해하기 명확하지 않을 경우
- 제품이 나타내는 정의와 FD&C의 정의 혹은 제품 정체성의 규제 (standard of identity)가 다를 경우
 - 제품이 FD&C(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섹션 341의 식품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을 따르지 않는데도 식품이라고 분류되어져 있을 경우
 - 라벨에 있는 재료명에 의해 규정되는 부분과 제품이 나타내는 정의가 다를 경우
- 내용물 및 품질정의와 제품이 다를 경우
 - 식품이 품질 기준 이하일 시 혹은 내용물이 내용물 기준과 다를 경우
- 제품 정의 및 정체성규정에 상응하는 이름이 없을 경우
 - 잘 알려진 식품 이름이 아닐 경우
 - 두 개 이상의 재료로 만들어졌을 경우, 각 재료의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혹은 채소나 과즙/채소즙이 있는 음료의 경우 과즙 및 채소즙의 포함량(%)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 특별 식이용도 식품
 - 특별 식이용도 식품의 경우 장관(Secretary)에 의해 규정된 비타민, 미네랄 등의 정보가 라벨에 있지 않을 경우 혹은 구매자에게 제품의 전체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경우
- 인공 향료, 인공 색소 혹은 합성 보존료
 - 라벨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인공향료, 인공 색소 또는 합성 보존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신선 농산물의 살충제 화학물질
 - 땅에서 제배된 신선 농산물의 수확 후 사용된 살충제가 남아있을 경우이나 선적 컨테이너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제외
- 색상 첨가제
 - 패키징 및 라벨링 규제에 따라 첨가제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을 경우
- 라벨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 알러지 유발가능 식품을 라벨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 영양정보가 누락된 경우
 - 규제에 맞는 영양정보 라벨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영양 레벨 및 건강관련 클레임이 잘못된 경우
 - 영양라벨에 영양소 레벨이 적혀 있어야 함
 - 영양라벨 규제에 맞는 방식으로 적혀 있어야 함
 - 영양소의 레벨이 소비자들에게 건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양이라면 라벨에 기재를 해야 함
 - 공식적으로 발표된 영양소관련 문구가 아닌 규제에 어긋난 문구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역류감소를 위한 향후과제

1) FDA 규정 교육 강화 필요

- 최근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따라 식품통관이 점차 까다로워져 FDA 규정에 맞는 식품 수출 준비가 반드시 필요
 - 최근 관리가 강화된 FDA 규정을 모르고 수출하는 업체가 많음
 - 한인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출하더라도 통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FDA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함

2) 위반업체 제재

- 3회이상 위반업체 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선정평가시 감점조치 등 제재 도입
 - FDA 통관 보류 사례는 한국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초래하며 한국 식품 전반에 대한 통관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 대미 수출준비가 되어있는 업체 중심으로 마케팅을 추진하여 수출효과 극대화 필요

3)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 안전성 관리가 취약한 단순가공 수산물, 멸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 멸치 등 단순 가공 수산물 식품업체 대상 HACCP 취득을 위한 특별 지원 검토 필요
 - 수출 성장률이 높은 김은 아직까지 수입통관 보류 사례는 없으나 안전성 관리 강화 대상이 되었을 경우 HACCP 미적용 작업장 제품은 언제든지 조치 가능

5 | 식품인증제도

가. 미국의 유기농 제도

- 미국 농무부(USDA)는 2002년 10월 21일부터 국산 또는 수입제품 모두에 유기농으로 표시된 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 표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 유기농의 정의

- USDA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이란 식품과 섬유제품 등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방식을 나타내는 표시용어로 유기농이란 그 농산물의 농사방법과 가공방법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임
- 유기농작물은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토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작물로 유기농이란 생태 환경

학적인 생산의 관리방법, 즉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생물학적 주기와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농법임

- 유기농 종자를 사용하면 좋으나 비 유기농 종자도 상관없음. 하지만 유전자변형종자나 방사선처리종자 등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2) 유기농의 역사

- 미국에서는 194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산물의 생산이 시작됨. 그 이후 미국의 유기농 산업은 자가소비를 위한 소규모의 실험적 생산에서 ‘유기농’ 표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 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형태로 발전
- 유기농식품 생산에 관한 법과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유기농식품이 일관된 국가 유기농 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 인증되었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임
- NOP의 표시요건은 유기농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원재료, 신선제품, 그리고 가공식품 등에 적용되며 유기농으로 판매, 표시, 또는 표현된 식품은 NOP의 표준에 의거해 생산, 가공되어야 함.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제품 또는 성분을 유기농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UDDA 유기농’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3) 유기농 제품의 종류

- 현재 매우 다양한 유기농식품과 섬유제품이 나와 있는데 식품으로는 과일과 야채, 면류, 소스류, 냉동주스, 냉동식사료, 우유, 아이스크림류, 다양한 냉동 신제품, 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빵, 스프, 과자, 맥주, 포도주, 보드카, 영/유아식 등이 있으며 섬유제품으로는 침대 및 욕실용 섬유제품, 식탁보, 냅킨, 장난감, 화장솜, 여성용 청결제품, 그리고 티셔츠에서부터 정장에 이르는 다양한 의류 등이 포함
- 농산물로는 밀, 옥수수, 대두, 면화, 기타곡물, 유채종자, 그리고 생과일과 채소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수시로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음

4) 유기 축산물 기준

- 유기 축산물 사육을 위한 유전자 변형식품(GMO), 방사선 처리제품, 하수 찌꺼기의 사용이 금지됨. 또한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의 사용이 금지되며 100% 유기 사료를 사용
- 특정 농장이 유기농 생산농장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지재료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3년이 지나야 하도록 규정
- 도축용 가축은 출생 전 임신기간 마지막 1/3기간 시작부터 도축 때까지 유기영농 방식에 따라 사육될 것을 의무화 하였으며 가축의 경우 노천구역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반추 가축의 경우 목초지 접근이 가능해야 함

5) 유기 농산물 기준

- 유기농장에서 토양 비옥도와 작물 영양분관리는 경작, 윤작, 그리고 간작을 통해 이루어짐. 미국의 표준은 퇴비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병충해, 잡초, 질병관리는 독성 및 잔류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영농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6) 미국의 유기농 인증제도

가) 인증기관

- USDA는 공공 및 민간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담당시키고 있으며 USDA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96개 기관임
- 미국 내에는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 등 55개 기관이 있으며 나머지는 외국의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임
-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고, 적절한 전문가와 기술을 보유하고 국가유기 프로그램(NOP)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고, 유기식품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신청이 금지됨

나) 인증기관업무

- USDA가 지정한 인증기관은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미국 유기농 표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인증 대상은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으로 유효기간은 1년임
- 인증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의심지역 생산물에 대한 오염물질 및 농약 잔류검사와 최소한 5년 단위의 생산물 샘플조사와 잔류물 검사를 실시하며 사후관리조사를 위해 주정부가 인증기관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 기준 초과 시 주정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음
-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유기표시금지처벌로 생산물의 농약 및 오염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국가 유기농프로그램(NOP)의 규정에 의거 생산, 유통되지 않은 제품을 고의적으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자는 최고 1만 달러까지의 벌금에 처해짐

다) 인증절차

- USDA의 유기농 제품분류(100%, 95%, 95%~70%, 70%미만)에 따른 유기농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연간 유기농산물의 매출이 5천 달러 이하인 농장 또는 유통사업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음 (원하면 받을 수도 있음)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생산, 유통, 표시방식은 NOP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받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다른 회사에서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될 때 유기농원료로 표시될수 없음
- 생산자와 유통업자 중 유기농 신청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장 유형
 - 이전 3년간 재배포장에 사용한 물질 내역
 - 재배, 사육, 또는 가공 중인 유기농 제품
 - 영농 관행 및 생산에 사용한 물질 등을 기술한 신청자의 유기농 사업계획

라) 유기농 인증절차 소요기간

- 유기농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6주 ~ 10주정도 소요

- 인증희망농장의 경우 적어도 수확 3달전, 가공업체의 경우 유기농생산 라인 가동 3달전에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속한 진행을 원할 경우 신속인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음

마) 유기농 인증절차에 사용되는 근거규정

- 농무부(USDA)의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을 인증 규정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 수출을 위한 인증서비스로 유럽연합(EU)의 EEC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일본의 JAS등의 규정에 부합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

※ NOSB(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 1990년도 농업법(Farm Bill)의 일부인 유기농식품생산에 관한 법률(The Organic Foods Production Act)에 의해 농무장관은 15명의 국가 유기농 표준 위원회(NOSB)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고 이들은 장관에게 연방법(CFR) 중 농업관련법(Title 7)의 하나인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Part 205: National Organic Program)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7) 유기농 제품 분류 표시 및 인증마크

가) '100% 유기농' 으로 표시된 제품

- 100% 유기농 재료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야 함
- 유기농방식으로 가공 및 처리되어야 함
- 비유기농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 USDA의 유기농 인증표시와 해당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표시 또는 인증마크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음. USDA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의 의무 표시사항은 유기농원료 목록,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임

나) '유기농' 으로 표시된 제품

- 제품의 95% 이상이 유기농성분이어야 함
- 나머지 5%까지는 National List에서 허용하는 비유기농성분을 포함할 수 있음 (예: 비타민, 베이킹파우더, 구연산 등)
- 경작되는 모든 재료성분은 유기농이어야 함

- USDA의 유기농 인증표시와 해당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표시 또는 인증마크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음

다) ‘유기농성분으로 제조’ 된 제품

- 성분의 70%에서 95%까지가 유기농성분이어야 함
- 나머지 성분은 허용되는 비유기농성분이나 비유기농방식으로 경작된 재료들을 포함할 수 있음
- 유기농 성분 함유비율과 인증기관의 인증표시 또는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나 USDA의 유기농 인증표시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유기농성분이 70% 미만인 제품

- 제품 성분표시란에 유기농성분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주 표시면 어느 곳에도 유기농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 USDA의 유기농 인증표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

마) ‘자연식품’, ‘무 살충제’, ‘무 잔류물’ 제품들

- 유기농제품은 위의 사항을 충족하나 위의 표시들이 유기농제품만을 나타내지는 않음
- 자연식품은 단지 방목을 했다거나 호르몬제사용을 하지 않았다거나 천연제품과 같은 기타 다른 강조표시를 표기할 수는 있으나 유기농식품과는 다르며 ‘무 살충제’ 라는 말은 농작물에 독성화학합성농약을 쓰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합성비료, 살충제, 살균제 등은 사용되었을 수도 있음.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이 유기농이라는 말과 혼동되어서는 안됨

8) 유기농 검사관 (Organic Inspector)

가) 유기농 검사관이란

- 검사관은 개별적 또는 인증기관 및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며 검사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지식, 경험이 있어야 함
- 각각의 인증기관마다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다르며 소비자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나) 검사관의 업무

- 인증기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모든 종류의 상품과 재료, 경작지, 장비, 저장소, 기록체계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기관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이를 위해 예리한 관찰력, 사교력, 의사소통능력, 보고서 작성능력 및 유기농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됨

다) 검사관이 되기 위한 조건

- 본인이 원하는 전문 분야를 선택
- 해당분야에 대한 최소 1년 이상의 교육 및 경험
- 유기농 표준 및 인증절차실무에 대한 지식
-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
- 높은 언어능력(작문, 청취력 및 회화)
- 국제 유기농 검사관 협회(IOIA)에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
- 최장 2년간의 IOIA의 수습기간 - 검사관을 보좌하여 현장 검사실무 및 보고서 작성

9) 한국 유기가공식품의 미국수입절차

- 2014.7.1일부로 한국이나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양국 어디에서든지 “유기” 로 판매할 수 있음
 - 양국간 협력을 통해 중요한 무역장애를 제거하고 한국으로부터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사업체에 대해 업무 부담을 줄이게 되었음
- 상호동등성 협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품목
 - 아래와 같은 USDA 유기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의 식품공전에 정의된 “가공식품”에 한함
 - 최소 95% 이상 유기 성분을 포함해야 함
 - 한국의 식품공전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제품의 마지막 가공절차가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은 제외됨
- 신선 배나 양파와 같은 다른 품목은 USDA 유기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전 세계적으로 USDA가 지정한 유기인증기관은 www.ams.usda.gov/NOPACA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USDA 유기인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ms.usda.gov/NOPFAQsHowCertified>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양국은 협정에 따라 금지 물질이나 방법의 잔유물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검사할 수 있음
 - 미국 내에서 발견될 경우 유기 표시를 제거하여야 함

□ 서류

- 협정에 따른 한국의 모든 수출은 NOP 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하여야 하고, 한국의 관계자는 미국으로 제품을 선적한다는 사실을 유기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인증기관은 양식(<http://1.usa.gov/nop-import-certificate>)을 작성하고, 그것을 유기가공식품의 선적서류에 포함하도록 관계자에게 송부함

□ 표시

- 상기에 언급된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여 한국에서 “유기”로 인증 받은 가공식품은 미국에서 “유기”로 판매할 수 있음
 - 제품은 USDA 유기표시요건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고 한국의 유기식품표시나 USDA 유기표시를 할 수 있음(2가지를 동시에 표시해도 됨)
 - 미국의 유기표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USDA 유기 규정의 표시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http://bit.ly/usda-organic-labeling>)



USDA Organic Seal[U.S.]



Korean Organic Food Logo[Korea]

나. 코셔 인증제도

1) 인증 등록개요

- 국 가 명 : 미국
- 인증명칭 : 코셔인증(Kosher)
- 해당국가의 법적근거 : 원재료와 식품 생산 설비 기준

하나의 완전한 식품을 구성하기위해 포함된 모든 단위와 부수적 단위의 소재 등 모두 코셔여야하며, 돼지고기 및 육류와 유제품 동시섭취 금지 등 613가지의 규율: 유태음식규정 전문가의 관리감독하에 진행

- 코셔 식품 분류

- ① 육류(Meat) :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 (예: 소, 염소, 양) 및 닭, 칠면조, 일부 오리나 거위 등의 가금류(야생조류와 육식을 하는 조류 예외)
 - ※ 반드시 규정된 방식대로 도살해야함 (shechita:유대 율법대로 도살하는 방식, 이때 가축을 도살하는 사람을 shochet이라고 함)
 - ② 유제품(Dairy) : 코셔 가축으로부터 얻어진 우유와 우유를 원료로 만든 제품 (치즈, 크림, 버터 등)
 - ③ 파르브(Pareve/중성) : 육류나 유제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식품(천연 상태의 과일과 곡물, 채소 등. 연어, 가자미, 넙치 등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어류 포함)
- 인증등록 기관명 : 수백 개의 코셔 인증기관이 있으며 그 중 OU, Star-K, Kosher Quest 등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 중 OU마크가 전체 코셔제품의 7-80% 차지
 - 인증기관의 자격조건
 - Rabbinic Coordinator (RC:담당 랍비)이 인증 관련 총괄을 하고, 업체별 담당자 (RFR: Rabbinic Field Representative)를 지정하여 업체 방문 심사를 진행함 (승인 이후 정기적 점검시행)
 - 인증절차 : 신청서 제출 → 생산시설 검사(OU실현가능성 검토) → 이사회

평가 승인 → 계약서 작성 → 생산시설 재검사 → 코셔 인증서 발급

- 소요기간 : 평균 3개월 소요
- 인증기준 : 인증기관이 보낸 RFR의 설비, 제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후, 총괄 담당 R.C의 종합적 문서 검토를 통해 엄격한 자격조건에 부합될 경우 인증 발행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소요비용 : 품목당 연간 \$3,000 ~ 5,000

2) 인증 등록현황

- Orthodox Union(OU): 80여개국 8,000여개 회사의 400,000 제품 등록
- OK Certifies: 세계 1,500여개 회사의 140,000제품 등록(Kraft, Snapple, ConAgra등)
- 인증 등록 시 좋은 점
 - 등록 자체로 큰 경쟁력 확보
 - 소비자로부터 안전성에 대해 유기농 인증보다 더 신뢰가 가는 청정식품이라는 인식. 한식 세계화에도 코셔인증을 활용할 경우, 한식의 웰빙/건강이미지 상승효과를 발휘, 수요 확대에 기여 가능)
 - 이슬람의 ‘할랄(halal)식품’ 보다 처리방식이 복잡하고 엄격한 상위개념이므로 유대인들이 할랄식품을 먹지 못하더라도 무슬림들은 코셔를 먹을 수 있어 현지 진출 및 시장 확대 등 현지 진출에 유리한 장점

다. 할랄제도

1) 할랄의 정의

- 할랄은 아랍어로 ‘이슬람법에 의해 허용되다’ 는 뜻으로 무슬림 삶 전반에 걸쳐서 허용된 것을 의미하여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는 식음료를 지칭
- 이슬람법상 식·음료품의 경우 불결하거나 해로운 것, 이슬람법에 의해

- 금지되는 요소가 섞이거나 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준
- 특히, 식음료의 경우 할랄은 인체에 해로운 것, 이슬람법에서 금지되는 물질이 섞이지 아니한 것으로 이슬람 교의에 기초한 샤리아법(Sharia Law)에 따라 허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식품들을 말함

2) 할랄식품의 범위

○ 할랄식품 : 이슬람법에서 허용하는 식품임

- 채소, 과일, 곡류 등 비 육류성 식품, 해산물
- 육류의 경우, 이슬람법에서 허용된 고기로서 할랄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도축된 것
- ※ 먹는 것이 허용된 동물도 ‘신의 이름으로’ 도축하지 않은 고기는 먹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맥을 끊는 방식으로 도축된 육류만 허용
- 특히 가공식품은 돼지,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함

○ 하람식품 : 하람식품은 이슬람 금기 식품임

- 돼지고기 및 이와 관련된 음식
- 피 및 이와 관련된 부산물, 육식동물의 고기
- 파충류 및 곤충

〈 할랄 식품과 하람 식품 〉

할랄식품	하람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소, 낙타, 산양의 젖) ▣ 벌꿀 ▣ 생선 ▣ 취하는 성분이 없는 식물 ▣ 신선한 야채(신선한 상태로 냉동한 야채), ▣ 땅콩, 캐슈넛, 헤이즐넛, 호두 등의 견과류와 콩류 ▣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석류 등) ▣ 밀, 쌀, 호밀, 보리, 귀리 등 곡물류 ▣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 등 동물 (반드시 이슬람식 도살방법인 자비하-zabihah에 따라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 피와 그 부산물 ▣ 육식동물 ▣ 파충류와 곤충류 ▣ 동물의 사체, 도살 전에 죽은 동물 ▣ 포도주, 에틸알콜, 화주 등의 술과 알코올성 음료 ▣ 그 밖의 할랄인지 하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식품 ▣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동물 (자비하 수순에 따르지 않은 고기)

3) 할랄식품 인증제도

□ 인증기관

- 미국 정부기관은 할랄(Halal)이나 코셔(Kosher) 등 종교적 인증에 관여하지 않으며, 종교적 인증은 민간 차원에서 운영
 - 미합중국 헌법(수정헌법 1조)에 따라 정부는 특정 종교에 영향을 끼치거나 우호적인 조치를 할 수 없음(제정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 1980년대 후반부터 인증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지정을 받아 인증활동 수행 【사례 : 붙임1】
 - 대표적 인증기관 : ISWA (Islamic Society of the Washington Area), IFANCA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ISA (Islamic Service of America), HFCI (Halal Food Council International) 등

□ 인증절차

가) 인증조건

- 이슬람 식품기준에 부합될 것
- 모든 서류요건을 충족할 것
- 할랄인증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나) 이슬람교적인 할랄식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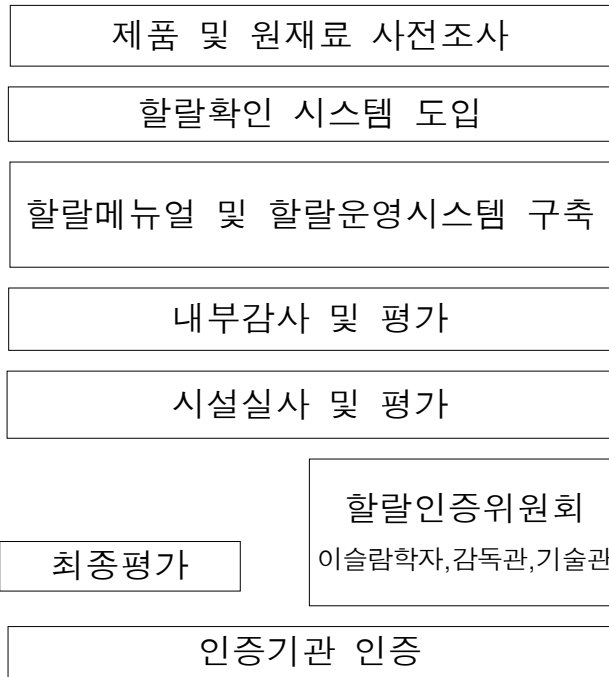
- 모든 식재료가 할랄일 것
- 식재료, 생산가공, 포장, 저장, 운반 등의 모든 단계에서 하람이 제외될 것 (하람식품과 같이 보관도 안됨)
- 이슬람교적인 청결과 위생절차를 따를 것

다) 할랄인증절차

- 할랄인증 신청서 제출
- 할랄인증을 위한 모든 생산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리스트 제출
- 인증기관의 할랄인증신청 생산시설 및 공정에 대한 감사
- 할랄인증후 6개월마다 할랄시스템 지속리포트 작성보고

<할랄 인증절차 도표>

할랄인증 신청서 작성



라) 소요기간 : 신청서 제출로부터 약 6~8주 소요

4) 정부 지원 현황

- 미농무부(USDA)는 할랄 인증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미국산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할랄 제품 인증 편의를 제공
 -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홈페이지 Export Library에 이슬람 국가별 수출요건과 할랄 인증기관 안내【사례 : 붙임2】
 - 농무부 해외농업청(FAS) 홈페이지 해외농업정보(GAIN Report) 란에 각 이슬람 국가들의 식품수입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국내적으로 농무부 FSIS는 종교적 배경에 따라 도축·가공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식품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예) Religious exemption for the slaughter and processing of poultry (FSIS Directive 6030.1 Rev1)

5) 할랄식품 생산 및 소비현황

가) 생산 현황

주요제품

- 이슬람의 금기식품인 하람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할랄제품으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품목으로는 할랄 방식으로 가공된 육류 및 가금육이며 그 다음으로는 하람성분이 배제된 일반식품들임

나) 소비 현황

무슬림 인구 및 시장규모

- 미국은 전세계에서 무슬림 인구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0.5~1%)로 무슬림 인구는 2~4백만으로 추정되며(유대인은 6~8백만) 할랄식품 시장규모는 120억불로 추정됨(외식시장포함, 코셔는 2000억불)
 - 현재 미국내 할랄시장은 초기시장으로 코셔 대 할랄제품 비율(86:1)

□ 무슬림 소비동향

○ 현재 대부분의 무슬림소비자들이 코셔식품을 소비하는 상황임

- 미국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으로 코셔식품의 역사가 길고 제품이 다양하여, 많은 무슬림 소비자들이 구하기 어려운 할랄식품보다 대체적인 코셔식품 소비
- 무슬림은 할랄식품대신 코셔식품 소비가 가능하나 유대인들은 코셔식품 대신 할랄식품 소비가 불가능
- 현재 코셔시장의 약 16%정도를 무슬림 소비자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짐 (자료 : Halal Research Council)

6) 할랄식품 수출입 현황

가) 수출 현황

□ 주요 수출국 및 수출업체

- 미국의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McDonald's, KFC, Burger King 등)들이 중동 및 동남아의 이슬람국가들로 진출함에 따라 이들 업체들을 통한 할랄 식재료들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
- 미국내 인증기관 IFANCA에 의하면 할랄식품(식재료) 생산업체는 약 1,000여개이며 연간 수출액은 약 450백만불 정도로 추정됨
- 주요 수출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나) 수입 현황

- 할랄식품의 주요대상이 축산물이며 알코올 및 육류함유제품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일부 특별한 원재료를 제외한 수입량은 많지 않으며 정확한 수출입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임

미국내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 사례
(Islamic Society of Washington Authority (ISWA))

- 할랄 인증을 원하는 시설에 대해 ISWA에서 요구하는 일반요건 주요내용
 - 도축시설은 연방정부(USDA)의 검사를 받는 시설이어야 함
 - 도축과 기도(blessing)는 무슬림이 수행해야 함
 - 할랄 감독관(Halal supervisor/inspector)의 불시 점검을 보장해야 함
 - 할랄 감독관은 도축·가공시설과 무관한 사람이어야 함
 - 할랄과 非할랄 도축을 같이 하는 도축장에서는 할랄 도축을 非할랄 도축보다 먼저 해야 함
 - 할랄과 非할랄 가공을 같이 하는 가공장에서는 가공시설을 분리하거나, 할랄 가공을 非할랄 가공보다 먼저 해야 함
 - 할랄 제품 생산라인은 돼지고기 제품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함

- 인증절차
 - 이슬람 국가로 수출코자 할랄 인증을 신청하는 도축·가공장은 인증 대상 제품 상세정보를 ISWA로 제출
 - ISWA의 할랄 감독관(Halal supervisor/inspector)이 도축·가공 과정에 참석하여 도축·가공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과정이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지 모니터
 - 할랄 감독관은 수입국에서 승인한 할랄 인증서를 작성·서명하고 ISWA's authorized representative에 제출
 - ISWA's authorized representative는 인증서를 검증한 후 도축·가공장(수출자)에게 원본을 주고 사본은 보관

- (수출 가능 작업장) 연방정부의 검사를 받는 모든 작업장은 UAE로 수출을 할 수 있으며, “할랄(Halal)”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슬람에서 요구하는 도축 기준을 따라야 함
 - FSIS의 검사증명서외에 할랄 도축 인증서(Certificate of Halal Slaughter)가 추가로 요구됨

- (적용 대상) 냉장/냉동 비가공 제품(fresh/frozen unprocessed products) 및 가공제품(processed products)

- (할랄 인증) 수출자는 UAE 당국이 승인한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 도축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UAE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배서(endorse)를 해야 함
 - FSIS는 이슬람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이 적절한 종교적 도축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증할 책임이 없음(할랄 인증에 관여하지 않음)
 - 할랄 인증기관은 UAE 당국의 현지조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승인받으며, 미국 소재 아래 인증기관들은 미국 전역에서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승인되어 있음
 - ① Halal Transactions of Omaha (HTO) - 네브라스카 Omaha
 - ②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 (IIIT) - 버지니아 Herndon
 - ③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IFANCA) - 일리노이 Park Ridge
 - ④ Islamic Society of Washington Authority (ISWA) - 워싱턴DC
 - ⑤ Islamic Society of Columbus (ISC) - 조지아 Atlanta